

2013년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 일시 : 2013 4. 29(월) 14:40~17:50
- 장소 :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3층 우암홀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일정

○ 일시 : 2013. 4. 29(월) 14:40~17:50

○ 장소 :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우암홀

○ 프로그램 일정표

시 간	행사	소요 시간	내 용	장 소
14:20~14:40	등 록		- 등 록	
14:40~14:50	개 회 사 (인사말씀)	10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원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그랜드볼룸
14:50~15:00	환 영 사	10분	-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 - 구자문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그랜드볼룸
15:00~15:40	기조강연	40분	- 나승일 교육부 차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으로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랜드볼룸
15:40~16:00	휴 식	20분	- 휴 식	
16:00~17:00	2012년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표	60분	- '솔선·동행·나눔의 가치'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작전초등학교/인천) -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 존중의 송향문화 조성'(와부중학교/경기) - '학생과 소통하며 하나되는 사랑나눔 실천 프로젝트'(일신여자고등학교/충북)	그랜드볼룸
17:00~17:50	2013 컨설팅 추진방법 및 일정 안내	50분	- 교육부 인사말씀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진 과장) - 2013년도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사업 진행일정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이현주 교육연구사) - 컨설팅 추진 방법 및 일정 안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 질의 및 응답	우 암 홀
17:50~19:00	석 식	70분	석 식	

C·O·N·T·E·N·T·S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목 차

I.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운영계획	7
---------------------------------------	---

II.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추진방법	11
------------------------------------	----

자 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1
2.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41
3.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60
4.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121
5.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명단	150
6.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위원 명단	161
7. 17개 시 · 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명단	164

※ 참고자료(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홈페이지 파일 탑재)

- ① 2011년, 2012년 학교문화우수사례집
- ② 2011년 학생자치활동 길잡이
- ③ 2012년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I.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운영계획



I. 학교문화 개선 연구 선도학교 운영계획

* 2012년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서, 2013년에는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학교문화, 언어문화, 법제문화 3개 영역을 포함하여 운영함

□ 추진 근거

-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10. 10. 4)
-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11. 1. 17)

□ 목적

- 학생 자치활동, 바른 언어문화 생활, 법제교육 등의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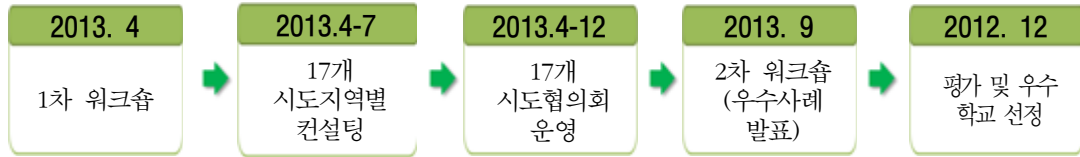
- 주관교육청 : 인천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사업수행기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제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 3월~’14. 2월
- 운영학교 : 학교문화 선도(110개-A), 법제문화 선도(8개-B), 언어문화 개선(32개-C)
총 150개교(시도자체 지정 60개교 별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유형별 (*)	A	7	3	7	6	6	6	10	6	7	7	6	9	10	8	6	1	110
	B	1	1	0	1	1	0	0	1	0	0	1	0	0	0	1	0	8
	C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1	32
	계	10	6	9	9	9	9	12	9	9	9	9	9	12	9	9	2	150
급별	초	4	3	3	3	4	3	4	4	3	3	3	2	5	2	4	1	55
	중	3	2	3	3	3	4	3	5	4	3	4	3	3	5	3	1	55
	고	3	1	3	3	2	2	2	3	1	3	3	2	4	4	2	0	40

□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향후 일정



- 17개 시·도 교육청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
 -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17개 시·도 교육청 단위 컨설팅 실시
 - 각 교육청 단위별로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각 학교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과 전문가 의견 제시 및 우수사례 발굴
- 2차 워크숍 실시(9월 중)
 - 학교 운영 담당자 대상의 워크숍을 실시하여 컨설팅 결과가 반영된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짐
- 평가 및 우수학교 선정
 - 1차 시·도 교육청 평가(75개 학교 선정), 2차 중앙심사위원회 평가(50개 학교 선정)를 통해 최종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포상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평가

-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평가단 구성
 - ↓
- 시·도 교육청 평가 : 75개 학교 선정(1.5배 선정)
 - ↓
- 중앙심사위원회 평가 : 75개 학교 중 상위 50개 학교 최종 선정 및 포상

Ⅱ.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추진방법



II.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추진방법

1. 컨설팅 목적

- 학교문화 개선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학교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이를 확산함.
- 학생의 자율적 참여활동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실천능력 배양 및 책무성 함양에 기여
-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학교공동체 문화의 창조

2. 컨설팅 방향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 강화
-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확대

3. 컨설팅 주요내용

- 계획서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
-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계획서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4. 컨설팅(평가) 세부 지표 및 내용(안)

항 목	주요 컨설팅 내용
1. 학교문화 개선 노력	○ 기존의 학교문화 관행을 바꾸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과 적극적 의지가 있는가? ○ 주제가 학교문화 개선활동의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학교구성원 참여 활성화 및 소통과 협력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3주체의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 학교장, 학부모의 이해 정도와 상호협력은 어떠한가?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교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는가? ○ 기획, 준비, 운영, 평가 등에서 학생들의 참여수준이 높은가?
3. 교육과정과의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얼마나 연계, 활용되고 있는가? ○ 학생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4. 프로그램의 창의성	○ 프로그램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 프로그램이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진행되고 있는가?
5. 추진체계, 예산적절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가? ○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고 있는가? ○ 지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가?

5. 컨설팅 절차

-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장학사)로부터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별 계획서 및 진행경과 보고서 수령(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 예정)
- 학교의 계획서와 진행경과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컨설팅의견서 양식(양식 1 참조)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시 지참
- 컨설팅 당일 15분가량의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지역 여건에 따라 생략)
 -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평가 및 컨설팅항목 등을 각 학교관계자에게 설명
- (오리엔테이션 후) 각 학교별로 2인의 컨설팅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컨설팅 실시 (컨설팅 세부 지표 참조)
- 한 학교당 컨설팅 시간은 30분 내외
(학교 발표시간 10분 (사업추진 및 진행과정 설명) + 컨설팅 시간 20분)
 - ※ 컨설팅 시기 : 5~7월 사이에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실시
 - ※ 컨설팅 장소 :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해당지역 학교 회의실 등
- 계획서 및 각 학교에서 가져온 진행경과 보고서를 함께 평가하여 이 중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학교 1개교를 7월 26일(금)까지 추천함(양식 2 참조)
(추천학교는 9월 개최되는 제2차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사례발표 후보가 됨)
- 컨설팅이 끝난 후 양식에 따른 각 학교별 컨설팅 의견서(양식 1) 및 지역별 종합 보고서(양식 2 참조)를 7월 26일(금)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메일로 제출함.
 - ※ 각 학교 당 컨설팅은 두 명의 위원이 실시하지만 컨설팅 의견서 및 종합보고서는 하나로 제출함.
 - ※ ‘컨설팅의견서(양식1)’는 각 개별 학교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의미하며(학교 개수만큼 작성), ‘종합보고서(양식2)’는 각 시·도 학교 컨설팅에 대한 종합 의견을(시·도별 1개 작성) 의미함.

※ 제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운영팀

Tel. 6913-8919, 이메일 : school@nypi.re.kr

■ 컨설팅 회의진행 방법

: ‘전체학교 집단워크숍형’ 또는 ‘학교 개별방문형’ 등 지역별 여건과 요구에 맞게 실시(2012년도에는 대부분의 시·도가 ‘집단워크숍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학교 개별방문형’으로 진행함)

○ 집단워크숍형

- 장점 : 다른 학교의 사업내용과 운영방법을 함께 공유하며 집단학습 효과 가능
- 유의사항 : 모든 학교의 진행경과 발표와 컨설팅위원의 의견을 공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교급, 사업주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교수로 집단을 나누어 몇 회차에 걸쳐 실시

○ 학교 개별방문형

- 장점 : 개별 학교 여건과 현황을 직접 접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심층적 컨설팅 실시 가능
- 유의사항 : 모든 학교를 개별 방문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위원의 시간적 여건이 가능해야 하며, 회의 횟수 증가에 따라 필요시 교육청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함.

6. 향후 추진 일정

- 각 시·도별로 컨설팅 실시 : 5~7월 초
- 컨설팅 결과 제출(시·도별 우수학교 사례 추천 포함): 7월 26일(금)
-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제2차 워크숍 실시(17개 시·도 담당 장학사, 학교 담당교사) : 9월 예정
-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평가 실시 : 2013년 12월
- 학교문화 개선 우수학교 선정 발표 : 2013년 12월

7. 컨설팅결과 작성양식

양식 1)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운영 컨설팅 의견서

○ 지 역 :

○ 학교명 :

컨설팅 항목	컨설턴트 의견
사업 추진 및 진행사항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컨설턴트 : _____ (인)

○ 컨설턴트 : _____ (인)

양식 2)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종합 보고서

○ 지역명 :

컨설팅 항목		컨설턴트 의견
사업 추진 및 진행사항에서 제기된 질의 응답 내용 종합의견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의견		
추천 우수학교	학교명	
	추천사유	

○ 컨설턴트 : _____ (인)

○ 컨설턴트 : _____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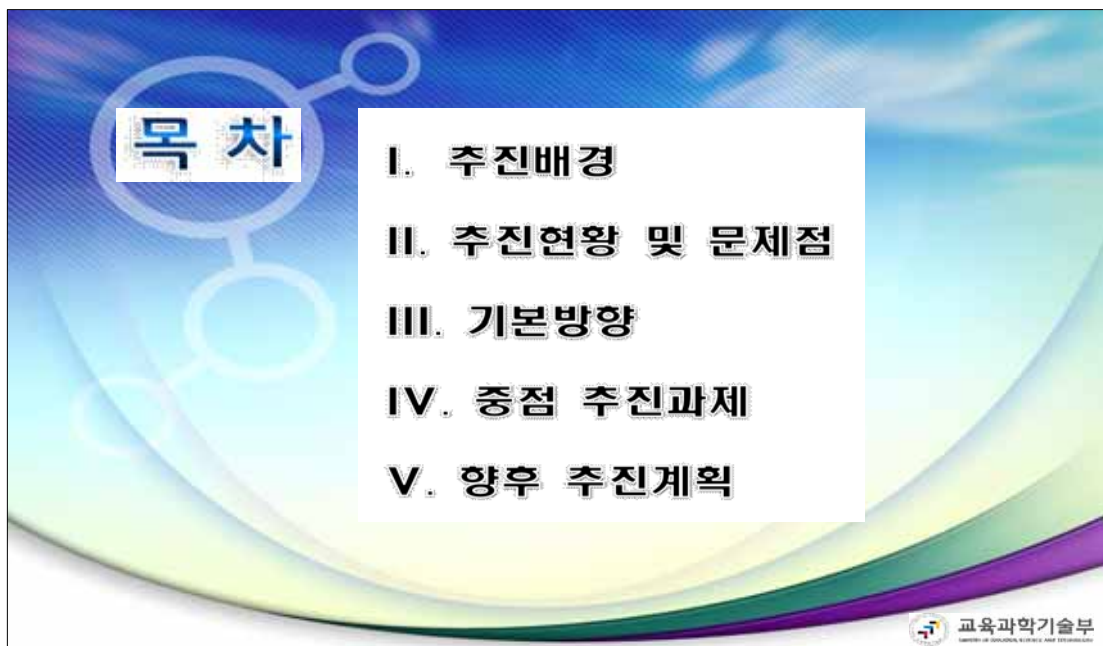
자 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3.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4.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5.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명단
6.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컨설팅위원 명단
7. 17개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명단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I 추진배경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 추진배경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 대두

- 최근 학생들의 심각한 **욕설문화**, **알몸졸업식**, **로우킥 폭력**,
교사의 **지도불응**, **교사폭행**, **성희롱** 등 인성부재 사안 증가
-이론 중심이 아닌 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언어 예절, 타인존중, 자기 절제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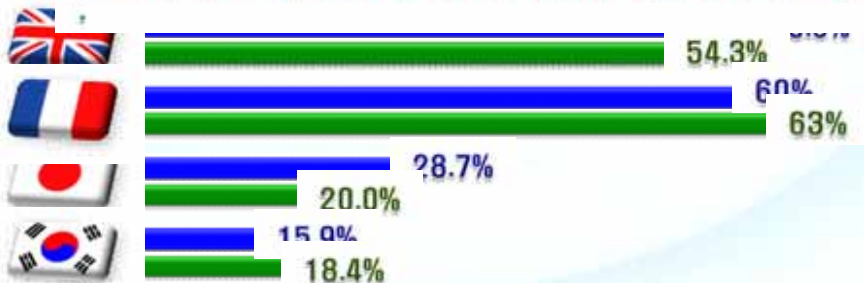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 추진배경

준법의식,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필요성 증대

-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배우는 기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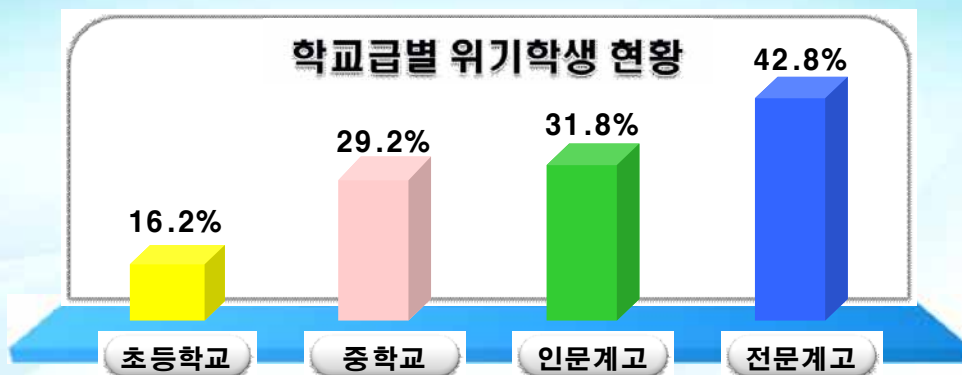
- 교실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
-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



I. 추진배경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생활지도 방법의 전환 필요

-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필요





추진현황 및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추진현황

- ❏ 학칙 제·개정시 지도 감독기관의 인가권 폐지 개정법률안 상정('08.11)
- ❏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개최 ['10.8.18]
 -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 정책연구 책임자 : 교육법연구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10.12.29)
 -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 :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생활지도 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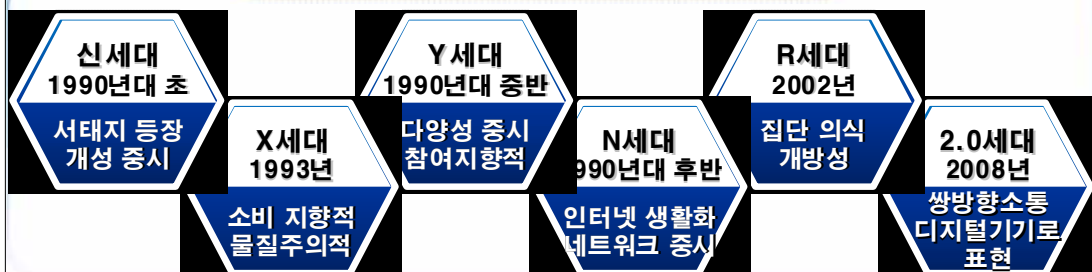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문제점

1 학생의식 변화와 교사의 지도방식의 괴리

- 개방화 다양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문화와 기성 세대 간에 문화지체로 인한 소통 곤란
 - 비교육적인 훈육방식에서 벗어나 소통 · 공감하는 학교 문화 필요

청소년 세대의 변천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문제점

2 폭력적인 청소년 문화 만연

- 알몸 졸업식, 습관적 욕설 등 건전한 학생문화 실종

졸업식 알몸 뒤풀이 유형

-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 ✓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 ✓ 알몸 상태를 촬영 · 인터넷 배포 행위(성폭력)

- 학생들의 욕설문화는 2000년 인터넷과 PC방 채팅문화, 휴대전화 등이 보편화, 습관화되면서 크게 증가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문제점

3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 및 욕설, 폭행 등 교실 붕괴 증가

최근 3년간 교사에 대한 폭력관련 증가 추이

- ✓ (가해자) 학부모에 의한 형태는 감소되고 있으나, **학생에 의한 폭력 증가**
 - ※ 학생 비중 증가 추이(08년 56.8% → 09년 73.6% → 10년 77.9%)
- ✓ (폭력 형태) 과거 폭행에서 **언어적 폭력형태인 협박이 가파르게 상승**
 - ※ 협박비중 증가 추이(08년 52.3% → 09년 71.7% → 10년 85.3%)

- 체벌금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체벌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상존

※ 06년 72.0% → 08년 63.8% → 10년 67.7%





기본방향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II. 기본 방향

추진방향 : 학교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과거의 학교 문화

- 학교교육의 **타율적, 수동적** 지도대상
- 학교생활규정 **제정 시 배제**

- **통제, 규제** 위주의 학생지도

- 학교교육 **참여기회 부족**

학생

교원

학부모

선진화된 학교문화

- 학교교육의 **자율적, 창의적** 주체
- 학교생활규정 **제정 시 참여**

- **자율 ·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II. 기본 방향

비전

학생 · 학부모 · 교사 모두가 즐거운 학교

추진
목표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과제

과제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과제 3

가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V

중점 추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V. 중점추진과제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 학칙에 대한 교원 연수 정례화
- 상·벌점제의 내실있는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지원확대
- 학생자치법정 내실화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 학급자치 활동 및 회의 시간 확보
- 학생 불만사항 신고·처리 상시 체제 구축
- 학생 움부즈맨 제도 운영 권장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권장

IV. 중점추진과제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학칙제·개정시 학생참여 확대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제도화
-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 및 건의 가능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 권장

- 학칙에 대한 교원연수 정례화(학기당 1회)

-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의 내실있는 운영

생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IV. 중점 추진 과제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학칙제개정시 학생참여

학생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 시간 확보

- 학급단위의 의견이 학교단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

학생 불편사항 신고처리 상시 체제 구축

- 학생의 불편·불만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 설치

학생 음부즈맨 제도 운영·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권장

- 학생들의 불편·불만 해소 - 학교만족도 제고
- 학부모의 학교정책 전반에 참여유도 및 의견수렴

학생의 의견 수렴

IV. 중점 추진 과제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자치 활성화

학칙제개정시 학생참여

학생의견수렴 상시 체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 자치활동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지원 확대

-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활성화

학생 자치법정 내실화

- 상·벌점제 연계
- 학생 배심원 참여형 선도위원회 운영

IV. 중점 추진 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 학칙 제정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
- 체벌 대체 지도에 대한 자율권 확대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 출석정지 도입 및 대체 교육 기회제공
- 학부모 상담제 도입
- 문제행동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생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IV. 중점 추진 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단위 학교의 학칙 제정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

-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 확대
- 초·중등교육법(8조) 개정 추진('08.11 국회 상정 계류 중)

제8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밑줄 친 부분 삭제)

IV. 중점추진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실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7.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 ·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추가)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IV. 중점추진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실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제31조(학생의 징계)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 1. 1.~3.(현행과 같음)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현행 제4호와 같음]

IV. 중점추진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제31조(학생의 징계)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u>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u> (신설) ④ <u>-----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u> ⑤ <u>제1항제5호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u>

IV. 중점추진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제31조(학생의 징계)

개정 전	개정 후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⑧ <u>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IV. 중점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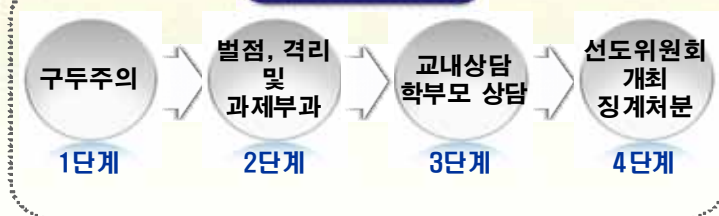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체벌 대체 지도에 의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차원의
간접적 체벌 허용
- 훈계 · 훈육지도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

훈육지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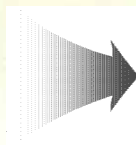
IV. 중점추진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강화 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출석 정지 도입 및 대체 교육기회 제공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도입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
-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Wee센터, Wee스쿨에서 상담, 선도교육



IV. 중점 추진 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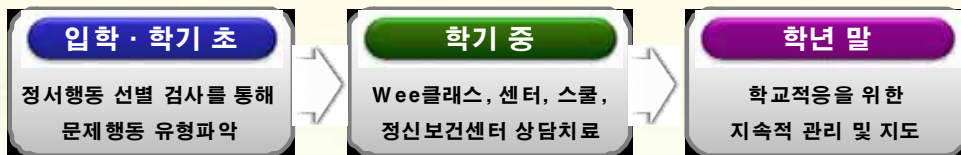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강화

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학부모 상담제’ 도입

- 자녀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 제고
- 학부모 상담제 관련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

■ 문제행동 조기개입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 특별치료가 필요한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

IV. 중점 추진 과제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 자율성 및 책무성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제고

-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강화
- **교원 양성 단계에서** ‘학생지도·상담 방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생생활지도 **우수교원 인센티브 제공**(교원인사,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 자살·자해,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 본청·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콜센터**』 설치 및 전담부서 지정
- **법률상담·소송** 지원서비스 강화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IV. 중점 추진 과제

3 가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 언어교육 강화

-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기본 생활예절 강화
-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바른습관 교육
- 학생 언어 순화 교육 강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강화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확대
-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IV. 중점 추진 과제

3 가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 중심 생활예절 언어교육 강화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인성 및 기본 생활예절 교육 강화

-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만들기' 운동
- 인성 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 대회 실시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바른 생활습관 교육 강화

- 언론 매체를 통한 기초 생활 교육 캠페인 전개
- 다문화 (이해) 및 (배려) 교육 강화



IV. 중점추진과제

3 가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 중심 생활예절 언어교육강화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언어순화교육실시



- 초등학교 언어예절 교육 조기실시 및 자정활동 전개

범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
언어순화운동전개



- 언어순화 범국민 캠페인 운동 전개

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언어순화 교육강화



- 교수언어 표준화 자료 개발 보급
- 교사 · 학생간 소통을 위한 교정적 지도 프로그램 연수

IV. 중점추진과제

3 가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 중심 생활예절 언어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1교 1나눔 체험활동 권장

위기학생을 위한
『재능나눔 Wee멘토』 구축 ·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권장



IV. 중점추진과제

3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 언어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확대

■ 학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학기초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차적 배치

■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지원

- 학교생활 지원 및 학교정책 전반 의견수렴의 창구 활용

■ 자녀와의 공감형성을 위한 학부모 교육기회 제공

- Wee클래스, Wee센터를 활용하여 심리검사 등 학부모 교육 실시



향후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 향후 추진 계획

- 학교문화 선도학교(300교) 지정 운영 : '11.3~
- 단위학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11.3~
- 학생 언어순화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11.3~
- 단위학교 학칙(학교생활규정) 정비 : '11.4



부 록

※ 부 록

국가별 체벌관련 현황

국가	체벌여부	체벌대체 지도방법
미국	16개 주 허용	학교 관리자 입회 하 실시
	34개 주 금지	정학, 제적 등 훈육조치
영국	금지	훈계, 학부모 서신발송, 퇴학 등
독일(헤센주)	금지	학부모 상담, 물건압수 등
일본	금지	반성문, 방과후남기 등
브라질	금지	훈계, 훈육 등
카자흐스탄	금지	타임아웃, 학생교화전문기관 위탁
캐나다	금지	학부모상담, 퇴학 등
파라과이	금지	훈계, 정학 등

※ 부 록

국가별 학생생활규정

국가	학생징계	두발, 복장	휴대폰	기타
미국	10일 이하 정학 10일 이상 정학 제적	학교생활에 적절한 복장과 몸차림에 대 해 권고 가능	교내사용금지 전원을 끄고 사물함 보관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물건 수색가능
영국	1:1 훈계, 퇴실, 압수 소품 참가 금지 쉬는 시간 박탈	특정한 제한규정없음학교운 영위원회 결정	학생징계조치 로 휴대폰 압수존재	
독일 (헤센주)	수업제외, 반변경, 강제전학, 퇴학	규제 없음 화장, 액세서리 허용 히잡 착용 금지	전원을 꺼야함 위급, 교사허 용시 사용가능	MP3 소지, 흡연, 검댕기 금지
일본	훈고, 유기/무기 등교정지 퇴학	학교 자율로 학생관리규칙 제정		
캐나다	정학, 퇴학	학생회, 학부모회, 이사회에서 복장규정 결정 이외 제한없음	교내사용금지 전원을 끄고 사물함 보관	

[자료 2]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1

추진배경



선교를 위한 학습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추진배경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10. 10)

-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 확대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11. 1)

-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자치 활성화
- 학생중심의 생활지도 확대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12. 2. 6)

- 학생·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학교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2. 4. 20)



구분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주체	학교(교사) 중심	학생자치행동을 통한 참여, 학부모 참여 확대
운영목적	징계 등 학생 선도	주인역사, 준비정신 함양(면접교육, 민주시민교육)
항목	추상적	구체화(독물 적장 등 용모, 휴대전화 사용...)
의견수렴	학생의 의견 청취	미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 청취
실천운동	매출	지역사, 동역사(매년제) 재출 적극 권장

04

2

학교규칙의 개념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서로를 위한 학습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학교규칙의 개념

○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수 있음

* 소·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

학교규칙의 개념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교규칙 (학칙)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에 관련사항 	①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 교과·수업명수 및 고시와 과점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전급 및 조기졸업
	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⑦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특별대책자치위원회의규정」등)
	⑧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벌·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제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⑨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⑩ 학교규칙개정절차

07

학교규칙의 의의

학교운영의 근간

-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학교규칙이 중요
- 학교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학생

-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는 법규적 성격
-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

학부모

-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
- 학교교육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

교원

- 학교교육 및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 통제하고 규제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
-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

08

학교규칙 관련 법령 개정사항

○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증대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제·개정에 대한 자율성 증대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8조 <12.3.21. 개정>

○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야함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2.4.20. 개정>

109

3

학칙 제·개정 절차와 방법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함

○ 기본적인 절차는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학칙 제·개정의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32조(기능)

- ③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학생대표 발언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의견 수렴 등)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세션 시안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여 있는 경우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스타카 붙여기 등 활용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1차 시안 마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토론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해 협의에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안 확정
3 학교장 결재 후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연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강제 연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에게 강제 준수 시명석
	적용 및 해류	- 개정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에게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13

학칙 개정과 학교 공동체

- 학칙은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토론의 산물
- 규칙에 대한 공유와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에 대한 시약이 중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학생들은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



규칙을 지키는 "문화"

14

교육과학기술부



학급을 넘어 '학생생활규칙'(학칙)도
학생이 정하는 곳이 있다.

[illegible]

‘학급헌법 만들기’ 최우수상 받은
경기 00초 6학년 6반

수업 집중, 싸움 않기... 스스로 만든 규칙 잘 지켜야죠

수업시간·점심시간, 친구들과
아주 친했다. 모두가 합치만
않게 지각이 어찌된 일이었다.
한 점제가 있을 것만 바라는
것들을 생각해 제정식으로 노
태면이면 어떻까, 열두부나 주
면 '학급헌법 만들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걸까 00초
00초 00초를 찾아 학급헌법 만
드는 노후를 즐겼다.

“학급원칙은 학생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런 원리교사는 학급원칙과 함께 학생의 존엄과 자치가 향상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 교사는 “학급에 있을 규칙이 오히려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급원칙을 주는 대신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줄 방법을 찾아 고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의 “우리 학교의 ‘리더’ 과정과 ‘학급원칙 만들기’를 통해 프로그램은 진행하게 구별적인 발달이 보인다. 면에

[illegible]

아들이 부끄럼
을 보였다. "웃음
이 가운데 제3조
칙이요. 딸, 제3
항 '질문사유'
는 매우 엄격하
야 할 것. 학생이
제 질문을 해주는
사유가 아니라
선생님이 내가 과
외를 한 제3항에
의해 질문할 권
리가 있다. 즉 철저한 비
밀학하는 것도 잘못
이다. 전담에 관한 제
3항이 언제부터 공인
된 것인지 물어 보
고 싶다. 이 경우
물론은 자신이 한
것, 헌법준수조항을
제출해 보게 된다. 이
것은 '모든 것'의 법
규칙이 정립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깨달은 것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참여의 의미

-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
- 나의 권리가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소중함을 이해
(재합을 통해 권리와 책임, 배려를 균형있게 학습)
- 여러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규칙이 중요함을 이해
-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선생님,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보는 학습의 과정
- 약속을 정한 경위와 실천의지를 친구들과 공유



학칙 개정과 학생 자치활동

1 학급단위 의견수렴

- 학칙 제개정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활용
- 학교급에 따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동 필요
- 학급별로 "학급규칙"을 만들어 보고 "학칙"에 반영하는 활동 실시 가능

인천 00중 학급 평화규칙 11조(2학년 4반)

1. 떠돌이 없는 깨끗한 뽕을 만들자
2. 친구를 돕고 칭찬하여 나쁜 짓을 멀리자
3.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4. 폭력을 쓰지 않고 태도로 해결하자
5. 학교 물품은 아껴 쓰자
6. 친구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자
7. 청소를 열심히 해 깨끗한 뽕을 만들자
8.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해 건강해지자
9. 친구들이 싫어하는 장난은 괴롭힘임을 알자
10. 준비물, 숙제 등 수업 준비를 잘 말자
11.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자



17

학칙 개정과 학생 자치활동

2 학교단위 의견수렴(학생회 중심)

- 전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토론회 등 의견수렴
- 학생음부스맨, 청소년(어린이) 법제관 등 운영
- 운영시, 학생자치법정 등 자치활동 관련 제도와 연계

사례 스티커 붙이기를 이용한 의견 수렴 방법(00중학교)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유의복장, 생활원정제(그린매일제) 규칙제정은 스티커 붙이기를 이용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

- 상점 항목 및 배점/별점 항목 및 배점을 열거한 후 A3크기로 출력하여 교문 등에 게시한 후 학생들이 등교를 때 꼭 지켜야 할 항목에 스티커를 붙인다

상점/배점	항목	상점/배점	항목
항목1	1 2 3	항목1	1 2 3
항목2	1 2 3	항목2	1 2 3
항목3	1 2 3	항목3	1 2 3

교원

- 같은 방법으로 교직원 식당에 게시한 후 스티커를 붙인다



18

학교규칙 준수방안

1 서약서/동의서 받기

학교규칙 준수 서약서/확인서의 의의

-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합의된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
- 학칙에 대한 동의서나 확인서를 징구는
학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19

학교규칙 준수방안

○ 부모 동의서(미국 샤프스타운 고등학교)

학생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 수령 확인증

의 학부모/보호자님께

전례하는 부모/보호자님께

여러분의 자녀는 학생 규정집을 한 권씩 받았으며 이것을 읽고 부모님께 전해 드려도록 지시 받았습니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이 규정집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문이나 걱정되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적어서 담임교사에게 보내시거나 해답을 위해서 교감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생이 학생의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을 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양식을
완성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하여금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샤프스타운 고등학교 학교장 XXX드림

확 인 증

샤프스타운 고등학교의 학생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을 받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학 생: ☐ 학생 ☐ 부 ☐ 모 ☐ 기타 ☐ (성명:)

학부모/보호자: (서명)

* 출처: 서울시교육청(2007), 『영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144페이지

20

학교규칙 준수방안

2 학교행사를 통한 공유(서약서 등)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권장 사항)

-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에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학교규칙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준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입학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조하는 요식 행위가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학교규칙서약식

학칙이 중심이 되는
학교 전통을 확립

책임감, 공공의식, 준법의식,
민주시민의식 함양

실천적 양성교육 실현

TIP

학교규칙 준수 선언문(예시)

우리는 OO중학교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선택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학) 생 우리는 산후배 및 친구들과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질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규칙을 준수한다.
- (학) 부와 우리는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 (교) 장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감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질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2012.

학생 대표 :
학부모 대표 :
학교장 :

21

학교규칙 준수방안

사례

OO고등학교 공동체생활협약 추진과정

① 신입생 OT에서 학생의견 수렴

② 각 주체별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 정하기

③ 각 주체별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④ 공청회 개최

⑤ 공청회 후 주체별 의견 수렴

공동체 생활협약 확정

1. 학생의 약속 중 불응사항이었던 두명, 화장, 피에싱 등에 대해, "개성의 표현을 존중해도, 공동체에서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할 요구할 수 있다"의 수정안이 수렴
2.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준수의 의무
 - ① 3주제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는 교사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에 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한다
 - ② 각 주체별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약속사항을 점검하고 상호 비교·평가·토론하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에 의견수렴을 설치하여 생활협약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하여 각 주체의 단위에서 해결한다
 - ④ «공동체 재해결위원회 관련 규정 제 8조 ②항 2»에 의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의 성숙위원으로서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내 봉사에서 퇴학까지 할 수 있다

22

학교규칙 준수방안

사례

OO고등학교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교사의 약속



- ① 체면을 하지 않는다
-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 ⋮
- ③ 일체의 존치를 받지 않는다

학생의 약속



- ① 수업시간에 줄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 ⋮
- ② 두벌, 화상, 피어싱은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협감을 준 경우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학부모의 약속



- ① 학교 일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 ② 학교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
- ③ 점을 충분히 채운다

4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1.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의의

•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사례

외국의 용모 규정

미국 Steller Middle School(Oregon주 Portland) 규칙



- 복장규정** 외투와 모자는 실내에서 착용 금지한다.
바지는 허리에 걸쳐야 하며, 바닥에 끌려서는 안된다.
옷에 폭력 및 연중·성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자를 새기거나 쓰면 안된다.

호주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규칙



- 복장규정** 교복 착용 규정, 자유복 착용 규정 등 엄격 적용하며, 신발은 갈색 가죽 신발, 체육시간 흰색, 검은색 운동화로 제한한다. 가방은 매가넷 학교 가방을 사용하도록 한다.
- 두발규정** 머리카락이 갈라 밑으로 내려올 때 리본으로 묶어야 하며, 머리색깔은 자연 색을 유지한다.
- 동반규정** 학생들의 외장 및 손톱 매니큐어는 금지한다.

* 출처 : 조금주(2008),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에 시사점, 비교교육연구(제18권 제1호)

25

2.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의의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사례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 및 운영(경기 00중학교)

단계	주요 실천 내용
규정 만들기	- 휴대폰 사용규정에 관한 학교 자치의 계획 - 휴대폰 사용규정 제정을 위한 교육가족 협의회 개최 - 휴대폰 사용규정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 토론회 - 휴대폰 사용규정 제정 및 공포
연수·홍보	- 가정통신문 홍보, 규정집 제작 학교홈페이지 홍보 - 휴대폰 사용 및 규정 운영에 관한 교원 협의회
시행	- 휴대폰 관련 가맹 구입 - 사용제한 거부 학생에 대한 학생, 학부모 상담 - 사용 학생 생활관찰자에 의한 부검 - 교내 셀렉트폰 전파기 설치 - 사용제한 거부 학생에 대한 학교 동의
학생선도 및 표창	- 무수 학생 및 학생에 대한 장전·꺼리의 날 운영 - 휴대폰 사용 방법 학생 리더십 담당 선생님 상담 -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에서 합동 교정 협의회 개최 - Web 클래스 상담 지도 - 학교 핸드폰 수거 봉사활동

26

3. 소지품 검사 규정

의의

-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 무기류, 음란물 등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사례

학칙 중 소지품 검사에 관한 조항(예시)

제00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생들은 항상 소지한다.
- ② 학생은 음란물(음란매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양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필러제 등), 용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임의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27

4.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의의

-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의 여러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
-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역량 학습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사례

4-Clean+2 운동(00중학교)

4-Clean

욕실까지 맡기, 휴지 버려지 맡기
휴면까지 맡기, 휴대폰 사용 맡기

+ 2운동

수업시간 참중하기
수업시간 할 자기기



-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지도·우수학생 상점, 부진학생 벌점 부여
- 시종시간 열리며 학생들이 시작종이 울린 후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계도
- 등교 후 휴대폰은 휴대폰 가방에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어 수업 집중도 향상
- 4-Clean+2 운동 태너를 복도에 설치(8과)
- 4-Clean+2 운동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매주 수요일
- 4-Clean+2 운동 실천 다짐대회 및 소감문 쓰기(다짐대회 5회, 소감문쓰기 1회)

28

5.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의의

- 학교규칙의 타당성 있는 제·개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
- '학교생활에 관한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사항'은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사례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00중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제정·개정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생활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 연구활동 보조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조직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규칙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본교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교내지도계, 학생회장, 학생자치협동부장, 자율부장, 학부모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등 9명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준한다.
- ⑤ 위원회는 자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결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대차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절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사항

- ① 위원의 재직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⑤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과 다른 학교장의 요청

6.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의의

-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

TIP 상·벌점 항목 선정

- ① 상·벌점 항목은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과 관련된 항목으로 정한다. 단, 중대한 비행(도박, 부정행위, 교서에게 폭력, 음주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학교폭력(학폭, 교폭)행위, 공동생활, 성폭력, 태도등 포괄 14가지 사항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처지원위원회 규칙에 의해 조치하도록 한다.
- ② 상·벌점 항목은 가급적 배소한 것으로 정하고 벌점항목이 상점항목 보다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한다.
- ③ 교내 청소봉사,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벌점을 삭감할 수 있는 상·벌점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사례

상·벌점 누적에 따른 학생지도 계획(부산 00중학교)

상점 관리

- ① (상점부여)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
- ② 한 학기당 상점 누적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학생
→ 도서상점권 등 상점 수여
- ③ 한 학기당 상점 누적 20점 이상인 학생
→ 교내 모범생 수상, 교내외 장학금 우선 추천
- ④ 학교생활기록부 원동발달상황란 해시 내용 기재
→ "준법정신이 뚜렷하고 상·벌점만 높으며 모범적인 학생" 등

상점 누적에 따른 벌점 관리

- ① (벌점부여)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
→ 생활에 따른 액션대 행동 부재 / 벌점 적용
- ② 벌점 누적 15점 이상일 경우
→ 생활지도부 선생님과 상담 내용도 지도 받음
→ 벌점 후 사건을 행동대행 방법상과 상담을 실시
- ③ 활동 종료 후 벌점상세서에 벌점, 날짜, 활동내용을 기업원 후 확인 사인을 받음
- ④ 벌점상세서를 생활지도부 기록선생님께 제출
- ⑤ 학년말 기준으로 벌점을 0점으로 매 상·벌점, 학교생활기록부 원동발달상황란 해시 내용 기재
→ "책임감과 성실성이 다소 부족한, 준법정신이 다소 부족함" 등

7. 교육별

-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
-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사례

성찰길 걷기(경기 00고등학교)



구분	내용
운영 목적	• '성찰길'을 걷고 동료들과 신을 오르면서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며 새로운 자신을 정립한다.
운영 내용	• '성찰길' 코스는 약 14km 정도로 4시간 정도 소요되며, 봉편하고 좁은 길에서 시작하여 갈수록 물길에 넓어진다. 특히 마지막 코스의 아름다운 일몰 풍경은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 코스에서 성찰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느꼈던 점들을 글로(심대 연구회)가 편지쓰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작성하고 발표하여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도록 한다.
운영 결과	• 교내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 교사와 동행하면서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찾는다.

31

8. 학생자치법정

-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벌을 수행

기대효과

- 학생자치의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됨
- 규범적 개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 배양

단 계	주요 실천 내용
제반 전	• 학생자치법정 담당교사 자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규정으로 재·개정 •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및 홍보 • 학생자치법정 구성 인원 및 선발 • 학생자치법정 공간 구성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법정 개최 일정 통보 • 검사의 개소 및 변호인 활동 시작 • 검사, 변호인 원고 준비 • 법정구성원 시나리오 작업연표 및 법정 개최 준비
제 반	• 학생자치법정 개최 • 학생자치법정 실시 • 긍정적인 결과 부여
제반 후	• 긍정적인 벌 또는 과제 이행대부 확인 • - 자치법정 담당교사, 불성실 미행 및 태머원시 (소)선도위원회 회부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및 소감문 작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자기 학생자치법정에 반영



32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학생 생활협약

- 학칙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협약형태로 정한 것
-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자율협약이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학칙중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학생 생활협약

학칙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지키기로 약속한 사항

사례

좋은 수업을 위한 우리의 약속과 다짐(00고등학교)

우리 00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수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적인 학교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우리의 약속과 다짐'으로 정하여 성실히 지켜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00고등학교 교사들은,

- ① 모든 학생들에게 경쟁력 대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질문에는 성심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 ② 같은 교과 담당 교사들끼리 공동으로 수업 연구를 하겠습니다.
- ③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④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 ⑤ 늘 학생들의 수업 이해 상태를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00고등학교 교사들은,

- ① 수업중에 물러온 즉시 교실에 들어와 지분의 수업 중책을 갖추겠습니다.
- ②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는 분명히 대답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슴없이 질문하겠습니다.
- ③ 수업과 관련된 선생님의 자시에 언제나 해의 배는 대도로 따르겠습니다.
- ④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일체의 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 ⑤ 수업시간에 잠이 오면 교실 뒤쪽에 나가 서서 수업을 듣고, 잠을 쫓 다음 자리에 돌아와 앉겠습니다.

00년 0월 0일
00고등학교 교사 학생 공동(제8권 제1호)

313

5

마치며 : 향후 추진계획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향후 추진일정(학교별)



- 학교규칙 개정·정비('12. 5~8월)
- 학교규칙 연수 참여, 홍보 협조('12. 5~9월)
- 홍보동영상 제작 중(약 10분, '12.5월 말 부터 배포)
-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 실천운동 전개('12. 9월~)
- 학교규칙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12. 9월~12월)



35

참고자료안내

○ 학교규칙 운영메뉴얼(초등용·중등용) 참고

-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및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홈페이지(<http://school.nypi.re.kr>)에서 다운로드

○ 참고사이트

- 교과부·법제처,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포털 사이트
(<http://schoollaw.lawinfo.or.kr>)
-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센터(학생자치법정 등)
(<http://www.moleg.go.kr>)
- 법사랑 사이버랜드(학급헌법 만들기 등)
(<http://cyberland.lawnorder.go.kr>)
- 법제처,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http://www.moleg.go.kr/child>)



36

감사합니다



[자료 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2. 6

관 계 부 처 합 동

차 례

I.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62
II. 학교폭력의 원인	65
III. 학교폭력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	66
IV.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69

직접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70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76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84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89

근본 대책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95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109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113
V. 추진 체계	119
VI. 향후 추진계획	

I.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 형사 처벌 받는 폭력

- ① 「**형법**」 : 상해(제257조), 폭행(제260조), 감금(제276조), 협박(제283조), 약취·유인(제287조), 명예훼손(제307조), 강요(제324조)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
※ 초4-6학년 : 36.0%, 초1-3학년 : 17.6%
- 가해학생 중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
※ 초4-6학년 : 43.1%, 초1-3학년 : 14.9%

☐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9% 수준**(최근 3년간 동일)
※ '10년 심의건수 총 7,823건 : 초 231건(3%), 중 5,376건(69%), 고 2,216건(28%)
-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 수준**('10년 대비 '11년)
※ 국민 신문고 학교폭력 관련 민원 : '09년 2,017건, '10년 3,237건, '11년 4,269건
- '10년 대비 '11년 증가율 : 초 5.1%, 중 35.6%, 고 19.6%

□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 :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에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이 필요
-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 발생

※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의 비율 : 10.3%

□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 확대

-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금품갈취 포함) 46%, 사이버폭력 34.9%, 성적 모독 20.7%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
 -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

※ 최근 학교폭력 피해 유형 : 맞았다(1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2위),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3위),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5위)

-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거나(44.0%),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친한 주위 학생과 함께(33.4%) 폭력 행사

※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회 이상의 비율 : 61.1%

□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 '일진' 등 학교 내 영향력 증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이름
-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고, 학교별 일진이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 발생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매우 낮은 편

-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에도 방관하는 경향
-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 조치에 치우침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수준 】

학생	▶ (피해자)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보복을 우려 ※ 피해학생의 57.5%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 :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 ▶ (가해자)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 ※ 가해 행동 이유 : 장난(1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위), 오해와 갈등(3위) ※ 가해 후 상황 :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음(1위), 피해 학생과 화해(2위) ▶ (목격자)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보복이 두려워 방관하는 경우가 다수 ※ 목격자의 62.0%가 방관하는 이유 :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1위), 관심이 없어서(2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위)
학부모	▶ (학교폭력에 관대)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 (학교폭력 정당화)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으로 돌리려는 경향
교원	▶ (온정주의적 시각)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에 치우쳐 조치 ▶ (학교폭력 은폐 경향)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 유발 신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

II. 학교폭력의 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부족
 - ※ 한국 학생의 언어적·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 신체활동 참여 기회 부족
 - ※ 과도한 스트레스 →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 소통·감성 능력 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 제도 미흡
- 교사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 ※ '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 : 개인생활지도(3.74) < 사회생활지도(3.81) < 수업실행(3.88) < 평가 및 활용(3.89) < 수업준비(3.94)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

- 자녀와의 대화·학교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형제가 없는 한 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약화

□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경향
 -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 있음'+ '영향 있음')
- 인터넷, 게임 산업을 경제적·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 미흡

Ⅲ.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정('04.7)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수 차례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 ◆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족
- ◆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 미흡

□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가치인 '인성' 교육 소홀

- 현 정부 출범이후 창의·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창의성 향상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성교육의 성과는 낮은 편
 -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함양 요소가 연계되어 있지 못해 학생 발달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에 한계
 - ※ 특히, 또래문화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중학교의 인성교육 방향 제시 미흡
 -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실천·체험 중심의 교육 부족
 - 학교 인성교육은 비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며, 교과에서는 지필 평가를 위한 지식 습득 중심
 - ※ 봉사활동, 계기 교육, 강연회, 수련회 등을 통한 행사 위주로 1회성 교육에 그침
-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이 미흡하여,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실정
 - ※ 수석교사 선발, 학습연구년 대상 교사 선발, 각종 시상, 교장·교감 승진 등에 있어서 인성교육 우수 교사 우대책 미흡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성적중심의 학생 선발 관행 지속

□ 학교폭력 신고 → 조사 처리 과정의 문제

- 교과부의 1588-7179, 여가부의 1388, 경찰청의 117 등 신고전화가 각 기관에 산재하여 신고자의 혼란 가중
- 기존 경찰청 소속 '117 여성·아동·청소년 경찰 지원 센터'에서 상해·폭행·성범죄 이외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대응 미흡
 - 경찰청, 시·도교육청, 학교 간 가해학생의 인적 사항 및 학교폭력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 부재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의 한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의 구속력 미흡
 - 전학, 특별교육 등 법률 상의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 불가
 -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학교 폭력=범죄”라는 인식 부재
 -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력 약화
 -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중학생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에 그치게 됨에 따라 실효적인 처벌 제한
 - 가해학생의 재범방지 및 선도를 위한 사안별 맞춤형 조치 미흡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체계 미흡
 - 보상문제가 지연될 경우, 가해자-피해자 학부모간 또 다른 분쟁 야기
 - ※ 특히, 집단적 폭력 경향이 많은 추세에서 1명의 피해 학부모가 다수의 가해 학부모와 보상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권한역할 부족 및 개입 곤란

-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 부족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법령상 권한 부재
- 경찰에 신고·고소된 사안은 수사 개시를 이유로, 법원에 넘겨진 사건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

□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 미정립

- 학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준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미흡
 - 법무부 지원 프로그램(준법교육, 학교자치법정),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생활평점제 확대 운영 등에 의존
 - ※ 국내외 초등학교 교실학습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결과(교육과정평가원, '07)
 -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그렇다’고 답한 비율) : 프랑스 63%, 영국 54.3%, 일본 20%, 한국 18.4%
- 학생생활규칙 등 학생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인성 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

□ 학교폭력 유발 환경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 미비

- (온라인 게임) 산업육성위주의 관련 법령으로 인해 게임 중독 등 교육적 역기능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
- (인터넷·SNS) 폭력만화·음란 동영상 등 유해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책 미흡
 -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SNS에 대한 대응책 미비
- (일진 등 폭력문화) 성인사회의 조직적 폭력집단 문화를 학교에 유입하는 학교 내 폭력서클에 대한 대책 미흡

IV.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목 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직 접 대 책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대처권한 부족 및 학교폭력 은폐	⇒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은폐시 엄중조치로 책무성 확보
	②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신고번호 분산 체계적 대응체계 부재 처벌 및 보호조치 미흡	⇒	신고체계 일원화 조사·지원기능 체계화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근 본 대 책	③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건전한 또래문화 미형성	⇒	학생간의 자율적 갈등해결 학교단위 예방교육 체계화
	④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참여 부족, 무관심 책무성 미흡	⇒	학부모 교육·자원봉사 확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근 본 대 책	⑤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업성취 수준은 높으나 인성·사회성은 낮은 수준	⇒	바른생활습관, 학생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⑥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민·관의 유기적 대응 미흡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	민·관 협력체제 강화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⑦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기능 미흡	⇒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
- ◆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 지원

①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① (가해학생 즉시 조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실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 신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1. 보복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
-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없이 출석정지 조치 가능

※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이 기간은 출석일에 미산입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 하여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방안 논의

- 위원회에 관련 외부 전문가(경찰,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학교폭력관련 법령, 갈등 예방과 해결 등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 실시

-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보고하도록 제도화하여 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과 후·주말 개최 제도화

③ (학교폭력 은폐시 엄중 조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

- 교원이 학교 폭력 은폐 또는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우 반드시 징계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포함
- ‘학교폭력 은폐 및 부적절한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에 제시(12.3월 배포)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2조 관련 별표 및 제4조제2항 개정

※ 현재 훈·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정 시 징계 감경 가능

【현행 징계 감경 제외 사유】

1.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 유출, 학생성적 조작,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등 비위
4.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직무

②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① (복수담임제 도입 등 담임의 역할 강화) 담임교사는 조례 및 종례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 실시

-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거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학생들과 밀착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12년에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 '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

※ 추가 배치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 지급**

- 담임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 적극 권장**

【복수담임제 운영 방안】

- 담임교사가 2명인 경우,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되,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함
- **학급 역할 분담 예시**

운영	담임A	담임B
예시 1	알림사항 전달·급식·청소지도 등 학급운영 , 학생상담·출석 및 지각 점검·학부모상담·복장지도 등 생활지도 업무	학적관리, 학급행사 운영, 학급관련 행정업무 등
예시2	전체적인 학급 관리	학교폭력, 수업 등에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학생 관리

- ② **(학생생활지도 누적 기록관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③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 기록 보존 기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④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 학교마다 생활지도 부장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인력 등으로 '생활지도전담팀' 구성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현황(총 13,821명) : 초등학교 5,331명, 중학교 5,266명, 고등학교 3,224명

※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하여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청·지원청의 불필요한 공문 발송 억제

※ 교육청의 공문감축 실적 및 교사의 업무경감 만족도 결과를 시·도교육청평가에 반영하여 재정 차등지원 추진

- 학교폭력 등 분쟁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시·도별 설치된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및 법제화

* 교육법률지원단의 설치 근거 :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교육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 상근 배치

⑤ (상담인력 확충)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의 확대 배치 추진

- 전문상담교사 증원 : ('11년) 883명 → ('12년) 1,383명(+500명) → ('13년) 2,383명(+1,000명)

※ 신규채용 및 기존 전문상담자격이 있는 교과교사의 전환을 통해 확보

- 계약직 전문상담인력 :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중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전문상담사 전면 배치(약 3,500명)

※ 계약직 상담인력의 보수운영체계를 일괄 정비

- '12년에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13년까지 모든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소규모학교 제외)

※ Wee클래스 설치 중·고교수 : ('11)2,278개교 → ('12)3,800개교 → ('13)4,800개교

③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① (교원양성과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가운데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 신설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포함

- 교직소양 이수기준인 '4학점 이상'을 '6학점 이상' 이수로 변경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 이수 의무화

- 교육대학용 맞춤형 학교폭력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전체 교육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교대의 상담, 심리전공 교수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의 형태로 맞춤형 교재 개발 추진

② (교원임용개선)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발생시 문제해결능력 등을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통해 측정

-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 생활지도 등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 문항 출제

※ 2012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

③ (교원연수개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

자격 연수	▪ 교장 자격연수 과정에 학교폭력 근절 관련 내용 대폭 확대 ▪ 1·2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중 생활지도, 학생이해, 상담 관련 과정 확대 ※ 생활지도 관련 표준교육과정 6% → 20% 이상으로 확대
직무 연수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학교폭력, 생활지도·상담 등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대폭 확대 개설 ※ 학교폭력관련 전문과정 개설 및 일반과정의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 ▪ 교사들이 학교폭력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 학교폭력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연수 지원(법무부) ▪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등을 직무연수에 적극 활용 - 이론강의 중심 → 상황대처방법 중심으로 강의 ▪ 교사 언어 순화프로그램 운영(학생과의 대화시 존대말사용 등) ▪ '12년 교장·교감 대상 학교경영선진화과정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 대폭 강화 ※ 초·중·고·특수교장(2,000명) :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 영역 확대 ※ 초·중·고·특수교감(500명) 생활지도 담당 교감 우선 선발

- ◆ “학교폭력은 은폐되지 못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신고-조사 등 대응체계 개선
-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추진
-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부령)」 제정

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① (신고센터 설치)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1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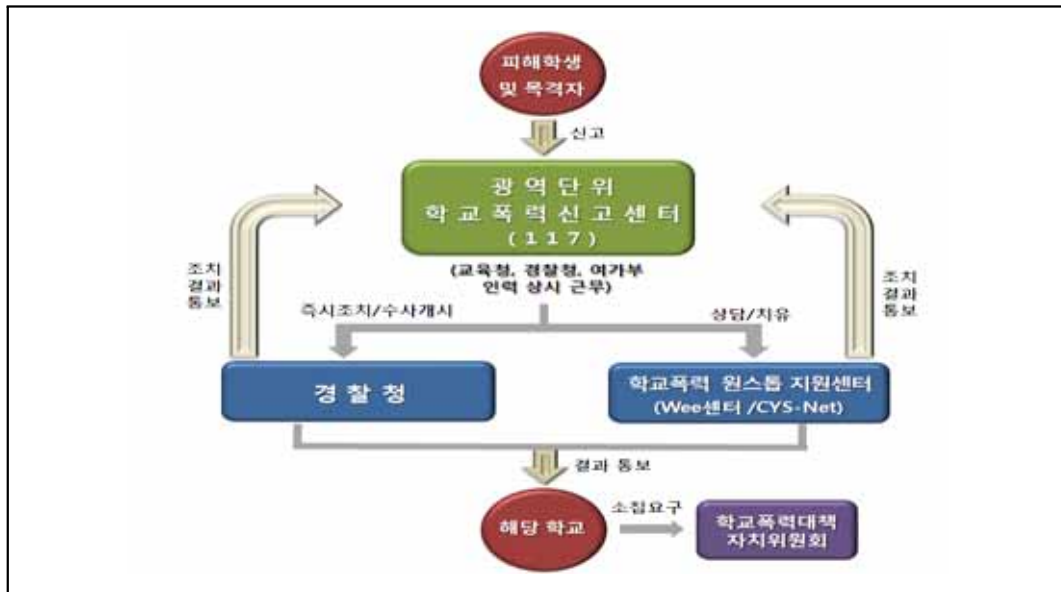
지역	기관 설치 장소	신고센터 운영기관
특별시/광역시	지역 소재 Wee센터 활용(8개소)*	경찰청
도지역	지역 소재 CYS-Net 활용(9개소)	

* 경기 1개소 포함(경기도의 경우는 Wee 센터, CYS-Net 각 1개소씩 활용)

-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
- 1개소에 3~6명이 한 팀이 되어 상시 근무하며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기관 연계·배분 실시

※ 1개 센터당 12~24명, 17개 센터 총 204~408명 소요(경찰청, 여가부, 교육청에서 파견)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체계도 】



② (신고센터 기능) 학교폭력 신고 접수, 유관기관 연계, 처리결과 분석

-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 Wee 센터 126개(교육지원청 단위), CYS-Net 186개(시·군·구 단위)

- 경찰청 및 상담센터는 신고센터로 이송을 받은 사안의 최종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

※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 내용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통보

- 통보를 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사건 종결

【 117 신고센터 개선 사항 】

구분	기존 경찰청 117 신고센터		부처합동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주관기관	경찰청	⇒	경찰청, 여가부, 시·도교육청 합동
신고후 조치	경찰 수사 개시	⇒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 개시, 자체조사, 상담기관 연계
접수한 사안에 대한 학교 통보	의무없음	⇒	학교장 통보 의무화 단, 피해자가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보 유예
가해자 개인정보 교육기관 제공	규정없음	⇒	시·도교육감에게 가해자 수사 또는 조사결과 통보
신고후 가해자 격리	수사개시 후 가해학생 정보 접근 곤란	⇒	학교장이 신속하게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격리 조치
가해자 징계	수사 종결, 재판 종료시까지 학생징계 연기	⇒	학교장이 즉시 조치 가능

③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전국 Wee센터, CYS-Net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

- 원스톱지원센터의 **학교폭력전담 상담사**는 상담을 실시하고,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관련 조치 실시

※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는 각 센터 내 **운영·실무협의회** 및 **상호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확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병원 지정, 법률 상담** 등 지원
- 기존의 위기학생 상담·지원기능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배치 및 조직 보강

④ **(학교폭력 조사기능 강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조사 인력 지정

- 학교폭력 조사 담당직원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소지 및 제시

【학교폭력관련 조사의 범위】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필요시 학부모 소환 조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및 학교폭력 관련 민간기관 및 업소 관리 점검

- 학교폭력사안 조사 결과는 학교장 및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조사 담당 직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실행 지원

※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담과(학교폭력근절담당관)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실행 지원】

- 학교통학구역에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둔 학교로 가해학생 전학 조치
- 퇴학처분 또는 자발적 퇴학 학생을 위한 교육, 재입학 조치 기준 마련 등 재활 프로그램 제공
- 가해학생 재활치료 및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병원 지정 등 운영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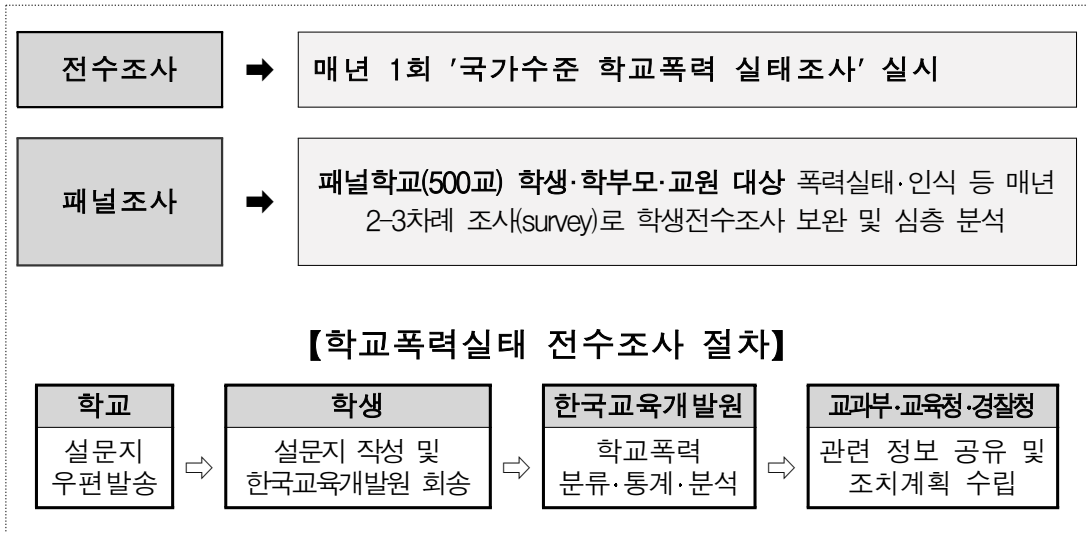
②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가수준 학교폭력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실시

-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주관하여 학교·지역단위의 학교폭력 은폐 예방
-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유하고, 업무 공조를 통해 학교폭력 위험지역(학교) 집중 지도·관리 실시

※ 학교폭력 고위험 징후 학교를 선별하여 별도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지속 관리

- 폭력실태조사 결과(117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포함)를 교육청 단위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②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개선) 학교폭력관련 학교정보공시 항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가 학교폭력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 경찰청 117 신고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피해학생 치료·상담대기 기간 등 학교의 폭력해결 노력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복수지표 개발

③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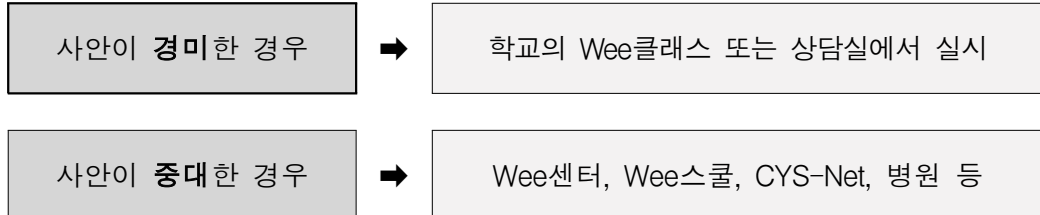
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은 일정기간 경찰에 피해자 동행 보호 실시 및 가해자 감독 요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 조치 삭제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배정한 후, 가해 학생은 추후 별도 배정

②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인지 즉시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③ (학교폭력피해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 Wee센터 · CYS-Net 등을 활용하되, 현재 전국 22개 병원에 설치된 학생폭력 · 여성 · 성폭력관련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협력

※ 형사사법 등 법률담당은 로스쿨 졸업생, 의료담당은 공중보건의 적극 활용

-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을 마련하고,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마련

④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마련)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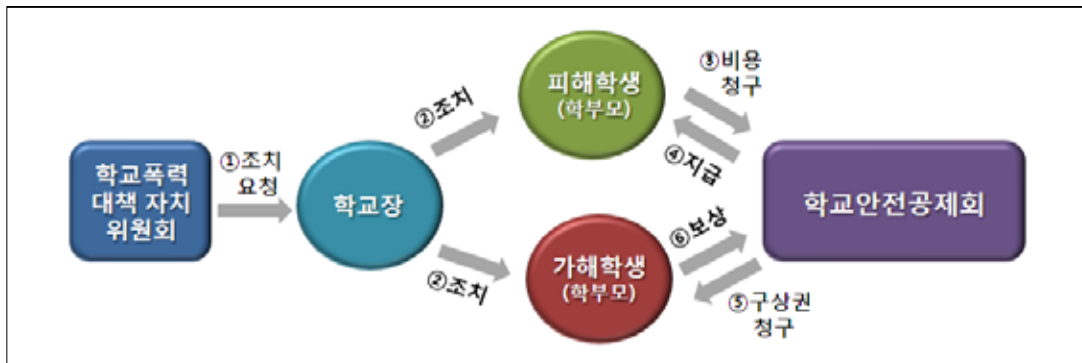
- 교통사고 보험처럼 **학교폭력** 전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와 교육청은 공제회비 또는 교육청 부담액 할증 추진

※ 교통사고 보험처럼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할 경우 **학교폭력** 은폐방지 가능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원 확충 및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지원 업무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조직 개편 추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각 시·도교육청 출연금 등 재원 확보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경우

현행 법령		국회 통과('12.1) 개정		개선안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u>제한을 두지 않음</u>



- ❖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 보상문제로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간 또 다른 분쟁을 하고, 가해자와 합의 못하면 피해자가 전부 치료비용 부담하는 현실 개선

④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① (보복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 조치를 시행

- 보복행위 등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출석일수가 최소 수업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 수료 가능(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경우,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전학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초·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③ (가해학생의 재활치료 지원) 재활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대기기간을 최소화하여 치료 지원

- 시·도교육감은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 필수 운영

※ 재활치료 대기기간 등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이수

-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 추진

- 상호 존중과 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술,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정서장애의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 특별 진로(직업)교육을 병행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Wee스쿨 등 필요시설 확대 추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11)6개 → ('12)10개

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경찰청 협조】**

- ① (경찰청 주관,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 117신고센터 접수내용, 경찰청 학교 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일진 파악 후 관내 경찰서장 지휘하에 엄정 조치

- 지방경찰청, 교육청, 학교, 생활지도교사협의회간 상시 정보공유체계 유지

※ 경찰청, 최근 5년간 연평균 21,000~25,000여명 검거(100~180여명 구속)

- 117과 안전Dream 포털을 연계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안전 Dream팀’*, 경찰서별 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

* 안전Dream팀 : 학교폭력 발생학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및 추가 피해 확인, 피해학생이 원하는 시간·장소·방법으로 조사, 피해학생 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등

- 범죄예방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가해학생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등 확대 실시

- ② (조기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진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 실시

※ 일진형성과정 : 중1 학생들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1차 포섭 → 1차 포섭 학생을 중심으로 6학년때 2차 포섭

- ③ (일진 경보제 도입) 일진은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포착이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일진 존재 여부를 탐색하여 대응

- 일진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 조사 실시

【 일진 지표 개발(안) 】

- | | |
|-------------------------|-----------------------|
| ▪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의 존재 여부 | ▪ 또래집단간의 싸움 여부 |
| ▪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 ▪ 등교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
| ▪ 교사에 대한 폭력 유무 | ▪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 |

-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진 경보 작동

※ 117 신고외에도 SNS, 포탈 지식검색 등에 일진 상담 공간을 개설하여 피해신고 접수

- 학교폭력조사 담당자, Wee 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하여 교원, 학생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실태조사, 교위협군 상담, 전교생 교육 등) 수행

- ◆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Peer Culture) 조성
- ◆ 학교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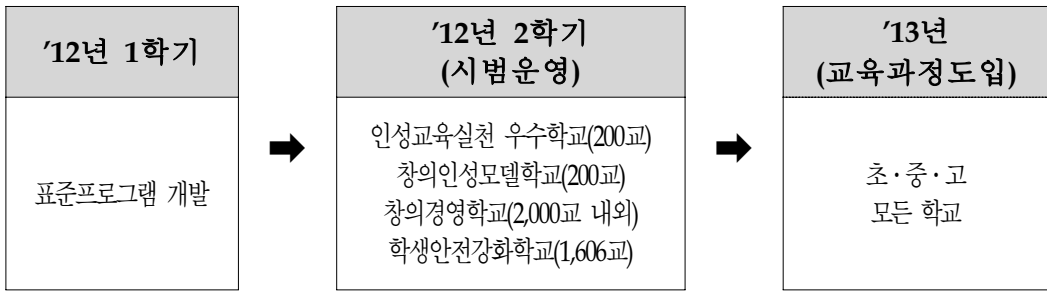
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여가부, 법무부 협조]

- ① 모든 학교가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또래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요]

구분	프로그램 특징
또래상담	▪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 해결 ▪ 갈등의 이상징후 발견 및 예방에 초점 ※ 서울 신연중 : 또래상담반 운영 결과 폭력 발생건수 절반이하로 감소
또래중재	▪ 학급에서 신뢰(추천 등)받는 학생이 훈련을 통해 중재자가 되어 학생 간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전문상담사 등 갈등조정전문가는 이를 지원 ▪ 갈등 발생후 조정 및 화해에 초점 ※ 인천 연수초 : ‘갈등 원원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생 간 갈등문제 해결
학급총회	▪ 갈등상황 발생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갈등해결 모색(소규모학교의 경우 학년총회 운영 가능) ※ 노르웨이, 학급총회가 중심이 되는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60% 이상 감소
학생자치 법정	▪ 학생들이 경미한 학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변론하고 자율적 징계 실시 ※ 경기 행신고 : 자체 학생 변호인단 조직 등 ‘행신 로스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발표력·논리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 발생

- 시범적용기간을 거쳐 '1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 수업(교과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하여 또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안)】

- ▷ 초 4학년 도덕 : 학급자치규약 만들기 ⇒ 중학교 도덕 : 학생생활규칙 만들기 ⇒ 고교 사회 : 학교규칙 만들기
- ▷ 초 5학년 도덕 : 또래상담훈련 ⇒ 초 6학년 도덕 : 또래중재훈련

-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 또래활동, 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련 내용은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팍에 기록
- 매년 실시하는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에서 우수 또래활동 사례 발표회 개최

② (또래상담·중재 도입 지원) 은밀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학생 스스로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활성화 지원

-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 및 동아리 운영 지원(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 또래상담 운영 학교 : ('11) 573개교 → ('12) 3,320개교 → ('13) 희망하는 모든학교

- “또래상담자=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또래상담자로 육성

※ 또래상담자 : ('11) 5,000명 → ('12) 15,000명 → ('13) 30,000명

- '12년중 또래간 갈등관리 훈련을 위한 또래중재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또래상담·중재활동 지도자 양성) 초·중등 교사 대상 「또래활동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연수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보급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 우선 연수

※ 또래상담·중재 지도자 : ('11) 1,140명 → ('12) 6,000여명 → ('13) 12,000여명

④ (학생자치활동 강화) 학급회의, 전체 학생회의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학교문화 조성

- 경미한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교 내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 법정 운영 확대

※ 법무부 지정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 ('09) 35교→('10) 49교→('11) 388교→('12) 600교

⑤ (학생모니터단 운영) 현재 고등학생(1,0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생 모니터단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운영 활성화

-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등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 제시

② '사소한 괴롭힘' 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① (계획적인 학교폭력 예방 추진) '학교폭력 예방·조기발견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반드시 포함

-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연중 실시

※ 피해자, 방관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

※ UCC경진대회, 학급회의를 통해 주기적 토론, 역할극 등 체험식 교육방식 적용

- 설문조사, 신고함,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신고경로를 마련하고, 신고에 즉각 대응

【사례 : 통영 충무중, 휴대폰 문자를 활용한 '1004 지킴이' 제도】

- (내용) 발신번호를 '1004(천사)'로 하고, 학교공용 휴대폰에 학교폭력 신고
- (효과) 1년 만에 폭행·협박 4.4%→1.2%, 집단 괴롭힘 0.7%→0.3%

② (모든 학생 대상 진단·선별)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선별하는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게임·인터넷 중독 포함) 징후를 자연스럽게 선별

- 검사 결과 확인된 폭력 가·피해 징후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층평가 및 조치 실시

※ 현재 초1·4학년, 중·고 1학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중이며,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지원 법제화 추진(「학교보건법」 개정)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학교 내	1차 선별검사	정서·행동 발달 전반 선별검사 (CPSQ, AMPQII)	보건실 Wee클래스
	↓		
	2차 선별검사	문제유형별 선별검사 (ADHD, 우울, 폭력성, 자살생각 등)	보건실 Wee클래스
↓			
학교 밖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인터넷·게임 중독치료 관련 기관, 전문 병·의원 등 연계		

※ 학생 자살예방대책은 '12년 상반기 중 별도 대책 마련

③ (학교폭력예방 자료 보급) '12년 상반기 중 학생 교육자료, 학부모·교사용·관리자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법무부 협조】

- 학교폭력 상황별·단계별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여 휴대폰 앱,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개발

④ (온라인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동영상, 웹툰, 동요 등 콘텐츠를 개발하여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탑재【법무부 협조】

- 유아 및 초등 저학년용 콘텐츠 : 에피소드 애니메이션, 게임(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Q&A 형식의 퀴즈 게임) 등
-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용 콘텐츠 : 학교폭력 온라인진단 프로그램, 선택형 드라마 등)

* 법사랑사이버랜드 : <http://cyberland.lawncorder.go.kr>

③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① (인터넷 포털/SNS 활용) 학교폭력 전문 사이버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전문상담교사(883명),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13,000여명), 또래상담자격 학생 가운데 선발하여 사이버상담사로 활용

※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me2day(SNS) 활용

- 인터넷 사용자의 50%인 1,700만명이 매일 방문, 회원수는 3,400만명
- 국내 청소년층 me2day 이용자 약 600만 명

- 네이버 콘텐츠 검색을 통한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학교폭력' 검색 시 유형, 관련 법령, 피해학생 대처방안, 학교에 요구 가능한 절차 등 소개

② (기존 온라인 상담 활성화) 실시간 상담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징후 학생을 조기 파악하여 지원(24시간 365일 운영)

-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학교폭력 상담기능 강화

-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맞춤 상담 기능과 연계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긴급 구조와 사후 조치서비스 지원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의 적극 공조체제 마련

- ◆ 학교폭력 예방, 자녀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가정 교육을 실천하도록 모든 학부모(약 1,000만명) 대상으로 교육 확대
- ◆ 일과 후 학교설명회 개최(연2회) 및 교사-학부모간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
- ◆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을 확보(약 10만명)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강화

①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학부모교육을 받는 인원 : 175만명('11년) ⇒ 모든 학부모(1,000만명 규모)

- ① (학부모교육 확대 및 다변화) 교육청·학교로 찾아오는 일부 학부모만 교육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가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교육청·학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희망하는 주요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교과부·교육청 등이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타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담당자 연수·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체 실시 촉진
 - ※ 기업·주요 단체 등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실시 협조 요청 및 우수 사례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캠페인 전개
 - 오프라인 교육만 아니라 **학부모교육 포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시 교육·교육정보 제공도 병행하여 실시
 - ※ 각종 기관·단체들의 자체 홈페이지와 학부모교육 포털과 연동 추진 등
 -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확대
 - ※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연수로 개최하여 아버지 교육력 제고 및 자녀와의 일체감 형성
 - 자녀교육에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정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 확대** [여가부]

※ ‘책 읽어 주는 아빠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아버지 요리학교’ 등

구분	교육·교육정보제공 방법(안)
교육청·학교	· 현행 방식대로 하되 학부모 참여 촉진을 위해 가능한 일과 후 등의 시간 적극 활용
중앙정부·지자체 공공단체	· 각 부처·지자체가 중심 이 되어 해당 부처·기관의 직원 및 산 하단체·조직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총리실, 행안부 등 협조)
민간기업	· 기업 등의 자체 직원연수 기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관련 내용 교육 ·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교과부·교육청의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 운영 * 100대기업 교육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12년 3월중) 등 기업 소속 직원 대 상 학부모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추진
각종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	· 각종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신도,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실시(주요 단체대표, 종교지도자 등 대상 협조 요청)
온라인 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 각종 단체·기업 등의 홈페이지와 학부모교육 포털(www.parents.go.kr) 연계, SNS 등을 활용하여 상시 교육 및 정보제공

②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

-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자녀 성장에 따른 **연속적·체계적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자녀 발달 단계별 교육과정** 제공
- 기본책자 및 요약자료, PPT, 동영상, 사이버연수, 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
자료 제작·보급

※ ‘12년도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계획 :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원능력
개발 평가, 자기주도학습지도 등 5개 분야

< 학부모 교육 표준 교육과정 예시(안) >

【학부모 핵심역량 과정】

- **자녀와의 관계 향상** :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자녀의 건강한 성장** :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 자녀의 신체 건강 관리, 바람직한 성교육, 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나눔과 배려의 태도 함양
- **자녀 고민상담** : 이상행동 진단법, 연령별 주요 고민 내용 및 해결 방법
- **진로 및 학업 지도** : 다양한 진로 제시, 진로탐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교육정책 이해**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주5일수업제 등

【발달 단계별 교육과정】

- **유치원** : 바른 생활태도 습득,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 형성
- **초등학교** :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 학습 동기 형성
- **중·고등학교** : 사춘기 단계 심리 안정, 심층적 사고력 배양

③ **(학부모교육 강사풀 구축 및 제공) 학부모교육 분야별 우수강사풀을 구축하여 학부모교육에 공동 활용**

-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관내 기업,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강사 풀 구축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분야별 학부모 전문강사 DB를 구축하여 교육기관별 우수강사 활용
- 유관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및 기관(Wee 센터, CYS-Net,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도교육청 강사 추천 등을 통한 강사풀 확보
- 학부모리더* 대상으로 유관기관(Wee 센터, CYS-Net)과 연계를 통해 분야별 심층 교육 실시로 학부모 강사요원 또는 상담요원으로 양성

※ 학부모 모니터단, 교육기부형 자원봉사자 등 희망자를 중심으로 약 2,000여명 시범 실시

- 학교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학부모 교육에 파견 【여가부】

※ 전문강사 양성 : ('12) 600명 → (향후) 1,000명까지 확대

②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학교설명회 및 핵심정책 학부모교육은 연 2회 일과 후 개최 의무화

① (학교설명회 및 핵심정책 학부모교육) 개별 학교별로 학기당 1회 이상 교육과정 등 학교의 중요 교육 및 학생생활지도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과후) 의무화

- 학교설명회 개최시 **학급설명회도 운영**하여 학생지도 및 학급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 마련
- **학교설명회**시 학교폭력예방, 진로교육 등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학교설명회 개최 실적을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별로 **학운위 위원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 개최

【미국 학부모-학교 간 소통 사례】

- 학기 초 학부모와 교사 간에 아이들의 장·단점과 성적, 학업진행과정 등에 대해 학부모당 20분 정도 면담 실시
- ‘Back to School Nights’, ‘Parent-Teacher Conference’(2회 내외), ‘Open House’ 등 1년에 최소 4번 이상 학부모가 학교 방문

② (학부모 상담기회 등 확대)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 활성화 추진

-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 제공(학교교육계획에 필수 반영)

※ 학부모-교사간 면담 희망 : 찬성(73.7%)>반대(15.7%) <11년, 한국교육개발원>

- 학기초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가급적 **모든 학부모**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상담운영 시간**을 **일과 후** 까지 확대
-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 실시

③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가해학생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관련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도 함께 교육** 이수
- 학교장은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 시·도교육감이 특별교육의 내용, 기간, 장소 등을 정하여 학부모 **특별교육 대상자 지정·통보 및 특별교육 실시**
- 특별교육의 수준과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수준에 따라 결정

※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영국 사례】 범죄 및 무질서법(1998년)에 의거 16세 이하인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상담·생활지도 교육** 이수

【미국 버지니아주】 학생의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학교에서 요청한 면담을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만나도록 명령**

③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①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

-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학교**(약 3,200개)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교육기부 **소모임*** 운영

* 소모임 예시 : 학교폭력 예방,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안전지도 등

-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도 **학교회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기부, 학부모연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 201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부모지원 항목을 편성(기본운영비의 약 3% 내외)하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마련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교당 10명 내외)하여 상담 등 지원

※ 법률, 의학, 복지, 상담, 인성지도, 등학교 및 방과 후 안전지도 등

- 교내외 전문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인근학교 학교폭력 상담요원으로도 참여 가능하도록 기관간 협력 강화

※ 교육기부 '상담요원'이 'Wee센터' 또는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인근학교 상담서비스까지 수행

-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1:1결연하여 상담 자원봉사 실시

【사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도우미 활동, 부산 동의중학교학부모회】

- (초기대응) 가정불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학교가 상담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학부모 상담도우미와 연결
- (운영방식) 1:1 상담 및 학부모도우미와 학생간의 결연 추진(수시연락 상담체제 유지)

- ② (모니터단 활동) 학교폭력 상담전문가 등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단원으로 위촉하고 학부모교육, 컨설팅, 상담활동 등에 참여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오프라인 500명, 온라인 3,000명)을 활용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12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총인원 500명 중 10%를 배정

- ③ (학생생활지도 협력)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협력 강화

-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
 - (누리과정) 바른생활습관체득 → (초·중등) 학생생활규칙 준수
 - 수업 : 실천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 중학교 : 체육수업 대폭 확대(주당 체육수업시수 50% 증대 등)
- ◆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지식교육만큼 비중을 두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전형에 반영

①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 ① (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생활습관 체득) 질서, 나눔, 배려, 협력 등 유아기에 반드시 습관화해야 할 바른 인성 형성에 주력
 -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활동 등 또래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누리과정 운영
 -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등
 - **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60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활동) 시간 확보
 - 토의, 협동학습, 현장학습, 역할놀이, 스토리텔링, 도서 활용 및 세대간 지혜 나눔 전문가 풀*을 활용한 인성교육 추진
 - * 퇴직 중고령 지식층을 중심으로 유치원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풀 구축

【누리과정의 바른생활 습관 체득을 위한 실천행동 예시】

덕목	실천 행동(예시)
질서	▪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놓기 ▪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장소에서 차례 지키기
나눔	▪ 친구와 물건 나누어 사용하기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기 등
배려	▪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보살피 주기 ▪ 친구에게 양보하기 등
협력	▪ 친구와 도움을 주고 받기 ▪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기 등
존중	▪ 나와 친구의 차이점을 알고 존중하기 ▪ 친구의 예술표현(그림, 동극, 율동 등)을 소중히 여기기 등
경로효친	▪ 등·하원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바르게 인사하기 ▪ 어른들께 존댓말 사용하기 등
갈등해결	▪ 친구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 친구와 갈등(다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거나 도움 받기 등

-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교사-학부모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바른생활의 역할모델** 제공

【 교사-학부모의 협력 강화 】

- 미국의 STEP*과 같은 체계적인 부모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 STEP :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일차적인 장소는 가정임을 부모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자료 공유
- ‘**상담노트**’를 활용하여 유치원과 가정을 오가며 유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사-부모 의사소통 창구** 마련

-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인증**) 바른 인성 기르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 독려
- 인증기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인증기간 동안(3년간) 재정지원
 - (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없이 **평가(인증)결과 상위 총 280개원**
 - (내용) 누리과정 운영 및 교사-학부모 상호협력 지도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실천내용
 - (재정지원) 1개 기관당 5~10백만원(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 인증기관 중 시·도별로 가장 모범이 되는 최우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각 1개원씩 선정(총 32개)하여 시범수업 운영 및 모델 확산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인증 체계]

- (1차 추천) 유치원 평가(3년주기)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3년주기) 사업과 연계하여 평가위원들이 바른 인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심사하여 시·도(교육)청에 추천
 - * 실천적인 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인증) 기준 제공('12. 2월 중)
- (2차 추천) 시·도(교육)청에서는 1차 추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교과부·보건복지부에 추천
- (최종 선정) 교과부·보건복지부(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②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①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

- 또래문화 형성기인 중학교 교육목표로 자아정체성 함양, 인간 존중, 관용과 배려에 기초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강조
-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 →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
 - * 인성 핵심 역량 :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② (바른 언어습관 및 소통 중심의 국어교육) 직접적인 욕설이나 모욕, 인터넷·SNS 등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적극 대응

- 구체적인 사례와 체험을 바탕으로 한 바른 언어 사용, 자기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내용 반영
- 언어문화 개선 우수 선도학교에서 개발한 언어문화 개선, 우리말 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 실시

※ (전북부안여고) 선플누리단 'YES'의 선플달기 캠페인 : 지역을 순회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 전개(시민 봉사대회 대상 수상)

구분	현행 교육과정(국어)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1~2학년) ○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5~6학년)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 중심의 수업 구현
중학교	<듣기·말하기> ○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 서로 다른 집단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다.	공감적 듣기와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구현

③ (인성 핵심역량을 실천으로 체득하는 도덕·사회교육) 따돌림 문제, 친구간의 갈등, 학교폭력,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업 운영

-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대안을 찾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에 직접 적용

※ 사회교과의 경우, '통합 사회' 과목을 적극 활용

[사례] '따돌림 해결하기' 프로젝트 학습

▮ 도덕교과 대주제 : 나는 누구인가?

▪ 수업의 절차

- 학생 모둠(4~6명 내외) 구성 ⇒ 모둠 별 준비 계획 수립 ⇒ 관련 지식 학습(전문가 초청 등) ⇒ 모둠 활동 계획 완성 ⇒ 전시회 또는 체험 학습

▪ 소주제 구성(예)

- 1모둠 :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 및 실태 파악하기(언론 보도, 설문 조사 등)
- 2모둠 : '따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 3모둠 : '따돌림' 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 자아 상실감 등을 소재로 한 역할 학습 꾸미기
- 4모둠 :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하여 발표하기
- 5모둠 :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및 광고 만들기

- ④ **(융합형 인성수업 실시)** 국어·도덕·사회·체육·예술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모형 개발하여 '12학년도 부터 적용



- 스토리텔링 방식,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사례·활동 중심 인성 교과서’ 개발

※ 크리스틴 볼머의 인성 교과서 ‘We are a Team’(두 학생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 실시)

【예시 : 융합 교과 단원 (체육+도덕+사회)】

- 팀별 운동경기를 통해 규칙의 필요성, 규칙 준수의 중요성, 페어플레이 등 올바른 경기 자세를 학습
-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팀의 개념을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로 확대
-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할 준법, 정직, 배려, 권리, 의무 등 학습하고 실천

- ⑤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

- 학생오케스트라·합창·뮤지컬·밴드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단체 음악예술활동 지원

※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사업 : 65교('11) → 150교('12)

※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청 지원사업(합창·유지컬·밴드 활동 지원)
: 선도교육청 20개 지정(100개 학교 지원)

- 디자인, 영상, 조각, 회화, 가창, 기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는 ‘학교 예술동아리’ 사업 추진(500~1,000개)

※ 문화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12, 4,300명)

- 음악·미술 교과 내실화(시수 증대 및 수업방법 개선) 및 타교과와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는
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100개교)

※ 소그룹 토의활동 수업방식*을 통해 문제해결력 향상, 토의를 통한 상호 공감과 배려 기회 확대 / *타교과 융합형 소그룹활동 프로그램('11년 150개 개발) 활용

⑥ **(독서활동 강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시 다양한 독서활동* 적극 활용**

- 독서활동 및 독서동아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모델 개발·보급

* 책 축제, 연극, 독서토론, 독서캠페인, 책 쓰기 등

-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우수 사례 동행 독서동아리** 지원(500개 내외)

⑦ **(학교문화를 바꾸는 창의적 체험 활동) 졸업식 시기에 '뒤풀이'를 빙자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6·중3·고3과정에 소통-나눔-축제형 졸업식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 운영**

※ 졸업식 외에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음주, 흡연, 게임 등)를 다룰 수 있는 창체활동 운영

⑧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또래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중요한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또래중심 프로그램 확대

※ 중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 : '11년 14.4만개 → '12년 20만개

- 대학주도 사회적기업*(13년 50개), 언론기관(15개), 지자체, 교육기부 등을 통한 민간 프로그램 도입시, 프로젝트수업 등 또래활동이 강화된 프로그램 우선 개발·지원

* 교·사대 및 예체능계열 졸업생 중심의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설립

- 중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생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특기·적성프로그램 확대**('11년 2.9만개 → '12년 7만개)

※ 학교스포츠클럽, 사물놀이, 연극, 탐구토론, 합창, 음악줄넘기, 댄스반, 영어 Skit반 등

3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① (체육수업시수 확대) 신체활동 욕구가 왕성하고, 자기 정체성 확립 시기인 중학생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여 체·덕·지를 겸비한 인재 육성

- 체육수업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증대(3년간 총 8시간 → 12시간)하고, 체육교사 및 스포츠 강사 증원 추진

※ 현행 체육 교과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이수

- 규칙을 존중하고, 절제력, 단결력을 배울 수 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중학교 체육 주당 수업시수 변화】

학년	구분	현행				개정(안)			
		1	2	3	계	1	2	3	계
	체육 교과	3	3	2	8	3	3	2	8
	학교스포츠클럽 과목	·	·	·	·	1	1	2	4
	체육수업 합계	3	3	2	8	4	4	4	12

※ 학교스포츠클럽 과목 예시 : 축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댄스스포츠, 요가 등(‘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에서 권장, ’11.4.5)

’12학년도 2학기	’13학년도~
▪ 학교스포츠클럽 과목 시수(136시간 : 중1 34시간, 중2 34시간, 중3 68시간)를 확보하여 필수 이수(지침) ▪ 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

② **(교내 스포츠 활동 확대)**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1개 이상 가입

※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가입률 : '11년 40.7%

- '12학년도 토요일스포츠 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토요 스포츠 리그 외 주중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중학교 3,000여명)

※ 토요 스포츠강사('12년) : 1,447명(당초 계획) → 4,000명(2,553명 확대)

- 인성교육 실천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를 지원(클럽당 3백만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심사 요소 : 자체 내규(학칙준수, 폭력 Zero, 배려·나눔 등), 연간활동 계획 등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포상 및 사례집 발간('12. 12)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모든 중학교에 1명씩 지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기획, 상담활동 등 지원

※ 「학교체육 진흥법」('12.1.26. 공포) 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교사를 지정

-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 권장

【우수사례 : 청원 내수중, '학교폭력추방 스포츠리그' 운영】

▪ 6개 초등학교 출신 간 학생들의 갈등을 스포츠리그 활동을 통해 해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09년) 8건 → ('10년) 5건 → ('11년) 1건

▪ 스포츠리그 참여 학생은 '폭력추방 서약서' 작성 의무화

▪ 선수 외에 학생들이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의 역할로 참여하여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훈련

③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 리그 확대)** 주 5일제수업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대폭 확대

- 중학교 교육지원청대회를 리그제로 우선 전환('12년)하고, '14년까지 초등학교 및 고교로 확대

※ 교육지원청(178개청) 리그 확대 : 중('12) → 초·중('13) → 초·중·고('14)

구분	'11년도	'12년도 목표
스포츠 리그	서울 11개청, 23개 리그 (136팀, 595경기)	전국 178개청, 890개 리그 (7,120팀, 49,840경기)
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티볼, 넷볼, 킨볼 (7종목)	단체(팀) 스포츠 중심, 남·여 종목 고려 (1청당 5종목 이상)

④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생축제로 발전) 대회 종목을 확대하고,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운영

- 신체활동량, 학생 참여율(재미), 사제동행, 부모동행 등을 고려하여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11년 10개→'12년 30개)

※ 특히, 여학생을 고려하여 댄스(방송댄스, 댄스스포츠 등), 뉴스포츠(플로어볼, 넷볼 등) 등 여학생 선호 종목 포함

※ 기존 10개 종목('11)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탁구, 핸드볼, 피구, 줄넘기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주요 목적으로 인성교육(배려, 나눔, 협동심 등)을 명시하고, 스포츠 인성 캠프* 등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개최

* 스포츠 인성 캠프 : 시와 음악이 있는 인성 스포츠대회 개최(스포츠백일장 등 병행), 스타(스포츠) 예능 등과 함께 하기, 가·피해학생 운동치료, 1社1校 / 도·농간 자매결연 등

※ 대회명칭 변경 예시 : 배려와 나눔을 배우는 2012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구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도>

구분	교내 대회	교육지원청 (시·군·구) 대회	시·도교육청 대회	전국대회
일 정	연중(상시)	연중(상시)	9~10월	11~12월
종 목	자율	자율	자율	30개
출전팀	학급/클럽	클럽(학교 대표)	교육지원청대회 1~2위팀	시·도대회 1~2위팀
대회방식	리그+토너먼트	리그+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주 최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문화부장관

* 종목 : 시·도대회 이하 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종목(30개 종목)을 포함토록 권장

④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 ① (학생생활규칙 운영 내실화) 학생생활 규칙이 학생·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 개선

구분	현행	개선방향
의견수렴	학생의 의견 청취	⇒ 학생, 학부모의 의견 청취
규칙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음	⇒ 입학단계 또는 매학년 초기 학생·학부모의 동의서 제출
규칙 운영 단위	학교 단위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운영
규칙의 내용	규정이 많고 복잡	⇒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
규칙의 성격	징계 등 학생 선도	⇒ 규칙 준수 체득을 위한 인성교육

- 교사,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동의서에 기반하여 교사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 확보
 - ※ 학부모 동의서 작성·제출과정을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형식적·백화점식 규율의 나열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가 명확히 인지하고, 반드시 지킬 핵심 사항 위주로 학생생활규칙 작성
 - ※ 기존의 학교생활규정, 학생 선도 규정 등은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종류가 많아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미흡
- 학교여건에 따라 학생생활규칙 운영단위를 학급, 학년, 학교전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벌칙 부과절차는 학생자치법정, 학생벌칙자율선택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
- ‘어린이 법제관’(초4~6) 프로그램을 중학교(청소년 법제관)까지 확대하여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 과정에 활용 【법제처】

※ '11년 현재 1,800여교 4,300명 → '12년 초등학교 5,000명 / 중학생 300명

【우수사례 : 부산 연제중, 벌칙선택제(PNC) 운영으로 학교폭력 감소】

- (내용) 벌칙 약속(Promise)-벌칙 예고(Notice)-벌칙 선택제(Choice) 3단계 과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생활규칙 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무단결석일수 ('10) 1,648일 → ('11)418일 / 학업중단학생수 ('10) 10명 → ('11)3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10) 3건 → ('11)0건

② (학생생활규칙 현장 착근 지원) '12년 중 모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12년 상반기 중 생활지도부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생생활규칙 모형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등 대상 연수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2학기부터 본격 적용

일정	추진 내용
~ '12년 3월	우수사례집 배포 및 학교장 및 교원 연수
~ '12년 6월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절차 추진 학생생활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 ↓ 개정안 발의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1차 시안 마련 ↓ 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2차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안내 및 홍보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규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학급회의, 학생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 '12년 8월	학생생활규칙 홍보 및 학생·학부모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서약식 및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실시
2학기 중	학생생활규칙 본격 적용

5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 ① (학교생활기록부 인성영역 기재 내실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 학생생활규칙 준수, 동아리·스포츠클럽·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

※ 핵심 인성요소별로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인성요소 및 기재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12.3~4월중 집중 교원연수 실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예시】

- 작성 방법 : (인성요소)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 작성 예시

(배려) 특수반 학생을 도와주고 스스로없이 친구로 지내 선행상을 받았으며,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

- ②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입학사정관제에서 창의성과 잠재력에 더하여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 적극 유도

- 대교협에서 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협동심, 나눔과 배려 등)’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 강화

※ 자기소개서에 인성항목이 신설될 경우 교사의 추천서와 교차평가 가능

- 고교DB정보시스템에 인성교육 실적을 포함하고, 고교 생활지도부장과의 워크숍 정례화 등을 통해 인성 관련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

※ (참고) 경시대 : '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시 폭력 가해학생에게 불이익 부여 계획

-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인성을 갖춘 인재선발을 잘하는 대학 우대

- ③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학생의 자기개발계획서(舊학습계획서)와 교사의 추천서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등 **인성분야**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면접에서도 **인성 요소 평가 강화**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에 인성분야 신설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형자료 작성 및 활용】

자기개발계획서(학생)	추천서(중학교 교사)	면접(고교 입학전형위원회)
▪ 인지영역 : 자기주도학습 결과 및 독서활동 등 ▪ 인성영역 : 인성영역 관련 활동(배려, 나눔, 협력, 규칙준수 등) * 중학교 활동 실적 및 고교 진학 후 계획 기술	▪ 자기개발계획서 및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평가 및 의견 기술	▪ 자기주도학습 과정 등 인지영역 평가 ▪ 자기개발계획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배려·나눔 등 인성영역 평가 실시

⑥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 ①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학교폭력 예방지도 및 사안 해결 등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 우대

- 생활지도 관련 교과연구회·교원 동아리 활동 지원, 특히, 초·중·고 연계 지구별 생활지도부장협의회 운영 지원

※ 최근 학교급간-학교간 경계를 넘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차단

- 스승의 날 포상시에 생활지도 부문 포상비율 확대('11년 20% → '12년 1/3 이상), '대한민국 스승상' 선정시 인성교육 우수자 우대

- 시도별 학습연구년 운영인원의 1/3 이상을 교원능력개발평가 생활지도영역 우수교사로 별도 선발 및 생활지도 관련 연구과제 부여

※ '12년 406개 연구주제 중 생활·인성지도 영역은 70개(17.2%)

※ '13년 1,500명 운영 예정, 300명(20%) 이상 생활지도 관련 연구과제 운영

② (수석교사 역할 확대)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실천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수석교사 선발시 '학생지도역량' 배점비율을 10% → 30%로 상향 조정하고, 2차 역량평가에서 학교폭력 사례 대응능력 평가

※ '12년 수석교사 300명 추가 선발부터 반영('12. 4월)

- 수석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생활지도, 상담 과목 비중 확대('12. 2)
- 수석교사 활동 지도서에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컨설팅 분야 포함·배포('12. 8)

③ (우수학교 지원)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 확산

- 창의경영학교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시 프로젝트 수업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 (현행)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학교문화 선도학교 → (개편)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7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① (추진 방향) 시·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 확대(5점→15점 이상, 100점만점)

-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인성교육 실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 병행
-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실천, 학교폭력 근절 관련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 개발·추진
- 의견 수렴 결과 등 토대로 6월중 확정('13년 평가 반영)

② (평가지표안) 시·도 및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대한 적정성 평가

인성교육 실천	바른인성 우수유치원 인증 비율, 체육수업시수(최소요건), 교내 스포츠 활동 비율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학교폭력 관련 신고건수(117 신고건수 등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가·피해자 재활치료의 즉시성, 상담인력 배치 현황,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실적 등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가정과 사회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협력

①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범부처 협조】

-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이해 확장 유도

중앙정부 지자체	→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위한 여건 조성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시 수요일 정시 퇴근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 등(여가부 협조)
공공기관	→	모든 기관이 수요일 정시 퇴근 실천
민간기업	→	자율적 참여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원업계) 수요일 7시 이후 강좌 미개설 권장 · (외식업체) 가족사랑의 날 가족동반 고객 할인행사 실시 · (문화예술업계)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교육자료 개발 및 학부모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
학교	→	밥상머리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밥상머리교육 실천워크북을 제작하여 활용 · 밥상머리교육을 주제로 글짓기, 토론 실시 · 매주 수요일 학부모에게 안내 SMS 발송 ※ 예시 : “오늘은 밥상머리교육의 날입니다. 00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보세요” · 매주 목요일 아침 가족과 대화의 내용 발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	밥상머리교육 실천 캠페인 실시 결손가정을 위한 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 운영

- EBS와 협력하여 **밥상머리교육 실천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학교, 시민 단체, 종교단체 등에 보급하여 활용**
- 언론, 방송을 통해 밥상머리교육 실천방법 및 우수실천사례 연중 홍보

【 밥상머리교육의 효과 】

- (미,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 2003) 가족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업성적에서 A학점을 받는 비율이 2배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 감소**
- (미, 하버드대 홈스쿨스터디 연구, 1988) 만3세 어린이가 책읽기를 통해 배우는 단어는 140개이나, 가족식사를 통한 대화에서는 1,000여개 학습

② 가족 단위 교육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가족캠프 및 토요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독서관련 단체, 출판업계 등과 연계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독서 캠페인 등 실시**
- **실생활 사례중심으로 가족의 소중함·중요성을 부각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

※ 가족 해체를 극복한 가족을 대상으로 모범적 가정생활 사례 공모·홍보

- **가족문제 심층진단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1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기술 등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③ 지역사회 학생·청소년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확대

- 방과후 홀로 있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학교폭력피해 사례 발굴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여가부】
- 문화·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운영 지원** ('11년 2,000개)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여가부】
- 인간성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仁)과 효(孝)에 기반한 예절교육** 추진 【문화부】

※ 인성교육 전문 강사진을 구성, 학교·기업체·관공서를 방문하여 교육

④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천·체험 위주의 가족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 활동 확대 【행안부, 여가부 협조】

- 지역 봉사활동 센터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가족봉사단, 사제동

행복사단 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 및 우수사례 확산

※ 2010년 가족봉사단 운영 : 952개 학교, 65,867명이 16,877회 참여

【 사제동행 봉사활동 우수 사례(천안서여중) 】

- 사제동행 3多·3無 운동 전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믿음 주는 학교 교육 구현을 통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

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주5일수업제 도입에 맞추어 지자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 문화·체육·예술인, (유휴)전문인력, 문화·체육시설, 수련시설, 사회적 기업 등

- 82개 평생학습도시* 중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치료, 저소득층·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

※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정단위 교육·또래학생 학습동아리·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Wee센터·청소년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⑥ (과학관 시설 개방 및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과학관 시설을 스포츠·문화시설로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학관 부지를 축구, 농구 등 **청소년 야외 스포츠 시설로 연중 무료 개방**
- 청소년들의 연극, 음악회 **연습 및 공연이 가능한 청소년 소극장 운영**

* 어울림홀(650석), 상상홀(180석), 창조홀(150석) 등

- 과학관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개최

【과천과학관 주요 프로그램】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과학창작 UCC경연대회’
- 과학, 문화 예술을 융합한 공연창작 ‘전국 청소년 과학 퍼포먼스 경연대회’
- 협동심과 집중력을 키우는 창의적 단체활동인 ‘골드버그 대회’

2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문화부	▪ 범정부 학교폭력근절 대책 홍보 총괄 ▪ 범 사회적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공익광고 연중 실시
교과부	▪ 교육단체,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실시 ※ 졸업식·새학기 시작 시기 등 시기별 맞춤형 캠페인으로 효과 제고 ※ 희망단체 중심으로 공동성명서 발표, 교육기부 활동에 학부모 단체 참여 등 ▪ 교육기부기관에서 연중 상시 학교폭력 근절 공익광고 전개 ※ 학교폭력신고 전화번호(117), 학교폭력 주요 대책 홍보
법무부	▪ 전국의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실시 ▪ 대검, 학계, 민간 등 학교폭력 관계자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시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제작
행안부	▪ 인터넷중독 전문가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정기 세미나 개최 등 ▪ 민관협업을 통한 국민 참여형 인터넷 중독 해소 운동 추진 ※ 사단법인 'e-새생활운동' 및 SBS 등과 협력 확대 ▪ 영상매체(전광판 등), 소셜미디어(포스팅, 리트윗)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근절 범국민 캠페인 전개 ▪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방송 등 활용,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등 홍보
여가부	▪ 학교폭력 예방 차원의 “가족가치 확산” 실천 캠페인 전개 ※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아버지의 육아 등 가정생활 참여 확대 등 ▪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학교폭력 및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 확산, 청소년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청소년e랑 대화” SNS 개설·운영 등 ▪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 연중 사이버아웃리치 활동 전개,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홍보 온라인 이벤트, 웹진·PCRM 활용 광고, 지하철·역사 등 전광판 광고, 홍보리플렛 배포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인식 확산 및 치료지원 홍보 ※ 게임중독 극복 청소년 스토리텔링 공익광고, 청소년 인터넷 지속치료학교 TV 방송

◆ 게임·인터넷 중독, 음주·흡연 등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은 유해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①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① (셧다운제 강화 등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 추진
 - ※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 검토
- ②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 강화)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보완
 -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
 - 여가부·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
- ③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업계 스스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제공, 게임중독 치료 등 공적사업 확대
 -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 확대 및 의무화 검토
- ④ (게임물의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청소년 이용 게임물의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최저 확률 설정
 - 청소년의 아이템 거래 규제 및 오토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은 성인도 거래 금지

- 게임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 마련

⑤ **(경찰청과 PC방 합동단속 강화)**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 강화

⑥ **(게임 중독 예방 제도시행)** 게임 부작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 게임 과다이용 예방제도 실행 【문화부, 여가부】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월간 게임 이용금액 제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제한**(2월 중 시행예정) 등 게임이용제한 관련 실효적인 규제 강화

- 청소년보호법상의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단속 등을 통한 실효적 운영 강화

【온라인 게임 과다 이용 예방 주요 내용】

- 청소년의 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 확보
- 부모 신청에 따라 게임이용시간 총량 제한
- 심야시간(0~6시) 청소년 게임제공 차단
- 이용게임의 종류 및 게임이용시간 부모 고지
- 매 시간 마다 게임이용 시간경과 및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등

※ 청소년보호법 개정('11.5.19), 시행('11.11.20) / 게임법 개정('11.7.21), 시행('12.1.22)

⑦ **폭력 조장, 음란·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방통위, 방통심의위】

- 학교폭력 현장을 묘사하거나, 괴롭힘·왕따 등 방법을 제공하는 웹툰, UCC 등을 중점 심의하여 시정요구 【방통심의위】

※ 폭력성향의 인터넷 웹툰 '열혈초등학교', 공급사인 야후코리아에서 연재 중단('12.1.11)

- 음란·사행행위 등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강화 【방통위】

※ 방통심의위와 사업자간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운영 등 ('12. 2월부터 주요 포털사 참여)

-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으로 학교폭력 또는 사이버 왕따를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자율규제 협조 요청 【방통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지정 제도 :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 지정하여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정보통신망법 제42조)

- ⑧ (그린인터넷인증제 도입) 인터넷 과다 이용시 중독 위험성 안내문구 게시 등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에 대해 '그린인터넷인증 마크'를 부여 【행안부】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추진('11.11.15. 국회 제출안 포함)

②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① 주요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 초4, 중1, 고1 단계에서 게임·인터넷 중독 진단 및 척도에 따른 단계별 교육 실시

※ 교과부와 여가부가 '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전수진단(초4, 중1, 고1, 총 180만명 대상) 체계 적극 활용

- 특히, 초등학교 학생 대상 놀이, 음악 등을 활용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습관 생활화 기초 교육 강화
-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12. 2월중) 【행안부】

※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추진('11.11.15. 국회 제출안 포함)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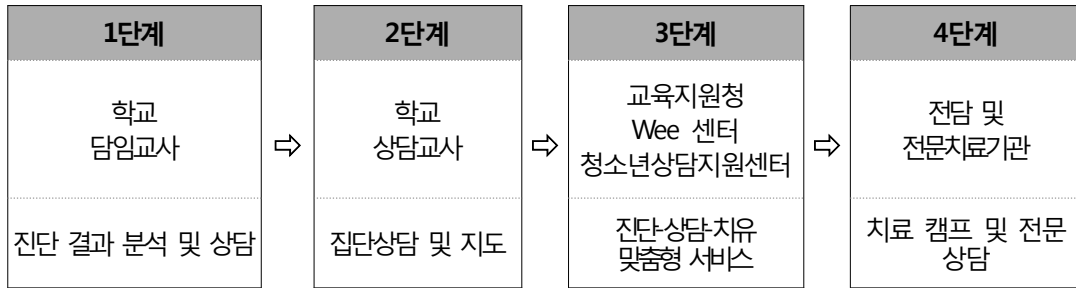
- 학생들의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가 유치원~초등학교 시기(95.2%)
- 만9세~12세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 증가('09년 11.1%→'10년 14.0%)와 고위험사용자 증가('09년 3.2%→'10년 3.4%) 추세로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예방 교육 필요

②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마련

-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 제공
-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의 자가 진단 및 관찰자(교사, 학부모) 진단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개인별 누가 기록·관리 추진

※ 학생별 개인 관리 카드 서식 개발·보급 → 학생 이해·상담자료로 활용

-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유형별 특징에 따른 체계적인 학생 지도 방법 안내



※ 게임과 놀이문화, 오프라인 게임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 가족치료 등

③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 추진)** 학교·Wee센터 등과 연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교육 및 게임중독 진단·상담 실시 【문화부】

- 효율적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 실태조사**(‘12.4~12)

※ 청소년 게임 이용행태, 게임중독의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3.5억원)

- 정규·방과 후 수업 활용,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1,200개교)

※ 게임문화 전문강사 300명 파견, 건전한 게임문화 교육 실시

- 지역교육청 산하 45개 **Wee센터 내 전문상담인력을 상근배치**(45명)하여 게임 과몰입 진단·예방·상담 지원(10만명 예상)

④ **(인터넷윤리 교육·홍보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윤리 교육 및 캠페인 추진 【행안부, 방통위】

- **사이버폭력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여 사이버 폭력 위험성 및 피해자 구제 방법 집중교육

- 바른인터넷 유치원, 정보윤리학교, 학부모아카데미, 가족캠프 운영

※ '12년중 1,950개 기관, 100만명 교육 추진

- 각급학교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세대의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운동 전개를 위해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교원·강사 양성 및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 인터넷윤리 담당교사 지정, 교과서 내 윤리교육 내용 강화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 활성화 및 홍보 강화

⑤ 게임·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지원 확대

- 게임 기업이 출연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거점별 상담치료 센터 운영**【문화부】
 - ※ 서울(중앙대), 호남(전북대), 영남(동아대, '12.2월 개소 예정)권 병원을 게임과몰입 치료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 1개소 병원에 연간 3-5억원 지원
- 시·도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 확대**(10개소→12개소)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인터넷 중독 학생 치유 지원【행안부】
 - ※ 소관지역 예방교육/상담 사업총괄, 가정방문상담, 내방자 상담 실시
 - ※ 센터별 1명은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후견인 지정하여 집중관리
- **게임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레스큐스쿨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여가부】
 - ※ **레스큐스쿨** : 한국청소년상담원 주관, 11박 12일의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캠프로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임상심리전문가의 중독원인 진단 및 평가, 수련활동 전문가들의 수련 및 대안활동 실시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 실시**('12년, 1,330가구)【행안부】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커리큘럼, 대상별(피해자, 학부모, 교사 등) 사이버 대응 콘텐츠 및 예방수칙 개발·보급【행안부, 여가부, 문화부】

③ 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 ① **(예방교육 의무화)** 최초 흡연·음주 경험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부터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흡연·음주 예방교육 지도자 체계적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 예방에서 치료까지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10) 최초경험 : 흡연 12.7세, 음주 12.8세
- ②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일탈행위의 통로로 이용되는 흡연·음주 치유 프로그램 강화
 - 흡연·음주학생 대상 **금연·금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 금연학교 : '11년 서울 1곳 → '12년 광역시 7곳 → '13년 시·도 16곳
 - ※ 2011 흡연학생을 위한 금연학교 운영 결과
 - 교육이수 학생수 : 총 43개교 851명(중 20개교 323명, 고 23개교 528명)
 - 교육기간 중 금연 성공률 : 중학교 57.6%, 고등학교 46.6%
 - 3개월 경과 후 금연유지율 : 중학교 62.5%, 고등학교 31.5%

- 상습 흡연·음주 청소년 대상 문제요인(가족갈등, 폭력성 등) 진단 및 상담을 통한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11년 1,400명→'12년 2,000명)

③ (금연구역 확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조기 시행
하고, 금연구역 준수여부에 대한 자율적 감시제도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상 학교 교사(校舍) → 운동장 확대('12. 12. 8 시행예정)

V. 추진체계

① 범정부·지역 추진체계 구성·운영

- 정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격상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 장관 및 정부위원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0명)로 구성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의 실무 협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② 지역단위 추진체계 정비

광역 단위	▪ 16개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상호 협력·지원 방안, 기관별 추진상황 평가 등을 실시 ※ 시·도부지사(부시장) 회의에서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 현황 점검
기초 단위	▪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신설 ▪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3,916개대 98,379명), 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기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밀착형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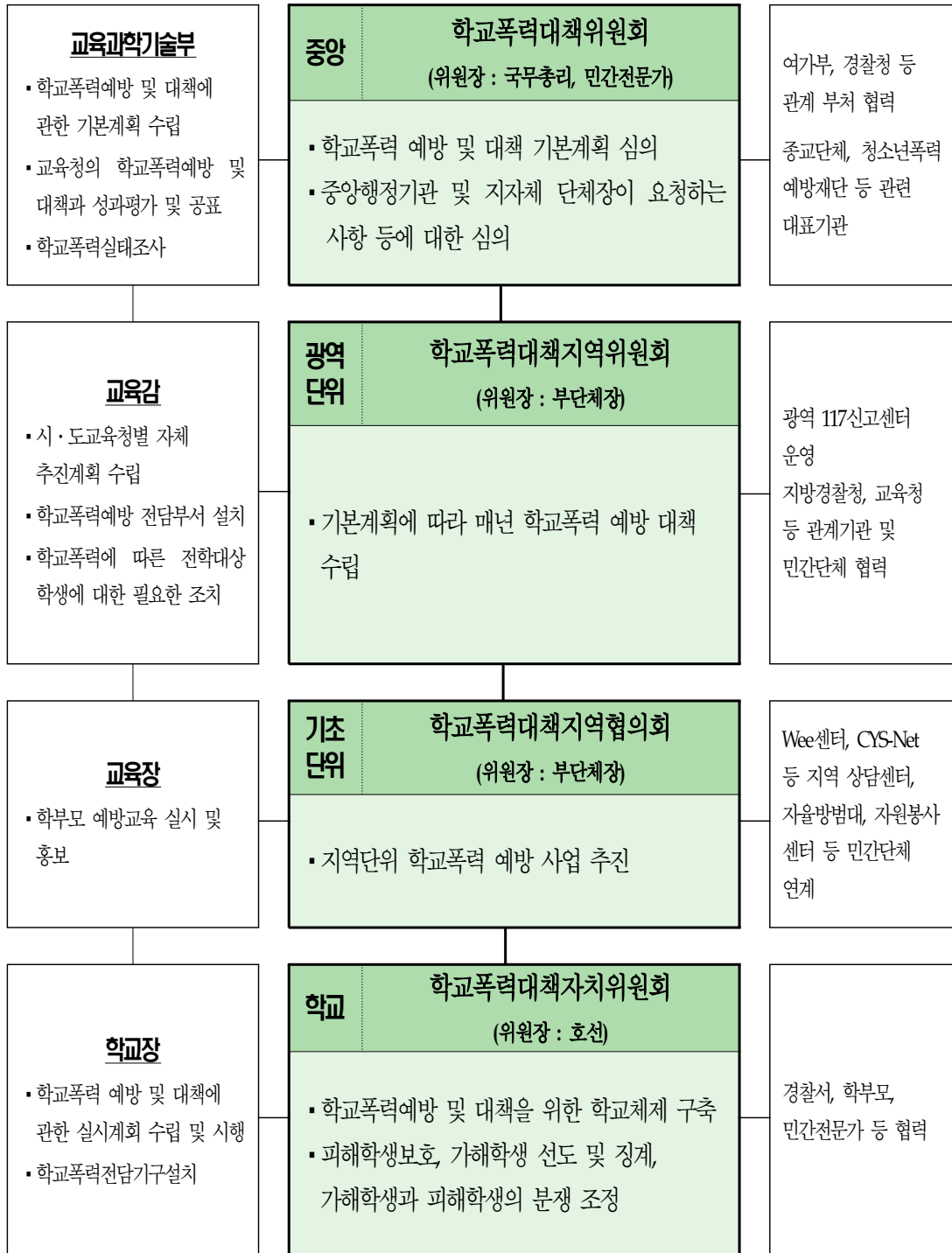
③ 유관 민간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SOS지원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활성화 지원
 - ※ 학교폭력예방사업 관련 연계·협력 강화 및 사업예산 지원 추진
- 종교계의 청소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인성교육 현장교실, 예절교육 활동 지원 【문화부】

【 주요 프로그램 : 총 10개 사업 】

- 불교 : 역사·문화프로그램, 생태교육
- 개신교 : 예술치유 및 공연프로그램, 생명존중 교육
- 천주교 : 문화예술프로그램 ▪ 유교 : 예절 및 충효교육
- 원불교 : 마음공부 ▪ 민족종교 : 겨레얼 정신함양, 민족문화연수 등

【 학교폭력 근절 추진체계 】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 대통령 업무보고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

2013. 3. 28

교육부

차 례

I. 교육 현실과 여건 진단	1
II. 국정비전과 교육	3
III. 국정과제 실천계획	4
IV. 부처 협업과제 및 현안사항	36
V. 달라지는 교육의 모습	45
〈붙임〉	
1. 국정과제 100일 추진 일정	47
2. 입법 추진계획	54
3. 교육분야 국정과제 현황	55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바랍니다.>>

많은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따라잡기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데, 입시만을 위한 과목은 없고 경주 필요한 인성, 내성, 감성과 창의력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과 함께 진로선택에 대하여 종합 교육을 한다던 국가 정책마다 최고목표로 큰 모용이 될 것입니다. (희망나루 교육연구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꿈을 바르게 나타 볼 수 있도록 적성과 잠재능력의 발달로부터 그것이 어떠한 직업에 이룰 수 있는지 과정의 세제를 알려주고, 어떤 과목을 어느 과목까지 공부해야하러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통계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희망나루 교육연구소)

<<교원의 근심, 걱정 없이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란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열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희망나루 교육연구소)

<<학비 부담을 덜어 주세요>>

기초생활급과 못하면 구원의 손길도 못 받고 높은 등록금과 이자로 고통받는 우리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희망나루 교육연구소)

<<지방법을 지원해 주세요>>

수업 때는 태도로나 장사가 지역경제를 불려 장의하고, 시설수준도 전 대학 졸업후 시설을 보완하면 공이 지방학생들은 수도권 학교로 상경해서 살 필요도 없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인수위 국민행복제안)

<<인성 후반기를 위한 교육>>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사학과 학부의 차원에서 다양한 학과 신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나루 교육연구소)

I. 교육 현실과 여건 진단

1 우리 교육의 현실

□ (성적) 초등 무상교육 이후 휴단기간 내에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장 및 민주시의 발전을 전인

○ PISA 성적 등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높은 교육열로 국민들의 전체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

• PISA 2009 한국 순위 :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지속적인 교원 확충과 함께 연구연계-수석교사제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 교원의 전체 수준이 크게 향상

○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석·박사 과정 증가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평생교육원 확충 등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 평생교육 참여자 수 : '08) 11.4백만 명 → '12) 17.6백만 명

□ (한계) 학생·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입시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 질에 대한 불만 지속

○ (학생) 과중한 공부부담과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의 행복감은 낮은 상황

• 낮은 학업 흥미도 (TIMSS '11, 수학) : (초4) 23%, (중2) 8%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62.29점)

○ (학부모) 복잡한 입시전형, 과도한 사교육비, 높은 대학등록금 등은 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대학등록금 : 국·공립 41만원, 사립 738만원, • 총 사교육비('12) : 연간 19조원

○ (교원) 교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 업무, 교권 침해 증가 등으로 교원의 사기와 만족도는 크게 저하

• 교권 침해 사례 증가 : '09) 1,570건 → '12) 14기) 4,477건

○ (청년) 취업이전 이후로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청년들은 학원비 스펀지 때문에 열중·낮은 대출 취업률('12) : 59.5%

○ (성인)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전직·조기퇴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분야 지원과 인프라는 아직까지 취약

• 평생교육 참여율('12년) : 35.6% (OECD 평균은 40.4%, 19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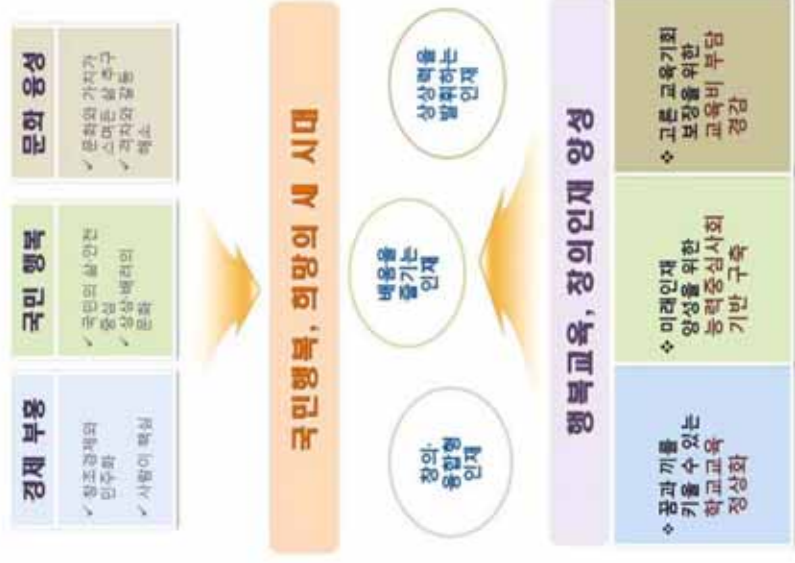
II. 국정비전과 교육

2 교육 여건 진단

- 최일선 학령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계발을 지원하여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
-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진단을 바탕으로 '병든 잎보다 뿌리를 살려나 가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최근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교육의 본질 회복 필요	◦ 성적보다 참되고 바른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의 필요성 증대 ◦ 학생스펙보다는 창의성양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정착 확산	▪ 인성교육 강화 ▪ 학교 수업과 생활 지도 역할 강화 ▪ 공교육 정상화
학령 인구 감소	◦ 모든 국민 각자의 잠재력 계발이 더욱 중요 ▪ 학생인구(만 6~24세) 감소추세 : 1201000 → 720776 ◦ 개개인의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설계 지원 ▪ 시립부립 축소
교육에 대한 요구 다양화	◦ 유아교육 지원, 고교 무상교육, 만립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증대 ◦ 학교의 통괄 기능과 장애·다문화학생 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 강화	▪ 생애주기별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 ▪ 장애학생·다문화 학생 돌봄 강화
행복의 중요성 증대	◦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의 질이 학생들의 행복과 직결 ◦ 입시와 지식교육보다 상담·배려 등의 인성 교육이 행복 증진에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 행복한 학교 ▪ 안전한 학교
취업 여건 악화	◦ 일자리와 괴리된 이론중심 교육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능력을 길러주지 못함 ◦ 지방대학에 대한 낮은 선호도의 불일치의 소의문제가 지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성	▪ 현장중심 교육 ▪ 능력중심 평가 ▪ 지방대학 육성

- 2 -



- 3 -

III. 국정과제 실천계획

< 교육 분야 국정과제 체계도 >



1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 추진목표

- (학교교육 정상화) 입시위주가 아닌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을 실현
-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및 학생을 위협하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교육진행 여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으로 교원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입 간소화)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 완화

◆ 추진과제



□ 학교교육 정상화

□-1. 교과 틀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69-12.3]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과도한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

• (대상 학기) 학생의 발달단계, 학습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학기 선택 (예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 (교육과정 운영) 선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확대 • (수업 방식) Block 수업 등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통해 학생 주도의 조사, 발표,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행 활성화 • (평가) 평가시험은 지양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체계) 자유학기제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단 및 TF 구성('13.4)
- (지원체계) 중앙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지방의 권역별 주관교육청(3곳)과 연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13.4)
- (학교 현장 지원) 지역별 운영 모델, 운영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학교(37개교) 지정('13.4)·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홍보·연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교원·학부모 연수 실시

○ 연구학교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14~'15년 희망학교 적용, '16년 전면 도입 추진

-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13.6)
-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하위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교수업의 내용·방법 및 평가방식 전환 지원
 - 인성덕목을 체계화하여 수업에 반영하고, 지식 전달위주 수업을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
 - 교과별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자료 개발('13.4~8)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등에 우선 보급('13.9) → 전체 학교 보급('14)
 -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평가방법 개선('14)
-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13.4~)
 -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교사의 수업·평가역량 강화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 (중앙) 교수학습개발사(주)인·시·도 교수학습 컨설팅 지원단·(학교) 교과동아리 활성화

□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계 마련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13.4~'14.2)
- 선택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하여 연계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환경 구축
-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고(중학 사회, 과학, 영어), 시범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초·중 144개교)('13.5)
- 가정 학습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교수 학습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등)('13.12)

<실천계획>

핵심 100원	'13년 말	'14년 이후
• 자유학기제 도입기업을 위한 지원책 구축(4월) • 연구학교 37개교 선정(4월)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13년 2학기) • 협력학습모델 및 교수학습 자료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등에 보급(2월)	• 희망학교 확산(8월'14~'15) •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16) • 협력학습 평가모델 개발('14) •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발굴·확산('14~'17) • 시범교에서 인성평가 모델 개발('14~'17) • 디지털교과서 적용('14~)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착수(4월) •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지정(2월)	• 디지털교과서 활용 환경 조성	

II-2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국정과제 69-5]

□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 '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커리어넷(진로정보포털)을 활용한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 '13년 4,550교에 배치(89%), 진로심리검사 6종 및 스마트상담 앱 운영
- 초등학교의 진로활동과 특성 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심층적 진로가 가능하도록 개선(119)
 - ※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13.4)
 - ※ 「진로수업·검사·상담 진로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 소결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역량 강화

□ 일반 교과를 통해서도 진로와 직업 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간 협력 활성화

- ※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지원,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확대, 여윌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진로포트폴리오 지원
-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지역 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체험매칭시스템" 운영

- ※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고생 약 132만 명 지원
-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기관 인증, 자치단체 지원 등을 병행하는 「진로교육법」을 급진 상반기 제정 추진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커리어넷 온라인 상담취회 • 「진로교육법」 제정 추진 • 학교교과목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4월)	• '14년 배치 진로진학상담 교사 추가 선발(9월) • 초·중등 진로인계를 위한 별칭개정 추진(9월) • 커리어넷 진로상담사(11명)2명	•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14) • 공공기관 직종체험 확대 • 온라인로용자 지원 강화

- 9 -

II-3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국정과제 69-4]

□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 마련('13.6)
 - 체육수업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및 인센티브제 검토
- 중·고교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전담할 스포츠 강사 배치 확대
 - ※ 중학교스포츠강사(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 : ('13) 5,319명 → ('14) 6,159명
 - ※ 고교스포츠강사(모교 운동의 날 운영) : ('13) 1,622명 배치 → ('14) 2,335명 배치

□ '1 학생 1 스포츠' 문화 조성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초·중·고 스포츠클럽 3,000팀을 지원('13.4)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 우수스포츠클럽지원: ('13) 3,000팀 → ('14) 4,000팀

-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내 및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개최('13.4)
 - ※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 ('13) 1,780리그 → ('14) 2,670리그

- 여학생 스포츠클럽 및 프로그램 확대, 발의실 설치 등 여학생 체육활성의 기반 마련

- ※ 발의실 설치 확대(연): ('12) 4,229교 → ('13) 4,429교
- ※ 여학생스포츠리그 운영: 교육지원청별 3종목 이상

□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다양한 학교 운동장(실연관다, 인조잔디, 마사토 등)을 조성
- '14년부터 매년 다목적 체육관을 15교에, 다양한 운동장을 150교에 조성 예정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스포츠강사 배치(3명) • 우수스포츠 클럽 선정(4명)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4명)	•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 • 학교스포츠 클럽대회(14-)	•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지속 운영('14-)

- 9 -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국정과제 86)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 학교안전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Green Food Zone'(식약처), 'School Zone'(경찰청) 등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TF운영('13.4~)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3.12)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적인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 등 운영 내실화

- ※ 학교안전 실태 현장 모니터링 및 심층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 마련

○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여 패키지형 집중 지원*('13.3~12)

- 학교권실팀, 학생상담인력 및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우수교원 우선 배치, 해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어울림프로그램 지원 등

□ 피해·가해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강화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전문상담교사 : ('12) 1,422명 → ('13) 1,887명
- ※ 일정규모 이상(학생수 101명)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13)

○ 학생상담과 치료를 위한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 하고, Wee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13.3~12)

- ※ Wee 클래스 : ('12) 4,658개 → ('13) 5,153개 / Wee 센터 : ('12) 139개 → ('13) 171개 / Wee 스쿨 : ('12) 4개 → ('13) 7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대상 : 초·4, 중1, 고 학생 대상을 통한 고위험군 학생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운영('13.3~)

- 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병의원·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별 맞춤형 관리 강화

- ※ 학부모의 공동으로 학교와 자립단위(관청·의원) 협력모델을 '5.29'지시·도별 1개 이상 구축

□ 현장·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교 현장의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 문화지 가족 프로그램(서울 명신초) : 학생·학부모·교원이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 시민운영 중인 '어울림프로그램'을 보완, 표준화된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학교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13.9~)

- 집단상담, 감정표현, 대화법 등의 학생·학부모·교원 참여 소그룹진 프로그램
-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력하여 포괄상담, 포괄조정,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및 확산('13.4~)

- 도려상담(교육부·여가부) : ('12) 4,658교 → ('13) 5,000교 / 도려조정(교육부) : ('12) 79교 → ('13) 90교 / 학생자치법정(법무부) : ('12) 660교 → ('13) 1,000교

□ 현장중심의 근원적 학교폭력예방대책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2.6)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북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근절방안 마련

- 추진절차 : 성과분석(5월, 학생·교원·학부모 의견수렴) → 시안마련(6월) → 공청회 및 최종안 확정(7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학생인건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17개 부처(국, 도, 시, 군, 구, 읍, 면, 동)에 대한 협조요청 - 학생인건지역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사(15월) - 학생인건지역 지정 결정(15월)	- 학생인건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12월) '14년도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지원 사업(11월) -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법제정, 12월) - 학생정신건강지원협력모델 운영(3~5개)	- 시행 - 지속 관리 -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 학생정신건강지원협력모델 운영 확대(14년 8개, '15년 시도별 1개 지역 이상)
학생행동특성검사 실시(15월)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제정 추진(14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4월~) - 학교폭력대책 상담반(15월)	아동임프로그래밍 확대

[3]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2)

□ 하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 시·도교육청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학급수·중점제하를 수립(13.6)하여 하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 추진
 - OECD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10) : 초 21.2명, 중 23.4명
 - 학급당 학생수 목표 : 초등 ('12) 24.3명 → ('17) 23.0명
중등 ('12) 32.4명 → ('17) 25.0명
-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 중 학급 중점이 용이한 학교는 '14년부터 우선적으로 하급당 학생수 감축
- 기존 사립(영여교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선 확보부담을 적정화
- 이와 함께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시 인근 지역의 하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급 수를 적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 도모

- 12 -

□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연차적 추진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13.10)하고, 단계적 증원 추진(~'20)
 - OECD국가 평균('1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 15.9명, 중등 13.7명
 -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목표 : 초등 ('13) 20.3명 → ('14) 19.7명 → ('17) 18.1명
중등 ('13) 18.4명 → ('14) 17.4명 → ('17) 14.7명
- 유아유치 등에 따른 정원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원 외에 정규교원의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13.5)
 - 가능한 한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해소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 ※ (주요내용) 교원이 내실있는 수업 준비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이 담당할 수업시간의 범위 규정
- 각급학교 교원의 수업시수 현황 분석을 거쳐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학교현장에 적용('14~)
 -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정('13.11)
 - 교원 중원 규모 등을 반영하여 표준수업시수 단계적 감축 추진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활용하여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13, 연중)
 - 교원, 전문기,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 자문단'을 구성('13.3)하여,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담당 업무(인) 마련('13.6)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13.10)하고, '14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 확대 배치('13.12)
 - 시·도별 학교교육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대폭 경감 추진('13.12)

- 13 -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통계통하기별로 관리·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 학교회계(예외법인) 시스템을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개선(13.6)
 - ※ 사용자 의견수렴·분석(13.4~5, 시스템 개선(13.6, 만족도 조사(13.4: 7월, 2차: 12월)
-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
 - 각종 교원 대상 평가의 시기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 단계적 시험운영을 통하여 각종 교원 평가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 검토(13.4~14.12)
 - ※ 1단계 시범운영(13): 2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 2단계 시범운영(14): 3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관리평가)
 - 평가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조정하고, 평가 간 유사한 세부 평가내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14.4~15.11)
 - 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관리평가 등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령 체계로 통합하여 부·결정 (14년 말)
 - ※ 단일법령화 추진시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실천계획>

취원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관련 시·도교육청 상토조사 실시(13.11월)	• 시·도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행계획 수립(13.11월)	• 시행계획에 따라 인차별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 정원모습 관련 정규과목 차과 적용 확대(13.11월)	• 교원 수업능력 개발 방안 마련(13.11월)	• 교원 중점 인차별 추진 (14~20)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관련 조율(13.11월)	•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11.11월)	• 교원 표준수업시수 현장 적용 (14~16)
• 초·중등교육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 교육공무원법 제정(14.4월)

4)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임시 간소화 (국정과제 70)

-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대입전형 간소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
 - '대입임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확정·발표 예정(13.8)
 - '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13.11)에는 핵심전형요소 중심으로 입학전형 간소화하여 제시
 - 전형명칭 단순화는 '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주요사항에 적용(수시 '13.7 및 정시 '13.11)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 학생·학부모들이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강화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 적극 유도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도록 지도
 - 특히, 거점 국립대가 주도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도록 지도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58-3)
 - 표준화된 원서를 한 번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중복합격 징검 등이 가능한 전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추진(13~)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13.8, 대교협) 발표 시 구축방안을 예고

<실천계획>

취원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대입 간소화 정책연구 진행 (4월~8월)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11월)	• 실천적 시행(14)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추진(16월~)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시행 운영(14)

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능력중심 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연계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경로 마련
- (대학경쟁력 강화)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 역량강화로 산업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배출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 인생후반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추진과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대학 특성과 및 지향대학 육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계 구축
• 취업과 실용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계 강화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수업시간 다양화 등 학생유연화 •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 활성화	• 특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 고등교육 재정 GDP대비 1% 수준 확대 •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 지향대학 지원 확대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 진로체계 구축 •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 ↑

↑ 일자리 중심 인재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역량체계(NQF), 과정이수형자격 구축

1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111-2)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 '14년까지 모든 직무분야의 표준 개발
 - 산업인력관리공단·직업능력개발원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단」을 설치하여 200개 Working Group(Study Group)·학계 전문가 등 구성 중점으로 부분별 표준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 추진
 -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설계, 평가, 자격인식 등을 일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매뉴얼” 개발(13.7)
 -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체, 산업별 협의체와 협력하여 시범 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확대(13.9)
 - (4년제 대학) NCS기반으로 교육(취업)중심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유도
 - ※ 공학기술교육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 NQF에 기초해서 직장교육, 평생교육 등을 학점으로 전환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13.12)
 - NQF에서 제시된 직무역량수준을 토대로 국가 또는 민간자격의 활용 정비하는 방안 마련(13.12)
- ※ NQF : 다양한 능력지표(학력, 경력, 자격 등)간에 상호 통용하게 평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직무역량 수준체계

<실천계획>

취업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14년 NCS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4월)	· NCS 개발 및 활용 매뉴얼 개발 (7월) · NCS 기반 교육과정 시범학교 지정(9월) · NCF 구축 기본계획 수립(9월) · NCF 기반 국가직무능력 기준 개발 방안 마련 (12월)	· '14년까지 모든 분야 개발 표준개발 완료 · '15년까지 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 완료 · 교육과정·지역·직무의 상호 연계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관련 자격기준·시험방법 설정한 마련(4월)	· 자격기준·시험방법·과정·평가 로드맵 수립(12월)	· '2014형 자격제도 도입·운영'14
-	· 직무능력 중심 평가 시스템 및 기계 마련	·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시스템 본격 적용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격정책심의회의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교육부 차관 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 관내직 국장 민간전문가(7명) 교육계 및 산업계 참여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운영 활용 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F)도입 등 심의
- 학교 공무원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 제도 도입'
 -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제대로 평가받아 별도의 경쟁 없이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13.9)
 - 제도 도입을 위해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13.4~9)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한 특성화고, 국립마이스터고, 진로대학에 우선 적용(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고용부), 국가공인 민간자격(교육부)
 - 과정이수형 자격 관리·운영체계 및 로드맵 수립(13.12)
 - 능력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채용과 급여, 승진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격·교육훈련의 선순환 체계 마련
-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인착
 - 교육부 소관 분야에서 직무능력평가제 시범운영 방안 마련(13.12)
 -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 직원 채용 및 승진 시 시범 도입
 - 교원 직무능력표준 등 교육분야 국가 직무능력표준 개발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개발된 직무별 요구역량에 기초한 민간분야의 채용 시스템 설계 및 시범운영(13.9)
 - 2~3개 직업·직무분야를 선정하여 직무별 요구역량을 도출하고 채용기준을 개발·보급하고 활용을 유도(13.8)

[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73)

-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계 강화
 - 'NCS 개발 및 활용 계획'과 연계하여 고교 직업교육을 일차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14년까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지역·전달산업 등 기술명장 육성 필요 분야를 발굴하여, 마이스터고 8차 지정 계획 수립 시 반영(13.5~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계와 연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력 필요 분야를 발굴(13.6)하고,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13.5)하고, '14학년도부터 선발 확대
 - 지역·소지, 취업의지 등을 반영한 별도 전형으로 일부 시·도와 학교에서 개별 시행

-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13.6)

□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 시스템 강화

- 선취업 후진학 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13.5)
 - 재취직특별전형 선발을 확대 내실화하고, 전국적으로 산재된 소수의 후진학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대표 대학을 지정·운영
 - '13년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농업, 해양분야 등)
- 고졸 취업자에게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사·학사(국내)→ 석·박사(국외)로 연계되는 국비유학생 선발계획 수립('13.6)
 - 계획수립(8월) →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다문화법) 개정 추진(7월) → 고사(9월)기 → 고사(14년)

<실천계획>

취원 100원	'13년 말	'14년 이후
• 미아스되고 지원 및 특성고 지원 확대 분야 별(국외-0원)	•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 수립(8월) • NCS 기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개발('13-'14) • 미아스되고 신규 선정(12월)	• 교육과정 각론 고사('14) • 정부부처 특성고 지원 확대 •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17)
• 특성고 취업희망자 특별 전형 개선 권고안 마련(5월)	• 직업교육 위탁과정 내실화 방안 수립(8월) • 취업희망자 별도 특별 전형 시행(10-12월)	• 위탁교육이 가능한 우수 교육훈련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신취업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5월)	• 고졸 취업자 국비유학생 선발 계획 수립(6월) • 국비유학과정 개정(7월)	• 유학생 선발 •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 지속 추진

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국정비 제 74)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계 구축
 - 대학·학과별 특성과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현장 선호도가 높은 산업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
 - 국가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문대학을 산업계 수요중심의 교육기관으로 개편 유도
 - ※ ('14) 50개교 → ('15) 70개교 → ('16) 100개교
- 수업연한 다양화 등 유연성 확보로 전문대학 기능 다변화
 -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 강화
 - 전문대학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연한을 다양화(4~8년제)하고, 비학위 과정부터 학사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학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 산업기술평장대학원을 설치할 통해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 전문기술·전문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평장대학원 설치
 - ※ ('13) 고등교육법 개정 및 4개 권역별 대학원 설치
-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으로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일부 전문대학을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 직종 및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단계에서 장기파장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수시입학을 허용하여 입학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 장년교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등 성인대상 직무역량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 ('14) 8개교 → ('15) 16개교 (시·도별 1개씩 16개교 시범 운영)

□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학생 대상으로 해외진출 산업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C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 ('13) 5개교 → ('14) 15개교 → ('15-) 20개교

<실천계획>

취원 100원	'13년 말	'14년 이후
• 특성화 전문대학 CD기교 집중 개발(5원)	• 특성화 전문대학 CD기교 집중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5원)	• 특성화 전문대학 CD기교 육성 (‘14) 50개교 (‘15) 70개교 (‘16-) 100개교(누적)
• 전문대학 학위과정·수업 연한 다양화 제도개선(5원)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5원)	•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개정 (‘14) • 42개 권역별 대학원 설치 (‘14)
• 평생직업능력 신도대학 모형 개발(5원)	• 평생직업능력 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5원) • ‘세계로 프로젝트’ 기본 계획 수립(5원)	• 평생직업능력 신도대학 육성 (‘14) 8개교 (‘15) 16개교(누적)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국정교재 113)

□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 지방대학이 우수인재 양성,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계획 수립(‘13.6)
- 사업규모, 내용, 모형,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방안 확정
- 경쟁력 있는 명품 지방대학, 학부·학과를 발굴·육성하여 세계 수준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가칭)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 마련(‘13.6)
- 대학 경쟁 분야 등을 특성화하여 중소규모 명품대학·명문학과로 육성
-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금년도 지원계획을 수립(‘13.4)

□ 지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

-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특성화·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진하·취업·정주대책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발표(‘13.6)
- 총 방안을 바탕으로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 마련(‘13.6) 후 발의(‘13.9)
-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특성화 분야 진학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마련
-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용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인재의 공적 임력 및 공공기관 채용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
-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지역인재들의 균형적 참여 방안 마련

<실천계획>

취원 100원	'13년 말	'14년 이후
• 지방대학 육성법안 제정	• ‘14년 지방거점대학 사업 기본계획 마련(‘11월)	•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지방대학 특성화안 수립 (8원)	• ‘14년 특성화 사업 기본 계획 마련(‘11월)	•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 지방대학 육성법 마련(5원)	• 지방대학 육성법 발의(5원)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

수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국정과제 71)

- 투쟁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 육성
 - 종합적인 대학발전 전략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운영('13.4~5)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구조개혁 및 지방대학·전문대학 육성 등 주요 대학정책 방안 마련
 - 대학의 경쟁 분야, 산업계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추진
 - BK21-WCU 후속사업('14가정)BK21 플러스*) 추진을 통해 연구 중심대학 기반 강화 및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
 - 우수 학과·학부 중심으로 대학 내의 자원 집중 지원 유도
-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
 -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국가장학금 확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체계 재구조화
 -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성과형에서 제출 및 중간 이행관리 강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 *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GDP 대비 %) : '13 0.84→'14 0.90→'15 0.94→'16 0.97→'17 1.0
-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회계 투명성 지표를 개발('13.5)하고, 적립금의 사용내역 투명화 추진(사립학교법 개정, '13.12)
 - 재정·회계 투명성지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13.12)
 - 법정부담금 부담의무 총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비율,법정기준 수익률 총액, 적립금 적립률도 준수 등을 지표화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추진
 - ('13~'15) 대학의 각종 업무(인사, 재정, 학사, 연구 등)와 여러 회계를 시스템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구축→('16) 시범운영→('17) 전면 시행

- 24 -

□ 대학평가체제 개선 및 상시적 구조개혁으로 대학경쟁력 제고

- 대학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 및 산학협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합동 권선명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권선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평가 준비를 지원
 - 인정제·체제적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구조개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 기존 구조개혁 불*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마련('13.5)하고, 관련 위원회 인력 구성(자방대 인사 포함 등) 개선
 - 학사관리 및 경영실태가 취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
 -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폐출
 - '13년의 경우에는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대학의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을 개선
-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성화 (국정과제 3-12)
 -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관리,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방안」 마련('13.6)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간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지정 확대 및 학연교수제, 교수의 산업체·연구소 파견 근무 등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13.12)
 -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를 통해 창업교육에서 창업기업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청년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창업교육 로드맵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중

- 25 -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대학원장(학부)은 구성 운영(4월)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5월)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발표(5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편(5월)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반기)	- 성과평가 및 관리 강화 - 대학 정보공시제도 강화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반학교(3월) - 사립대학 자립·회계 투명성 지표 마련(5월)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기본계획 수립(5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 국립대학 자립관리 선진화 시스템(단위) 구축
'14년도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발표(4월) - 향후 구조개혁 추진모형 마련(5월)	법정 재정	대학교육의 상시적인 질 관리 유도

6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 구축 (국정교재 75)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스마트본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13.3~'14)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모형 개발(3월~5월), 전달포털(스마트 평생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전달체계 완성('14)
 -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범지구거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13.12)
- 광역지자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13.5, 2개 시·도)
- 시·도 단위에서 만들어진 원스를 평생교육 정보시스템('12년 현재 7개 시·도 구축 운영 중)
- 주민 수업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학습지원센터를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설치('13.5)
 - 연차별 확대: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지자체

- 일과 학습 병행 등 주민과 산업계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대학중심의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 대학·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추진시 '지역사회 연계성' 평가비율 강화('13.5)

□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청년층)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성인취업지원 대학을 육성하여 계속 교육을 희망하는 재직자 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평생학습중심대학 역량강화사업 확대: ('12) 25교 → ('13) 35교
- (중·장년층) 조기퇴직, 창업·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자발적 학습 및 취업기의 확대
 - 평생대의 창업·전직·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12) 32개 → ('13) 62개 과정
- (노년층) 취미·여가생활, 건강·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변화 적응 지원 등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기회 제공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통한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도('13)
- (취약계층) 저학력자(문해교육), 경력단절여성(학습동아리 지원), 군인(군 학습지원 인정) 등의 기초 학습권 보장 및 제2경력 창출 지원
 - 지자체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 추진('13.3)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12) 107개 → ('13) 130개 지자체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모형 개발(5월)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자체 지원(5월)	- 구속계획 수립(6월) - 평생교육법 개정(12월)	- 스마트 평생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14) -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망 개편('15)
행복학습지원센터 시범 설치 지자체 지원(5월)	센터 설치 지자체 컨설팅 실시('16)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센터 설치('1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월) -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5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6월)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 확대('14)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목표

- (돌봄서비스 강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 (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고교 교육비 지원,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꿈과 끼 실현의 기반 제공
- (고른 교육기회 보장) 경제적·문화적·지역적 차이 등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추진과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유치원 돌봄 기능 강화 • 초등 돌봄 기능 확대
교육비 과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 유아교육비 경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광복학 정신회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 소득수준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 •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장여·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 장여 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 28 -

□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국정과제 67-2, 68-5)

□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7-2)

-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연령 3~5시간 → 점심시간 포함 5시간 원칙)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돌봄, 누리과정 방과후돌봄, 저녁 돌봄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유치원의 돌봄기능 강화
- 유아 발달에 적합한 문명 형태와 방법 등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마련('13.12)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6-5)

- 오후 5시까지 수이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안 마련
-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 무상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 '14년 이후 학년별로 연차적 지원 확대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으로 확대
- 수요조사(12월) → 타학교 운영안 마련(1월) → 시범학교(3월 2교) 등을 거쳐 전면 시행

□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국정과제 66-5)

- 강사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학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기반 마련
- ('13) 51개 → ('14) 100개 → ('15) 150개
- 중앙 및 시·군·구 단위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 연계 사업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 부처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운영(∼'13.6, 6개 시군구) → 전국 확대('13.11)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부처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운영(∼6월)	• 누리과정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마련(12월) • 방과후구 돌봄 시범학교 운영(연말∼'14.2월) • 시군구 돌봄협의체 구성(11월)	• '14∼'16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대상 확대 • 부처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14)

- 29 -

2)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2-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국정과제58-12)

□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국정과제 67-2)

-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2 만 5세 전 계층 월 20만원, 만 3~4세 소득하위 70% 24만 원 19.7만원, 월 17.7만원 → '13 만 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 '16 월 30만원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13.5)

-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단계적 처우개선 병행 추진
 - ※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 지원 : '12 35만원 → '13 40만원 → '17 60만원
-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신·증설되는 유치원에 배치될 교원 대상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13.5)
-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 수립('13.9)
 -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검토안 : '14 읍면·도시까지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 '15~'17 도시지역 신입생부터 학년별로 순차적 적용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학교 내 평가, 고입·대입 등 각종 입시에서 시험출제 등이 교육 과정(교과서)의 범위·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추진('13.4)
- 「공교육정상화특례법」 제정 추진('13.4~12월)

< 법안 주요 내용 >	
• 선행교육(초·중·고 교육과정상 학기를 앞서는 교육) 금지	•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금지
• 고입·대입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 (고입) 학교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별 저년도 입학전형 계획 수립 시 반영
• (대입) 대학 자체 선행학습 영향평가 → '중앙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대학별 저년도 입학전형 계획 수립 시 반영	
• 선행교육 관련 심의기구(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장관·교육감·수석) 설치·운영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시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선행교육 방지 지원,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식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13.12)
-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과목(수능, 영어, 수학) 위주로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서비스 내실화로 사교육 수요 경감
-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13.3)하고,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13.6)

<실천계획>

취임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 추진(5월)	•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 (8~12월)	•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가 단계적 현실화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4월)	• 세부 실시계획 확정(9월)	• 고교 무상교육, '14년부터 시작하여 '17년 완성
• 고교 학비 지원 사업 통합 방안 마련(5월)		
• 공교육정상화특례법제정 (안) 발의(4월)	• 학원비 지원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	• EBSmath 서비스 대상물 초·중 고교 단계적 확대(14~)
• EBSmath 사이트모션(3월)	•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6월)	

2-2.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13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 분위별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 기초~소득1분위 450만원 전액, 소득 2분위 60%, 소득 3분위 40%, 소득 4분위 30%, 소득 5분위 25%, 소득 6분위 20%, 소득 7~8분위 15%
- '14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 수준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원(소득후 세부과제)
- 생계형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기준(B⁺) 폐지 등을 포함하여 완화 추진
- 다자녀 가구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13.7)하고 셋째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4)
- '12년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자 고려 약 3,600억원(약108천명) 소요추산
-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이행관련 기본계획을 마련('13.12)

□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 하여 실질 이자부담을 완화
- '13년 1학기 대출이자율 인하(2.9%→ 2.5%)하여 실질적 제토화를 달성 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지되도록 지속 지원
- 소득 8~10분위 학생에게도 돈돈학자금(DD)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를 지원

- 32 -

- 금년도 예산에 기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 추진
- 토트학자금(TC) 대출자는 '12년부터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우선 실시 중
 -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9년 2학기까지 시행한 학자금 대출(4조 3,449억원)을 돈돈학자금(DD) 대출로 전환 추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13.4)
-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방식의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 수용률 제고
 - '13~'17년 대학생 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13.2 원도/국토부·교육부 합동)
 - ('12 18.4%, 29만명 → ('13 21%, 33만명 → ('17 25.0% 40만명(사업비 기준)
 - 소요 재원의 분담*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 국립대 BTL 기숙사, 사립대 재정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유형	대상대학 수	수용인원	소요재원
국립대 BTL 기숙사	4개 대학	2,050명	613억원
사립대 재정 기숙사	12개 대학	1,800명	489억원
사립대 공공 기숙사*	8개 대학	4,548명	1,122억원

- (재원분담) 국민주력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자체 10% 부담
- 대학 캠퍼스 외 기숙사*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부지선정 협의 (~'13.5) 및 설계·공사 착공('13.6)
- 대학생 행복(연방) 기숙사(2,000명, 510억원), 학생종합자선터(1,000명, 258억원)
- 사립대 기숙사 건축비 저리융자 확대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숙사비 인하 추진 (월 28~40만원 → 월 17~24만원)

- 33 -

□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 취업 촉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 현장실습-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 1인당 평균 연 11백만원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13.5/'13.9)
 - 월/가을 학기 각 573명 선발, 총 9,450백만원 지원 (사업관리비 550백만원)
 - '12년 8개 LINC 대학 총 4,412명 현장실습 실시 이중 1,301여명 중소기업 취업의사 확인

<실천계획>

취원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국가장학금 수혜자 분석(월) • 국가장학금 및 셋배아이 이상 지원 대상 인원 추산 및 소요지원 파악(월)	• 셋배아이 등록금지원 기준 마련(7월) • "14년도 관련제 마련 (2월중)	• 소득연계 맞춤형 민간등록금 환성 • 셋배아이 등록금 지원사업
• 학자금 대출자 세부부담 경감 방안 관련 협의 개성 추진(월) • 학자금대출 및 세부부담 경감 대상 인원 파악 및 관계부처 협의(5월)	• '13년 가용재원 내 국공유기간 이자연계 확정(5월) • '14년 시행계획마련(12월)	• 학자금 세부부담 경감 전담 시행
• 캠퍼스 내 가족사 설계 (5월) • 행복(행복)가족사 등 부처 신청 협의 (5월)	• 캠퍼스 내 가족사 설계 (5월-) • 설계 - 공사 착공 (5월 -)	• 부처신청 - 설계 - 공사 추진
•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분하기 대상자 선정(5월)	• 가용학기 장학생 선발 (5월)	• '17년까지 800여명 규모로 확대 시행

③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교육·안전 대폭 확충 (국정파제 49-11)
 -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95%이상 확보
 - 정원규모: '12 135명 → '13 662명 → '14~17 매년 1,500명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특수학급 신·증설(누계): '12 507개 → '13 1,000개 → '17 3,000개
 - 대학의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습편의 도모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12 2,494명 → '13 2,500명 → '17 3,000명
-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국정파제 50-2, 126-1)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강화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한국어·문화에 대한 적응교육을 위해 예비학교('12년 25교 → '13년 50교) 및 특별학급('12년 초 13교 → '17년 초·중 120교) 확대
 - 다문화 특별학급 확대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3.5월 중)
 -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12년 18,000명 → '13년 40,000명)
 -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탈북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 예·초·중·고,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역량 개발 지원
 - 탈북학생들에게 적합한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초·2 중1 교재 개발)

취원 100일	'13년 말	'14년 이후
• '14년 특수교사 소모 정책 도출(4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상설(3월) • 다문화 예비학교 설치(3월) • 다문화 특별학급 등을 위한 초·중등 교육시설 확충 개원(5월) • 학생별 맞춤형교육 지원(3월) •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5월)	• 특수학교(급) 신·증설지침 마련(11월) •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강화(2월) • 다문화 전담교원 연수(5월) •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9월) •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회 성과보고회(12월)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17) • 지속 추진 • 지속 추진

IV. 부처 협업과제 및 연안사항

- ◆ 그간의 노력
 - 교육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청년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 3~5세 누리과정 도입, 학교폭력 대책, 고졸 취업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산학협력 및 대학생 기숙사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 ◆ 향후 중점과제
 -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문화융성, 경제 부흥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구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등



1 협업 과제

-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꿈과 끼 발산 (문체부)**
- **중요성**
 - 학교체육·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학생 수요를, 문화부는 학교 밖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양 부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문화부 소관 제정), '12년 학교체육진흥법(교육부 문화부 소관 제정)
- **협력 계획**
 - (추진 분야) 체육·문화예술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과 관련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업 추진
 - 체육교육분야에서는 스포츠 강사 역량 제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시설 확충 추진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예술강사를 활용한 통합교육, 예술 동아리 활성화, 교과융합 프로그램 등을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의 학교도서관 보급 확대,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공간의 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등
 - (정보 활용) 학생 수요와 전문인력풀, 체육·문화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화
- **추진 일정**
 - 양 부처 협업 TF 구성, 기존 협업과제 강화 및 추가 발굴('13.4)
 - 양 부처 공동 추진계획 발표('13.6)

②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원천책임제 실현(보육료, 재정부, 인건비)

□ 현황 및 필요성

- '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시작으로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었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유치원은 유아교육에 강점이 있는 반면 보육·돌봄 기능이 취약하고, 어린이집은 보육·돌봄 기능이 강점인 반면 교육 프로그램이 취약
 -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12년 만 5세, '13년 만 3~4세)

□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구성)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성하여 유·보 통합 준비 추진('13.8.)
 - 민관합동 (가칭)'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13.4~)
 - : 유아교육·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및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수립·추진 등 담당
- (누리과정 평가)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지역 시범 운영) 유보통합 모델을 지자체 시범지역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모델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법령 개선 등 제도 보완
 - 복지부와 시범지역 선정·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
 - 유치원에 돌봄기능 강화, 어린이집에 교육기능이 강화된 新 모델 적용
- (관리체계 통합)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통합시기를 결정
 -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정비 및 중앙·지방의 조력·인력·예산 등 조정 협의

□ 향후 일정

- '민관합동 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계획 확정('13.4~9)
- 지역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13.5~'14.12)

- 38 -

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특성과

□ 현황 및 필요성

- 그간 대학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유형별·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특성과 정도 미흡
- 국가 성장동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특성화된 대학의 육성과 지방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기반 역할

□ 추진 계획

- (대학 특성화) 각 정부부처의 대학에 대한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간에 유기적 연계 도모
 - 지역 산업 및 특성, 대학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
 - 부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특성과 우수 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등 효과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운영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며, 대학보유 지식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등 '범부처적인 창업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인재 활용 강화) 지역인재 채용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 확대, 지역인재 채용 장려금 등 우대 조치 마련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30%), 공무원 채용목표제·추천채용제 지속 추진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 향후 일정

-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학발전기획단 및 협의체 구성('13.4)

- 39 -

④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
(고용부, 국토부, 미래부, 문체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안행부, 중기청)

□ **현황 및 필요성**

-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조기 개발 및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 구축이 필요

□ **추진 계획**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력정책심의회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교육부 차관 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민간전문가(학계·산업계) 참여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활용 방안, 국가역량체계(NCF)도입 등 심의
- 직무능력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할 Working Group을 교육부, 고용부가 공동 구성·운영(13.4)
 - 산업현장 전문가, 학계·교육계 인사, 업종 대표 등이 직무능력 표준 개발에서부터 교육 및 활용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 개발·운영 협업 체계 구축
- 개발된 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즉시 학교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 적용* 계획을 수립·추진(13.5)
 - 고용부와 공동으로 시범 대상 직무표준, 학교(특성학교, 전문대학) 선정
- 학력과 학위, 교육 및 훈련, 자격, 직무경력 등을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수준체계(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 **향후 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 및 직무능력표준 개발 작업단, 구성 (13.4)
- 국가역량체계(NCF) 구축 기본계획 수립 (13.9)

- 40 -

수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재정부, 안행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현황 및 필요성**

-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하여 대학생들이 높은 주거임차비, 하숙비 등으로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그동안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 하여 왔으나, 대학생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하여 더욱 건립하게 협력할 필요

□ **추진 계획**

- 기숙사 수용률을 '12년 18.4%에서 '17년 25%까지 확대(사업비 기준)
- 기숙사 건립 부자계획에 따라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재원* 확보 지원
- 소요재원 : 국민주택기금(국토부), 사회진흥기금(교육부)

< 대학생 기숙사 건립 부자계획(국토부·교육부) >

(억원)

	'13	'14	'15	'16	'17	계
	4,581	4,830	4,805	4,753	4,444	23,413

- 캠퍼스 밖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등 건립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중심의 협력관계를 지자체까지 확대·강화
-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 (추가 확대) 공역지자체·기초지자체(서울)
-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관별 역할 분담체계 구축
 - (교육부) 투자계획수립, 재원 확보, 설계·공사 등 총괄
 - (국토부)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숙사 재원 확보 및 지원
 - (기획재정부, 지자체) 캠퍼스 밖 기숙사 건립 부지 제공
 - (한국사회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설계·공사 및 운영

□ **향후 일정**

- 대학생 기숙사 건립 부자계획에 따라 부지확보, 재정지원, 설계 및 공사 등 추진(13.3~)

- 41 -

2 현안 사항

1 학교외계직원(비정규직) 인력관리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조리사·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인력이 대규모로 학교에 근무
 - 학교외계직원 수 : '08) 88,689명 → '12) 152,609명
- 학교외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고용불안 및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학교외계직원의 사용자가 학교종인지 교육감인지에 대한 소송 진행 중

□ 추진 계획

- (고용안정·처우개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
 - 전환계획 : '12) 71,953명 → '13) 88,654명 → '14) 112,903명
 -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 등 단계적 처우개선 로드맵 제시
- (효율적인 학교운영 지원) 학교외계직 인력이 학생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시스템 개편
 - 학교외계직원을 활용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회기적 경감
- (단위학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학교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한 지중별 인력 배치기준 마련
 -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인력분배를 운영하여 필요인력을 적기 지원

□ 향후 일정

- 학교외계직원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13.5)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13.12)

- 42 -

2 학생 안전관리 강화(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부)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문화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 통학, 수하여행 등 단체행사, 급식 등의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인종 노력
-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과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10년에 비해 증가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초·특수·학원·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부적격 운전자 및 보호 미가입 차량*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수하여행 성수기(봄, 가을)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비
 - 부적격 운전지20% 및 보험 미가입 차량(12%)('12.5월, 교통안전공단)
-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 중이고, 일부 노후된 학교 건물*이 상존하여 급식 사고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 필요
 - 전체학교의 99.9%인 11,476개교에서 학생 697만명 대상으로 급식 실시 중
 - 식중독 발생건 : '10) 38건 3,436명 → '11) 30건 2,061명 → '12) 41건 2,114명
 - 재난위험 교육시설을 134개 건물 보유('12.11월 기준, 68,655개 건물 중 0.2%)

□ 추진 계획

【 통학버스 】

- (범규 준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시 확인의무 준수 등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 철저 지도('13.~)
-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 실시 및 교통사고 예방 지도 강화(문화부)
- (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어린이와 교직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에게 결과 보고('13.3)
- 「이용복지법」 제13조에 의거 유·초·중 고 학생에 대하여 교(학)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범행 개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시 벌칙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마련('13.8)
- 도로교통법 소관부처 : 안행부(경찰청)

- 43 -

【 현장체험학습 】

- (사전 예방) 학생 지도교사에게 사전 안전교육 내용 등을 수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보급('13.4)
- 차량·운전자 적격여부 등 안전 지도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포함
- (부처 협력)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 지원 강화('13.4-)
 - 학생 단체수송 차량 안전점검 강화, 운전자·차량 적격 여부 등 교통안전정보 서비스 제공(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수하여행 성수기 집중 지역에 대해 파출·음주·끼어들기 운행 등 집중 단속(경찰청)

【 학교급식 】

- (점검 강화) 식중독 사고 경각심 제고 및 상시적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불별점검(수사)과 정기점검(연 2회) 실시
-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대해 연간 최소 4회정도 급식위생 점검 실시
- (시설 개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시설을 '15년까지 100% 현대화
- 정책목표 : '12) 61.5% (8,144개교) → '15) 100% (9,994개교)

【 학교시설 】

- (안전점검) 교육시설물에 대한 해빙기(2~3월), 하절기(6~7월), 동절기(11~12월)별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매뉴얼 개선) 자연재난(풍·수해, 설해, 지진 등) 대처 매뉴얼을 개선·보급하고, 재난위험시설(D급, E급) 조치계획 마련('13.4~5)
 - (재난대응) 재난발생 예상 시, 기상상황을 파악·전파·보고하고, 학생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발생 시 복구비 지원
 - 시·도교육청, 교육청, 학교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등교 시간조정, 임시휴업 등 조치
- 다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시 교육부상환이 직접 등교시간 조정 등 가능

V. 달라지는 교육의 모습

1 100일 후 달라지는 모습

◇ “우리 교육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하고, 교육 현장에는 참여의지와 공감의 확산

이를 위해 교육부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 국민 각자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장·차편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내에서도 부서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를 정책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 1년/5년 후 달라지는 모습

- ◇ 1년 후에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됨
- ◇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중심 사회가 구축되는 등 크게 발전했다고 국민들이 평가
 - (학생) 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더불어 배우는 것이 즐겁고,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의 꿈을 키워갑니다.
 -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 수 : (현재) 0개 교 → '14) 37개 교 → '17) 모든 중학교
 - 초·중·고 스포츠클럽 수 : (현재) 17만 개 → '14) 20만 개 → '17) 30만 개
 - (학부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교육비 걱정 없이 무려파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 안심하고 보내게 됩니다.
 - 학비 지원 고교생 비율 : (현재) 35.4% → '14) 49.4% → '17) 100%
 - (교원) 근무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져서 자공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원 1인당 학생 수 : '13) 초등 23.3명, 중등 18.4명 → '17) 초등 18.1명, 중등 14.7명
 - 학급당 학생 수 : '12) 초등 24.3명, 중등 30.4명 → '17) 초등 23명, 중등 25명
 - (청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열정과 능력만 있으면 학비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 (현재) 44% 수준 → '14) 절반수준 → '17) 절반수준 지속
 - (사회) 일 중심의 교육·직무의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기업체는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대졸취업률 : (현재) 59.5% → '14) 62% → '17) 70% 이상
 - (대학) 대학의 교육·연구 역할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끌며,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 고등교육재정 규모 GDP대비 비율 : '13) 0.84% → '14) 0.90% → '17) 1.0%
 - (성인) 누구나 진리·미학에 따른 지식·기술의 습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현재) 35.4% → '14) 37% → '17) 45% 이상

- 40 -

붙임 1 국정과제 100일 추진 일정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3.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Ⅰ. 학교교육 정상화			
Ⅱ.1. 꿈과 끼를 실현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본 방침 및 목표 설정	• 자유학기제 7/8 • 자유학기제 지원 센터 구축·운영 • 자유학기제 연구·인력인정(중학교 37개)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포진(~6월)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 • 철학·인성·문화교과수·학습자료 개발(~8월)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환경 학습 여려 마련		• 교과서 모형 개발 • 교수·중144개	• 디지털 교과서 제공 연구학교 지정(초·중144개)
Ⅱ.2. 학생 맞춤형 진로상계 지원			
□ 진로상담 및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 커리어넷 온라인 상담하인 연수·신발	• 초·중·고 전체별 개인 진로포털로 교육·평인 기반 정책연구(~9월)	•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신발(~9월)
□ 진로선택 역량 강화			• 진로선택지원센터 구축, 학교 및 기업에 내장 시스템 운영(~9월)

- 47 -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1] 3.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 체육 전문인력 배치율 증진 체육활동 내실화	• (강)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한 스포츠 강사 배치 • (강)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배치	•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개최 • 초중학교 체육 클럽교사 배치에 관한 협의(국·군·민)	
☐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 우수 스포츠클럽 3,000원 선정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	
☐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물리적 설치 계획 수립	• 다목적 체육관, 다양한 운동장 조성 계획 수립
[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학교장 학사수 감축	• 시·도교육청 관하여 의견 수렴	• 기본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 교원 1인당 학사수 감축 양차별 추진	• 교사 수감시수 현황 조사, 분석 추진	• 표준수감시수제 도입을 위한 조·중·고교수별 계획 수립	• 교원 육아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조·중·고교수별 계획 수립(1인) 마련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교원행정업무 경감 지원단 구성	• 학교행정지원단 조사, 활용을 위한 조·중·고교수별 계획 수립 • 여유화된 사무원 지원수원 및 분자	• 교원행정지원단 (1인) 담당할 교원 행정업무(1인) 마련
☐ 교원평가 개선		• 교원평가개선 추진 계획 수립 • 지원단가 개선 지원단 구성 운영	

- 40 -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3] 학교폭력 및 학생 위법 제로 환경 조성			
☐ 학교폭력 2004 이내 학생안전지킴이 지정 등 안전인프라 구축	• 학생안전지킴이 통합 관리를 위한 관계 부서 T/F 구성, 운영		• 단위 학교 학교안전 실태 심층점검 실시
☐ 학생 상담·치유 지원 강화	• Web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 •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 • 학생정신건강 추진 계획회의 협의 도입 구축, 지원 사업 추진(12월)		•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관련 조·중·고교에 위임 개입 추진 (12월) • 13년 학생정서활동 특성조사 실시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표준화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9월) • 생활지도특별지원 학교에 대한 학년별 및 집중지원 실시 (12월)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령개정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교사·학생 연구 • 예방 프로그램 표준 모델 개발 (12월)	• 학생자치활동 운영 학교 학년별 및 저학년
[4]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 간소화			
☐ 대입전행 간소화	• 대입전행 간소화 정책 연구 진행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고른기회 입학전행 확대			
☐ 한국형공동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 한국형 공동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농민농사희망 기반 구축			
[1]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리무능력표준 구축			
☐ 국가리무능력표준 구축		• 자라길(농사희망) 내 (Y) NCS 운영 • 자라길(농사희망) 운영 •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을 위한 자격 개발 시행을 위한 지원	

- 43 -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취업과 실용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 교육 체계 강화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분야 발굴 (-6월)		부차, 지자체 및 산업계 연계 특성화고 지정율 향상 관련 기관 협의
☐ 취업희망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취업희망자 특성화고 특별전용 개선 집고안 마련 - 시·도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현황 점검·분석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 신학원 추진과 시스템 구축 지원 - 고졸 취업자 학비 유학 지원 방안 수립 (-6월)
[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특성화 전문대학 도합계별
☐ 수월성인 다문화 등 유망성 확대			학위취득 및 취업 인턴 다문화
☐ 산업기술평생대학원 설치			산업기술평생 대학원 제도 마련
☐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평생직업능력 신도 대학 육성 모범개발
☐ 전문대학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해외산학계 연계 전문대학 육성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과제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대학발전기획단 구성 - 지방대학 육성 방안 정책연구	지방대학 육성 방안 수립(-6월)
수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대학 특성화 및 고등교육 자질지원 규모 확대		대학발전기획단 구성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발표
☐ 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시립학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시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상태 점검 기본계획 수립 - 시립대학 재정 회계 투명성지표(안) 마련
☐ 대학평가제 개선 및 상시적 구조개혁 추진		74학년도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확정·발표	향후 구조개혁 추진 모델 마련
[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			
☐ 세대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생애주기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행		평생학습종합센터 육성 사업 지원 대학 선정·지원
☐ 지역대학·산업계·지자체 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 계획 수립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 지자체 선정·지원
☐ 온라인 평생학습통합portal 체계 구축	스마트 국가평생 학습 지원체계 구축 모형 개발(3월~)		스마트 국가평생 학습 지원체계 구축계획 수립 (-6월)
☐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행복학습지원센터 센터 설립	시민운행 지자체 선정·지원

과제명	3월		4월		5월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①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활동 강화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수교포사	• 돌봄 수교포사	• 방과후 돌봄 확대 방안 연구(~8월)			
☐ 수교와 중심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수교와 돌봄 서비스 연계운영 (~6월)					
② 교육비 부담 경감						
②-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고교육 실현						
☐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 유아교육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상황 정리(~4월)			•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에 도입을 위한 협의 개월 추진	
☐ 고등학교 특성교육비 단절의 방지					• 유아학비 및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파악	
☐ 사립교육비 부담 완화				• 조·중·고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지원 사업 통합 방안 마련	
②-2.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입학지원 강화	•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입학지원 강화	• '13년 국가장학금 신청	• '13년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및 장학금 지원 대상인원 추산	• 국가장학금 및 장학금 지원 대상인원 추산 및 소요원칙 파악	
☐ 학자금을 대충 수색대상 확대 및 세부사항 강화	• 학자금을 대충 수색대상 확대 및 세부사항 강화	• '13년 학자금을 대충 지원	• 학자금을 대충 지원	• 국가장학금 및 장학금 지원 대상인원 추산 및 소요원칙 파악	• 학자금을 대충 지원 대상인원 추산 및 소요원칙 파악	

과제명	3월	추진 일정	5월
□ 대학사, 역사사, 학술 및 기술사비 인하		4월	- 대학 정보스 내 기술사, 시설사별 기초정보 수집 및 검토 - 대학 정보스 외 기술사에 대한 확재기관과 자치 단체 협의
□ 중소기업 학업과 면제하는 피망사 다리 창학금 지원			피망사 다리 장학금 불합격 장학생 선발
Ⅲ. 정책 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 대책 확충	- 특수학교(3) 신· 증식 및 장애학생 면제유지 조사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실행과 결구 및 진흥	74년도 특수교사 소요정원 요구	
□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지원 확대	- 시·도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수립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기회를 위한 여건조성 추진	탈북학생 학습교원 임수	- 탈북학생 진급크리 내이더 해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특별학급, 이동 언어로서 도입을 위한 초·중등 교육원 시설등 자정

2. 이범추진 계획

학 과 명	수업 방법	주요 내용
공통교육과정상학교선택특별명 제정	유·초·중·고교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 유발 시범 중재 실시	'13.4
초·중등교육법 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13.4
초·중등교육법 개정	표준수업시수에 도입	'13.4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교육통계 관리·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13.4
마포구민법 개정	평지·생동마을 신원집사 지 제 도기관언해 및 사유권리 강화	'13.4
하곡초대법 및 대학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교육비담보대출(역자산 담보)을 구제함	'13.4
한국방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법(97년 제정)개정안을 논의 함	'13.4
결정후 학사운영 규정 특별법 유예교육법 개정	유저원이 인사를 상한제 도입	'13.5
고등교육법 개정	입학전형료 전액 환부제도 도입	'13.6
국립유해에 관한 규정 개정	고급 제과 국외 유해 특별전행 근거 마련	'13.6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일방적 졸업자제 거론한 격차문제로 대학입학이 가능한 근거 마련	'13.6
고등교육법 개정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단정화	'13.8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등학교의 진도 활용 및 학습 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	'13.9
자율대학 육성법 개정	지역대학원, 지역대학원·공학 전문대학 지원, 지역대학육성에 총칭이신 각 기관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13.9
지방기초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구축 관련 법령조항 신설 예정인 다	'13.9
병설교육법 개정	학교법인 병설교육시설 운영 예정인 다	'13.10
하곡구민법 개정	하곡구내를 학생안전 지역 지정	'13.11
교육의 표준수업시수에 관한 규정 제정	표준수업시수에 도입 운영 구체화	'13.12
사립학교법 개정	직접금 사용내역 정례화	'13.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학생 정보관련 정보공시 추가	'13.12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관련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가등록사업결과평가 공시내용 개선	'13.12

- 법률안 국외 제출 시점임

제 3 장 교육분야 국정과제 현황

구분	국정파제정	법령
공과 제를 카를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의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66-1
	공과 제를 정비하는 교육과정 운영	66-2
	창고사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제에 구축	66-3
	학교 교육 활성화	66-4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66-5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2
	학교 교육 및 학생의 힘 제로 환경 조성	86
	대입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0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국가적 무능력 교육	111-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전환 육성	74
	지방대학 지원 확대	113
	대학 혁신화 및 재직 지원 확대	71
100세 시대 국가경쟁력 제고 구축	75	
고교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66-2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66-5
	초등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66-2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 부담 경감	58
	소속연계형 한일공동금	
	학자금 대출이자 원천적 제로화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장래 대입의 탄력화	49-11	
교육비 부담 경감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50-2
교육비 부담 경감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126-1

[자료 5]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명단

□ 교육부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현황표

: 총 150개교(시도자체 지정 60개교 별도)

학교문화 선도(110개-A), 법제문화 선도(8개-B), 언어문화 개선(32개-C)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유형별 (*)	A	7	3	7	6	6	6	10	6	7	7	6	9	10	8	6	1	110
	B	1	1	0	1	1	0	0	1	0	0	1	0	0	0	1	0	8
	C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1	32
	계	10	6	9	9	9	9	12	9	9	9	9	9	12	9	9	2	150
급별	초	4	3	3	3	4	3	4	4	3	3	3	2	5	2	4	1	55
	중	3	2	3	3	3	4	3	5	4	3	3	4	3	5	3	1	55
	고	3	1	3	3	2	2	2	3	1	3	3	2	4	4	2	0	40

□ 교육부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명단

구분	학교문화 선도형(A)	법제교육선도형(B)	언어문화 개선형(C)
서울 (10)	(연구) 강일초 영동중 (선도) 금양초 동자초 신관중 성수고 풍문여고	서일중	동신초 경일고
부산 (6)	(선도) 반송초 백산초 경남고	주감중	대청초 부산여중
대구 (9)	(연구) 다사고 (선도) 대구북부산초 대구월성초 학산중 강동중 영남고 경덕여고	-	대구내당초 관천중
인천 (9)	(연구) 관교초 인화여중 계양고 (선도) 경원초 부흥중 연수여고	석정여고	작전초 간석여중
광주 (9)	(연구) 광주제석초 (선도) 상무초 농성초 평동중 조대여중 대성여고	주월중	진만초 광주고
대전 (9)	(연구) 대전중 (선도) 대전대화초 진잠초 대성중 호수돈여중 동아미이스터고	대전글꽃중	대전현암초 대전자족고
울산 (9)	(연구) 이화중 (선도) 신북초 삼정초 이화초 연양중 울산공업고 울산인터넷고	-	양지초 효정중

구분	학교문화 선도형(A)	법제교육선도형(B)	언어문화 개선형(C)
세 중 (2)	(선도) 금호중	-	전의초
경 기 (12)	(선도) 안산서초 둔전초 초성초 고창중 병점중 광수중 상품중 성포고 퇴계원고 세경고	-	임진초 화홍중
강 원 (9)	(연구) 신남중 (선도) 근화초 구곡초 청봉초 팔렬중 대성고	북평여중	다목초 대진중
충 북 (9)	(연구) 보은중 (선도) 갈원초 한천초 복대중 내수중 청주신흥고 청산고	-	동광초 오송고
충 남 (9)	(연구) 웅천고 (선도) 의당초 도고초 입장중 미산중 천안월봉고 태안고	-	쌍용초 남면중
전 북 (9)	(연구) 전주덕일초 임실삼계초 장수중 군산동고 (선도) 전주남중 원광고	남성중	고창초 군산진포중
전 남 (9)	(연구) 화순고 담양고 고흥영주고 (선도) 송천왕지초 순천여중 화순제일중 목포덕인고	-	광양중마초 영화중
경 북 (12)	(연구) 나원초 김천중앙고 (선도) 봉계초 이산초 진량초 금천중 신양중 이동중 무학고 영주고	-	길안초 순심고
경 남 (9)	(연구) 반송초 거창여중 김해삼방고 (선도) 사파초 창덕중 팔룡중 석동중 산청고	-	동진여중
제 주 (9)	(연구) 안덕중 (선도) 동흥초 하귀일초 이라초 탐리중 애월고	서귀중앙여중	외도초 한림공업고

□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현황표(시·도 자체지정 학교 포함)

(단위 : 개교)

연번	지역	유형	교 급			소계	
			초	중	고		
1	서울	A	3	2	2	7	10
		B	·	1	·	1	
		C	1	·	1	2	
2	부산	A	2	·	1	3	6
		B	·	1	·	1	
		C	1	1	·	2	
3	대구	A	2	2	3	7	9
		C	1	1	·	2	
4	인천	A	2	2	2	6	9
		B	·	·	1	1	
		C	1	1	·	2	
5	광주	A	3	2	1	6	9
		B	·	1	·	1	
		C	1	·	1	2	
6	대전	A	2	3	1	6	9
		B	·	1	·	1	
		C	1	·	1	2	
7	울산	A	5	9	3	17	21
		C	2	1	1	4	
8	경기	A	3	4	3	10	12
		C	1	1	·	2	
9	강원	A	3	2	2	7	11
		B	·	1	·	1	
		C	1	1	1	3	
10	충북	A	2	3	2	7	9
		C	1	·	1	2	
11	충남	A	10	5	7	22	29
		C	5	2	·	7	
12	전북	A	2	2	2	6	9
		B	·	1	·	1	
		C	1	1	·	2	
13	전남	A	6	8	5	19	25
		C	3	2	1	6	
14	경북	A	6	6	2	14	21
		C	1	3	3	7	
15	경남	A	2	4	2	8	9
		C	·	1	·	1	
16	제주	A	3	3	1	7	10
		B	·	1	·	1	
		C	1	·	1	2	
17	세종	A	·	1	·	1	2
		C	1	·	·	1	
	총계		79	80	51		210

□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명단(시·도 자체지정 학교 포함)

영역 : A- 학교문화 B- 법제교육 C- 언어개선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	A	서울	교과부	연구학교	강월초	070-8677-8304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방안	공립
2	A	서울	교과부	연구학교	영등중	02-3474-7386	자율과 존중의 「아띠」 프로그램을 통한 신나고 행복한 학생자치문화 만들기	공립
3	A	서울	시도	선도	금양초등학교	02-704-2938	교육공동체 참여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4	A	서울	시도	선도	동자초등학교	02-444-1349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위한 동자 365 프로젝트	공립
5	A	서울	시도	선도	신관중학교	02-885-6891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생공감의 학교문화만들기	공립
6	A	서울	시도	선도	성수고등학교	02-6913-3510	학생을 알아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만족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7	A	서울	시도	선도	풍문여자고등학교	02-732-5574	소질과 끼를 살리는 인성교육	사립
8	B	서울	시도	선도	서일중학교	02-3482-9663	2013년도 학생자치법정 운영 계획	공립
9	C	서울	시도	선도	동신초등학교	02-923-3870	고운 우리말, 고운 한국인, 고운 동신 어린이 고운 얼굴로 변신하기RSSR 프로젝트 운영 계획서	공립
10	C	서울	시도	선도	경일고등학교	070-4099-7002	학생주도의 오·오프라인 언어문화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바람직한 학교문화 창출	공립
11	A	부산	시도	선도	반송초등학교	051-540-5802	다움·통합·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사랑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 기르기	공립
12	A	부산	시도	선도	백산초등학교	051-336-7752	배려, 화합으로 모두가 주인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3	A	부산	시도	선도	경남고등학교	051-250-5000	학생규칙 제·개정 및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및 생활지도	공립
14	B	부산	시도	선도	주감중학교	051-314-4676	『청소년 법제관』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5	C	부산	시도	선도	대청초등학교	051-721-8185	약속, 실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언어 문화 개선	공립
16	C	부산	시도	선도	부산여자중학교	051-240-0901	자차, 감성, 공감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언어 생태 가꾸기	공립
17	A	대구	교과부	시범학교	다사고등학교	053-570-3320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	공립
18	A	대구	시도	선도	대구북비산초등학교	053-720-2781	공감과 소통의 선진문화 정착으로 꿈 희망·행복을 가꾸는 학교 만들기	공립
19	A	대구	시도	선도	대구월성초등학교	053-636-1768	감성 공감 꿈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 Leader 기르기	공립
20	A	대구	시도	선도	학산중학교	053-630-5351	참여와 소통 그리고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	공립
21	A	대구	시도	선도	강동중학교	053-960-1414	VIVA 강동! (Voluntary Involvement, Various Activity)	공립
22	A	대구	시도	선도	영남고등학교	053-631-4576	Oh! Yes!!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립
23	A	대구	시도	선도	경덕여자고등학교	053-563-3476	스스로 만드는 우리의 찬찬친(친한 친구, 친절한 선생님, 친정이 되어줄 학교)	공립
24	C	대구	시도	선도	대구내당초등학교	053-620-9302	나눔·채움·키움의 삼향(三香)으로 고운 빛깔 ‘언어 꽃’ 피우기	공립
25	C	대구	시도	선도	관천중학교	053-323-6325	관천 ㅁ(네모) 힐링(Healing)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공립
26	A	인천	교과부	시범학교	관교초	032-434-0492	Auto-Club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육성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27	A	인천	교과부	시범학교	인화여중	032-762-2015	명품 마음밭 가꾸기를 통한 바른 품성 함양	공립
28	A	인천	교과부	시범학교	계양고	032-553-4901	사제모가 소통하고 동행하며 만드는 선진학교	공립
29	A	인천	시도	선도	경원초	032-438-9321	진선미를 찾아 떠나는 경원 행복 여행	공립
30	A	인천	시도	선도	부흥중	032-527-4384	해피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실천중심의 바른 인성교육	공립
31	A	인천	시도	선도	연수여고	032-457-1201	나의학교 나의손으로	공립
32	B	인천	시도	선도	석정여고	032-720-7220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	공립
33	C	인천	시도	선도	작전초	032-543-0029	까치골 고운말 등지에서 피어나는 통통이들의 함박웃음	공립
34	C	인천	시도	선도	간석여중	032-429-5965	언어사용 습관 개선으로 꿈과 감성을 디자인하는 행복플러스 도전하기	공립
35	A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상무초	062-370-2804	학교문화선도	공립
36	A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농성초	062-360-6501	농성 통통이들의 달콤한 학교 만들기 레시피(Recipe)	공립
37	A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평동중	062-943-2103	학교문화선도	공립
38	A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조대여중	062-230-9444	학교문화개선	사립
39	A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대성여고	062-671-0213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40	B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주월중	062-670-5811	학생자치법정의 내실화를 통한 법제교육 실현	공립
41	C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진만초	062-958-5677	언어문화개선	공립
42	C	광주	교과부	시범학교	광주고	062-239-8853	언어문화개선	공립
43	A	광주	시도	시범	광주제석초	062-650-6701	교육 공동체의 사랑 *배려* 나눔 프로그램으로 Happy School 만들기	공립
44	A	대전	교과부	시범학교	대전중학교	042-250-7802	참여와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가꾸기	공립
45	A	대전	시도	선도	대전대화초등학교	042-621-6738	행복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五樂室 교육	공립
46	A	대전	시도	선도	진잠초등학교	042-543-3072	3Gee Project를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공립
47	A	대전	시도	선도	대성중학교	042-250-6020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한 창의 인성 체험활동 교육	사립
48	A	대전	시도	선도	호수둔여자중학교	042-221-1672	추억과 감동, 기쁨으로 함께하는 졸업	사립
49	A	대전	시도	선도	동아미이스터고	042-620-1118	긍정과 배려, 소통의 학교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50	B	대전	시도	선도	대전글꽃중학교	042-250-0365	글꽃스쿨로(school law) 프로그램을 활용한 풀뿌리 학교문화 창출	공립
51	C	대전	시도	선도	대전현암초등학교	042-623-3071	사랑일이 담겨진 행복까지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학교언어생활 가꾸기	공립
52	C	대전	시도	선도	대전지족고등학교	042-717-1550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공립
53	A	울산	교과부	선도	신복초	052-222-6280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54	A	울산	교과부	선도	삼청초	052-277-4254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55	A	울산	교과부	선도	이화초	052-281-7454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56	A	울산	교과부	연구	이화중	052-286-4117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57	A	울산	교과부	선도	안양중	052-264-6537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58	A	울산	교과부	선도	울산공업고	052-257-0614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59	A	울산	교과부	선도	울산인터넷고	052-277-1812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0	C	울산	교과부	선도	양지초	052-252-9411	학생언어 문화개선 연구	공립
61	C	울산	교과부	선도	효정중	052-287-0808	학생학교 문화개선 연구	공립
62	A	울산	시도	선도	상안초	052-285-5081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3	A	울산	시도	선도	서부초	052-235-3961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4	A	울산	시도	선도	강남중	052-273-2570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5	A	울산	시도	선도	대송중	052-236-3742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6	A	울산	시도	선도	온산중	052-238-4140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7	A	울산	시도	선도	울산여중	052-292-3951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8	A	울산	시도	선도	유곡중	052-246-9142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69	A	울산	시도	선도	청량중	052-268-6540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70	A	울산	시도	선도	현대중	052-230-7303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71	A	울산	시도	선도	울산여상	052-925-2661	학교문화 개선 연구	공립
72	C	울산	시도	선도	옥동초	052-269-0914	학생언어 문화개선 연구	공립
73	C	울산	시도	선도	애니원고	052-248-4029	학생언어 문화개선 연구	공립
74	A	세종	시도	선도	금호중학교	044-866-7802	‘이벤트’ 교과활동·창체활동으로 Happy 교육공동체 만들기	공립
75	C	세종	시도	선도	전의초등학교	044-863-1451	도전, 계능, 협력으로 품격을 높이는 SMART CAP 전의교육	공립
76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안산서초	031-487-4550	공감, 소통, 나눔이 있어 내일이 더 행복한 안산서초의 어울림	공립
77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둔전초	031-391-4631	꿈,피,끼,꼴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눔, 배려,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78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초성초	031-832-4007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79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고창중	031-986-2574	소통과 나눔이 있는 무사고 학교(소나무학교)	공립
80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병점중	031-224-0417	333(3多, 3자, 3無) 실천으로 Happy-edu School 만들기	공립
81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광수중	031-768-3101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82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상품중	031-883-0003	인성교육과 함께 만들어 가는 즐거운 학교	공립
83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성포고	031-599-9150	STA Program을 통한 인성교육실천 및 선진학교문화 창달	공립
84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퇴계원고	031-570-1518	인성교육 교육과정 개구성 및 교과 내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통한 소통 Up! 인성 Up!	공립
85	A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세경고	031-950-9920	모두가 행복한 SOPA(Social Participation) 하기	사립
86	C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임진초	031-954-4047	견, 습, 성(見, 習, 誠)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언어사용 문화 조성	공립
87	C	경기도	교과부	정책연구	화홍중	031-225-9917	화.랑.인프로그램으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교실 만들기 (화. 랑. 인 : 화홍중 사랑의 언어로 바른 인성 함양하기)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88	A	강원	교과부	선도	근화초등학교	033-251-0904	학교폭력 이제는 멈춰! 무궁이들의 발걸음 하나, 둘, 셋	공립
89	A	강원	교과부	선도	구곡초등학교	033-766-9720	4Full 마음 나누기를 통한 행복 가득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90	A	강원	교과부	선도	청봉초등학교	033-638-2122	인성리더가 만들어가는 청봉 행복 문화	공립
91	A	강원	교과부	기지정	산남중학교	033-461-6031	학교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올곧은 인성함양	공립
92	A	강원	교과부	선도	팔렬중학교	033-435-6324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학교문화	사립
93	A	강원	교과부	선도	대성고등학교	033-731-1604	자치 나눔 어울림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립
94	B	강원	교과부	선도	북평여자중학교	033-520-5603	청소년 법제관 운영을 통한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공립
95	C	강원	교과부	선도	다목초등학교	033-441-7085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96	C	강원	교과부	선도	대진중학교	033-680-6630	활동중심 언어순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심성 바른 즐거운 학교생활	공립
97	A	강원	시도	선도	강원예술고등학교	033-650-2700	소통과 참여를 위한 학교 문화 개선 방안 연구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공립
98	C	강원	시도	선도	김화공업고등학교	033-458-1627	행복한 학교 행복한 말씨 2	공립
99	A	충북	교과부	정책연구/ 시범학교	보은중	043-544-2614	학생 이해와 학생 주체에 기초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00	A	충북	시도	선도	갈원초	043-260-6614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행복자수 UP	공립
101	A	충북	시도	선도	한천초	043-536-4290	자율적,창의적,체험적 Dream 프로젝트	공립
102	A	충북	시도	선도	복대중	043-236-3563	소통과 배려, 격려속에 꿈이 크는 학교	공립
103	A	충북	시도	선도	내수중	043-214-3598	소통, 참여, 나눔을 통한 Happy School 만들기	공립
104	A	충북	시도	선도	청주신흥고	043-211-8802	학교, 그곳에서 '나'를 만나다	공립
105	A	충북	시도	선도	청산고	043-732-8176	학생자치활동 중심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06	C	충북	시도	선도	동광초	043-543-2621	자.타.공.인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언어 문화 개선	공립
107	C	충북	시도	선도	오송고	043-238-8902	사랑과 소통이 있는 명품 오송고	공립
108	A	충남	교과부	시범학교	웅천고등학교	041-931-7464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공립
109	A	충남	시도	선도	의당초등학교	041-852-0010	학생중심 창의 인성 체험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10	A	충남	시도	선도	도고초등학교	041-542-0344	소통+ 나눔up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교 가꾸기	공립
111	A	충남	시도	선도	입장중학교	041-585-5021	힐링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12	A	충남	시도	선도	미산중학교	041-933-4022	힐링봉사동아리를 통한 용기있는 학교문화조성 폭력없는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공립
113	A	충남	시도	선도	천안월봉고등학교	041-622-5194	A-ha(All happy ability) 지성, 감성, 소통이 충만한 문화 월봉인 만들기	공립
114	A	충남	시도	선도	태안고등학교	041-675-8183	바른품성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	공립
115	C	충남	시도	선도	쌍용초등학교	041-547-0235	3色 프로그램 적용으로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말(言) 세상	공립
116	C	충남	시도	선도	남면중학교	070-7731-6300	바른 말, 바른 마음 언어순화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언어사용 습관 생활화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17	A	충남	시도	선도	구산초등학교	041-841-2169	바른 품성 5운동 전개를 통한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 생활 능력 신장 방안	공립
118	A	충남	시도	선도	웅산초등학교	041-332-1560	한지붕 세 교육공동체가 함께 수놓은 인성교육실천 세마당 이야기	공립
119	C	충남	시도	선도	천안용곡초등학교	041-569-6184	나의 언어 습관 리모델링, 따뜻한 놀들누리	공립
120	C	충남	시도	선도	명지초등학교	041-664-2360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공립
121	A	충남	시도	선도	금암중학교	042-840-5091	「Grace-급암」,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공립
122	A	충남	시도	선도	서도초등학교	041-952-0039	P * E * D * A * L 프로젝트로 따뜻한 학교를 향해 달려나가기	공립
123	A	충남	시도	선도	금산여자고등학교	041-753-6201	上兹人의 희망(Honest-만들기	공립
124	A	충남	시도	선도	삼성초등학교	041-675-4203	꿈과 끼로 상상의 날개 달기	공립
125	C	충남	시도	선도	아산복수초등학교	041-547-0931	고운말)·바(른말)·우(리말) 1· ·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공립
126	C	충남	시도	선도	홍주중학교	041-632-3888	바른 언어로 도란도란 속삭이는 행복 공감 학교	사립
127	A	충남	시도	선도	간양고등학교	041-741-2101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문화 선도 활동	사립
128	A	충남	시도	선도	강상고등학교	041-745-2313	스스로 꿈을 찾아 개척하는 바른 품성의 미래인	공립
129	A	충남	시도	선도	운산초등학교	041-669-6340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Happy-School 문화 정착	공립
130	C	충남	시도	선도	유곡초등학교	041-353-7078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비타민 프로젝트	공립
131	A	충남	시도	선도	정산고등학교	041-942-0285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공립
132	A	충남	시도	선도	홍동중학교	041-631-8076	지성인성감성이 풍부한 Glocal 인재 양성	공립
133	A	충남	시도	선도	갈산초등학교	041-633-7575	‘1,2,3Slow life’ 실천을 통한 배려와 공감의 바른 인성 함양	공립
134	A	충남	시도	선도	연무중학교	041-742-0541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공감 학교 프로젝트	공립
135	A	충남	시도	선도	백화초등학교	041-672-8595	나나들 활동을 통한 나 + 너 = 우리	공립
136	A	충남	시도	선도	환서중학교	041-412-7000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37	A	전북	교과부	시범학교	군산동고등학교	063-450-1110	동고동락 PROJECT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공립
138	A	전북	교과부	시범학교	장수중학교	063-351-2383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39	A	전북	교과부	연구학교	전주덕일초	063-279-3105	학교문화개선 방안 연구	공립
140	A	전북	교과부	정책연구	임실삼계초	063-642-7506	박사골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41	A	전북	시도	선도	전주남중	063-582-6304	학생자치문화 완전정착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	공립
142	A	전북	시도	선도	원광고등학교	063-832-6612	원광고등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3G운동	사립
143	B	전북	시도	선도	남성중학교	063-841-3818	청소년 법제관 사업	사립
144	C	전북	시도	선도	고창초등학교	063-560-1704	소통, 화합, 참여로 실천하는 학생자치활동중심 인성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언어문화개선	공립
145	C	전북	시도	선도	군산진포중학교	063-462-3206	언어문화개선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46	A	전남	교과부	시범	디암초등학교	061-772-4087	학생중심 3C 프로그램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학교 만들기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47	A	전남	교과부	시범	마산초등학교	061-532-5391	『나들이』 3음 활동을 통한 상(相)상(想)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랑과 생동감이 움트는 밝은 학교문화 조성	공립
148	A	전남	교과부	시범	조성중학교	061-857-9121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공립
149	A	전남	교과부	시범	남악중학교	061-287-3410	학생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	공립
150	A	전남	교과부	시범	화순고등학교	061-370-1502	『3-Step 주인공 되기』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51	A	전남	교과부	시범	담양고등학교	061-380-8952	학생 주도의 참여와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	공립
152	A	전남	교과부	시범	고흥영주고등학교	061-835-0175	사제동행-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감성학교 만들기	공립
153	A	전남	시도	선도	목포용호초등학교	061-276-2018	우리 학교 알범되기 프로젝트를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공립
154	A	전남	시도	선도	순천왕지초등학교	061-724-9506	3 GO with 운동을 통한 맑은 품성과 푸른 꿈을 가꾸는 ‘참된 나’ 되기	공립
155	A	전남	시도	선도	성황초등학교	061-791-4036	튼튼한 몸과 고운 맘이 어우러져 행복한 삶이 피어나는 학교 만들기	공립
156	A	전남	시도	선도	과역초등학교	061-832-9379	배려와 나눔으로 행복한 나는 과역숲속 나무 한그루	공립
157	A	전남	시도	선도	순천여자중학교	061-804-2003	존중·나눔·배려·협력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정겨운 학교문화조성	공립
158	A	전남	시도	선도	광양제철중학교	061-798-1201	행복학교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립
159	A	전남	시도	선도	남평중학교 (분교포함)	061-331-2145 061-337-3008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동아리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공립
160	A	전남	시도	선도	금산중학교	061-843-8041	나눔과 배려 프로그램을 통한 다행복UP 금산중 문화만들기	공립
161	A	전남	시도	선도	화순제일중학교	061-379-0302	학생주도적인 학생회와 함께하는 학교자치문화 속 인성교육실천	공립
162	A	전남	시도	선도	장성중학교	061-392-1603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장성인 육성	공립
163	A	전남	시도	선도	목포덕인고등학교	061-240-6402	SMART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64	A	전남	시도	선도	담양공업고등학교	061-381-3194	다양한 인성프로그램 및 맞춤형 체험학습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65	C	전남	시도	선도	광양중마초등학교	061-791-4783	말.말.말 프로그램 적용으로 배려.존중의 언어 습관 기르기	공립
166	C	전남	시도	선도	광양제철남초등학교	061-798-1401	감사나눔 1·5·5의 실천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 문화 개선 및 학교폭력 사전 예방	사립
167	C	전남	시도	선도	보성남초등학교	061-852-2608	고*비*우 실천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68	C	전남	시도	선도	목포해인여자중학교	061-240-6502	품격 있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통통통(通洞統) 튀는 프로젝트	사립
169	C	전남	시도	선도	영화중학교	061-800-8102	“거언미 래언미”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70	C	전남	시도	선도	여남고등학교	061-665-9771	배려와 소통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언어문화 개선	공립
171	A	경북	교과부	시범학교	나원초등학교	054-775-2050	3D 참(Charm)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生生한 학교 문화 즐기기	공립
172	A	경북	교과부	시범학교	김천중앙고등학교	054-435-4011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173	A	경북	시도	선도	봉계초등학교	054-435-5866	3-Self Dream 프로젝트로 소통 UP! 감성 Plus!	공립
174	A	경북	시도	선도	이산초등학교	054-637-2076	Well-Living 소나무 프로젝트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75	A	경북	시도	선도	진량초등학교	053-852-8712	실천적 어울림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76	A	경북	시도	선도	금천중학교	054-372-3592	나와 너를 주인공(主人共)으로 만드는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77	A	경북	시도	선도	산양중학교	054-552-3774	금천 푸른 꿈 두레박 Healing School	공립
178	A	경북	시도	선도	이동중학교	054-278-5348	폭력제로! 행복 OK! Well-being교실(심리치료) 운영	공립
179	A	경북	시도	선도	무학고등학교	053-854-8015	학교, 또 하나의 가족(집집이 프로그램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부자캠프, 명상의 시간)	사립
180	A	경북	시도	선도	영주고등학교	054-634-5774	선비정신을 통한 배*나*채 프로젝트 배움*나눔*재움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립
181	A	경북	시도	선도	도원초등학교	054-932-0960	REAL- 힐링(Healing) 프로그램을 통한 꿈*창의*인성 수(秀)업(UP)	공립
182	A	경북	시도	선도	포은초등학교	054-338-1293	frame을 열어 자신을 깨닫는 마음 경영 -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 열기	공립
183	A	경북	시도	선도	낙운중학교	054-533-6508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학교 문화 개선	공립
184	A	경북	시도	선도	부구중학교	054-782-9365	푸른 소나무와 함께 자라는 행복한 교실, 평화로운 학교	공립
185	C	경북	시도	선도	갈안초등학교	054-822-2105	천지갑산의 언어동아들! ECO Healing으로 말뚝시를 반울림(?)해요	공립
186	C	경북	시도	선도	순심고등학교	054-971-1222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립
187	C	경북	시도	선도	다산중학교	054-955-6987	이제는 다산 동산에 '배려 언어문화' 꽃 피우기	공립
188	C	경북	시도	선도	예천여자중학교	054-654-1650	아름다운 말로 밝은 세상 만들기	공립
189	C	경북	시도	선도	의성중학교	054-832-1684	바른 언어습관 지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공립
190	C	경북	시도	선도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054-833-6982	바른 언어 사용 습관화를 통한 학생 언어 문화 개선	공립
191	C	경북	시도	선도	포항장성고등학교	054-244-7048	실천 중심의 언어 순화 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립
192	A	경남	교과부	시범학교	반송초등학교	055-973-5702	체험 중심 HAPPY-I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	공립
193	A	경남	교과부	시범학교	거창여자중학교	055-944-3781	씨알(마음씨, 말씨, 댕씨) 배양을 통한 건전하고 올바른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194	A	경남	교과부	시범학교	김해삼상고등학교	055-312-8322	삼방(氣의 방, 興의 방, 靑의 방)을 통하여 문화가 숨쉬는 행복한 교정 만들기	공립
195	A	경남	시도	선도	사파초등학교	055-281-3435	통통통 프로그램으로 Happy school 만들기	공립
196	A	경남	시도	선도	창덕중학교	055-291-1685	꿈과 희망으로 꽃피우는 즐거운 학교 “찾아가는 창덕 五行”	공립
197	A	경남	시도	선도	팔용중학교	055-296-8142	학생회 간부의 토래상담 및 지킴이 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공립
198	A	경남	시도	선도	석동중학교	055-542-7956	체(體), 인(仁), 지(知)를 통한 학교문화 CHANGE	공립
199	A	경남	시도	선도	산청고등학교	055-973-0782	핵심습관 형성을 통한 스마일(SMILE)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200	C	경남	시도	선도	동진여자중학교	055-551-4425	독서교육을 통한 언어순화 프로젝트	공립
201	A	제주	시도	선도	동홍초등학교	064-730-7505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공립

연번	영역	시도	지정	종류	학교명	전화번호	추진(연구) 과제명	공/사립
202	A	제주	시도	선도	하귀일초등학교	064-713-9501	다양한 인성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교문화 개선	공립
203	A	제주	시도	선도	이라초등학교	064-710-2860	소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교 공동체 만들기	공립
204	A	제주	시도	선도	탐라중학교	064-750-5070	자존감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통한 감동의 학교문화 창출	공립
205	A	제주	시도	선도(자체)	신암중학교	064-799-5701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신명나는 학교만들기	공립
206	A	제주	시도	선도	애월고등학교	064-797-5101	고내봉 기슭 Se-Pe-Te School	공립
207	A	제주	시도	연구	안덕중학교	064-794-7005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공립
208	B	제주	시도	선도	서귀중앙여자중학교	064-710-9777	학교규칙 적용과 기초질서 함양을 법교육을 통한 학교문화 개선	공립
209	C	제주	시도	선도	외도초등학교	064-743-0820	바른 언어·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아름다운 언어 나무 심기' 교육	공립
210	C	제주	시도	선도	한림공업고등학교	064-797-3200	교육 구성원간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심(心), 체(體), 환(環)의 건강 운동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공립

[자료 6]

2013년 학교문화 개선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위원 명단

지역	성명	소속(직위)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 경력 (2010~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참여 경험 등)
서울	유석범	잠일중학교 (교감)	남	02-2141-2002	ysb0408S@sen.go.kr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여	02-300-0623	choami@mju.ac.kr	•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상담실장
부산	이승희	배영초등학교 (교장)	남	051-971-8822	e2254@korea.kr	• 2011 초등교장 학교경영 컨설팅 직무 연수 강사 • 2011 초등교장 자격연수 강사 • 2011~13 교장자격 멘토링 연수 멘토
	이미아	주례여자중학 교(수석교사)	여	051-310-3760	malee28@hanmail.net	• 1998~ 부산시교육연수원 인성교육 강사 • 2011~ 인성교육 및 연구학교 지도 위원
대구	심후섭	대구송정초등 학교(교장)	남	053-962-1135	shs7777@edunavi.kr	• 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 대구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 대구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교육학박사
	김태현	대구광역시교 육청(장학사)	남	053-757-8551	myhouse@korea.kr	• 2010~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담당 전문직
인천	장인선	인천해송고등 학교(교감)	여	032-858-9561	cisi1357@hanmail.net	• 장학사 5년 •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위원
	한상봉	삼산고등학교 (교감)	남	032-512-9516	onemeet@dreamwiz.com	• 장학사 6.5년 • 중학교 교감 3년 •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1년 운영
광주	윤영월	풍암고등학교 (교장)	여	062-650-0500	yywol@gen.go.kr	• 前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현 풍암고 교장 등
	김진구	상일여자고등 학교(교장)	남	062-385-6024	jingu200@hanmail.net	• 前 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 장학관 • 현 상일여자고등학교 교장
대전	송영숙	대전둔천초등 학교(교장)	여	042-483-4654	fallaidul@edurang.net	• 초등인성교육 실천 담당과장
	박병제	한밭고등학교 (교장)	남	042-601-6100	etp5580@hanmail.net	•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교장
울산	강영기	동백초등학교 (교장)	남	052-245-7947	yk8123@use.go.kr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과장
	김윤갑	천곡중학교 (교장)	남	052-249-0253	ygebi@use.go.kr	• 교총 논문 푸른기장상 수상 • 2013 연구학교 담당자 대상 특강
	송명자	울산대학교 (교수)	여	052-259-2098	smjnamoo@naver.com	• 학생생활교육과 외부컨설팅 요원

지역	성명	소속(직위)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 경력 (2010~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참여 경험 등)
경기	박태환	송호고등학교 (교장)	남	031-415-8682	edupark55@hanmail.net	• 도덕윤리교과연구회장 역임 •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2013 경기도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선정 심사위원 • 현 송호고 교장
	김춘경	광문초등학교 (교장)	여	02-2618-2618	may0410@dreamwiz.com	• 2012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담당 장학 • 2013 경기도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선정 심사위원 • 현 광문초 교장
강원	이종봉	강원도횡성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남	033-340-0302	artljb@korea.kr	• 강원도횡성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채인숙	홍천 반곡초 등학교(교장)	여	033-434-0006	qinsooqi@korea.kr	• 홍천 반곡초등학교 교장
충북	윤인중	서현중학교 (교감)	남	043-715-7201	beehongi@cbe.go.kr	• 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교감
	김창식	보은중학교 (수석교사)	남	043-544-2615	dmr818@cbe.go.kr	• 2011~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턴트
충남	김봉규	한양대학교 (교수)	남	010-8937-9065	bada6015@daum.net	• 2010~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컨설팅 단장 • 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조영종	천안부성 중학교(교장)	남	041-523-7091	bell9093@cnoe.or.kr	•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 •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 학생자치법정 운영(법무부지정)
전북	임정래	순창교육 지원청 (장학관)	남	063-650-6150	bsms8138@jbedu.kr	•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담당 업무 처리
	전준형	전북인권교육 연구소(소장)	남	010-5535-2345	yulsa@hanmail.net	• 2011~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 위원
전남	허성균	포두중학교 (교장)	남	061-832-5421	hsk9540@hanmail.net	• 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임경희	순천대학교 (교수)	여	061-750-3371	kh6843@sunchon.ac.kr	• 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경북	권재경	금호여자고등 학교(교장)	남	054-332-6564	kjkksy@gvo6.net	•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 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생활 지도 담당 장학관 • 전 경북학생생활지도 위원장
	권오진	두호고등학교 (교장)	남	054-250-7260	ojin-kwon@hanmail.net	•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 전 포항교육지원청 생활 지도 담당 장학사

지역	성명	소속(직위)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 경력 (2010~2012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참여 경험 등)
경남	이상승	대암초등학교 (교장)	남	055-285-8902	saslee@changwon.ac.kr	• 2012년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컨설팅 위원 참여
	박종흡	창원대학교 (교수)	남	055-213-3193	jhpark@changwon.ac.kr	• 2012년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컨설팅 위원 참여
제주	좌문철	전 교육국장	남	010-8661-1414	injesus46@naver.com	• 2011-2012 컨설팅 위원
	김재수	전 제주시 교육장	남	016-691-2440	soo@jejuedu.pe.kr	• 2011-2012 컨설팅 위원
세종	박성갑	조치원중학교 (교장)	남	044-863-0771	psg0925@daum.net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심사 위원 역임
	조봉환	공주교육 대학교(교수)	남	041-850-1726	cho2433@giue.ac.kr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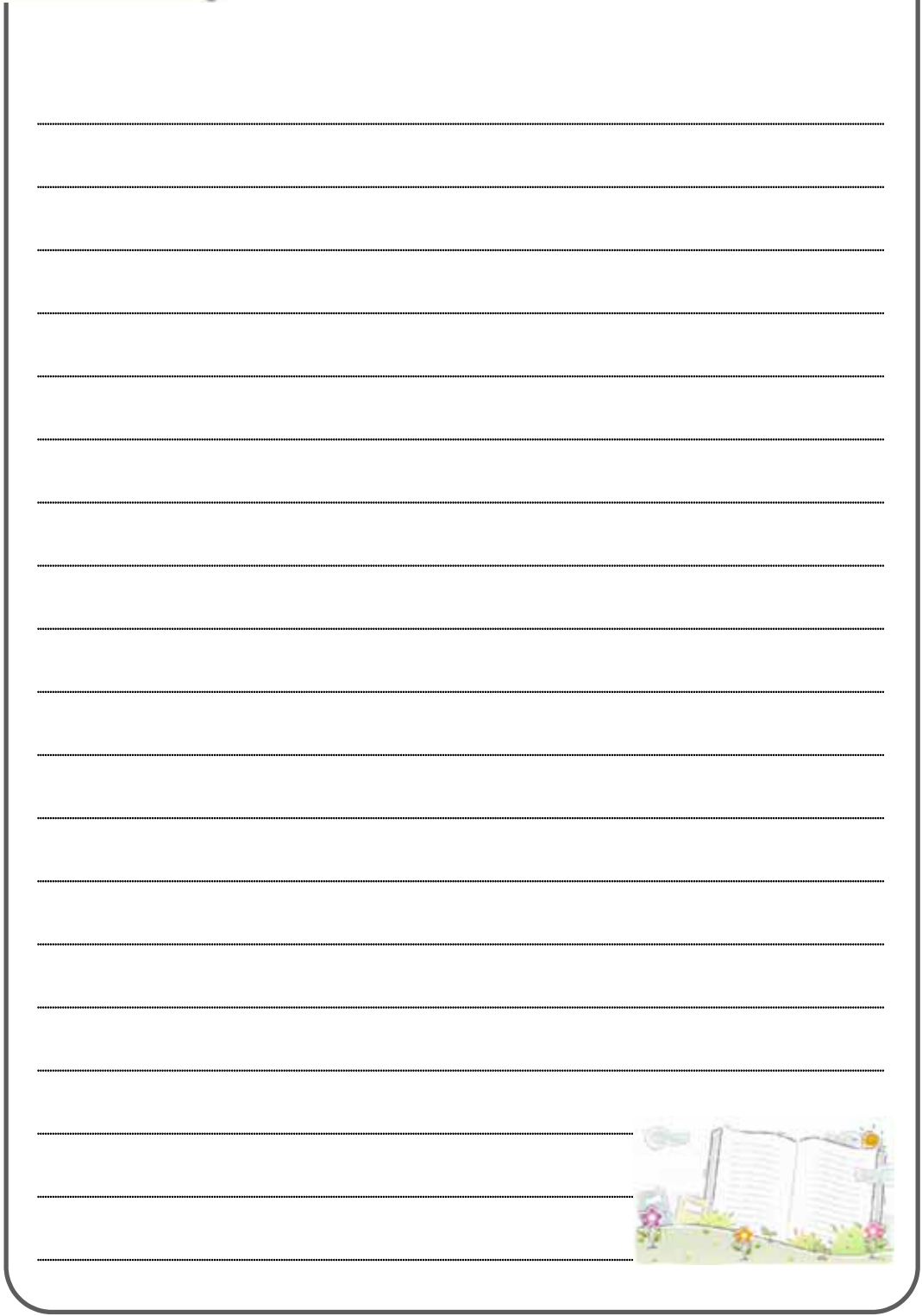
[자료 7]

17개 시 · 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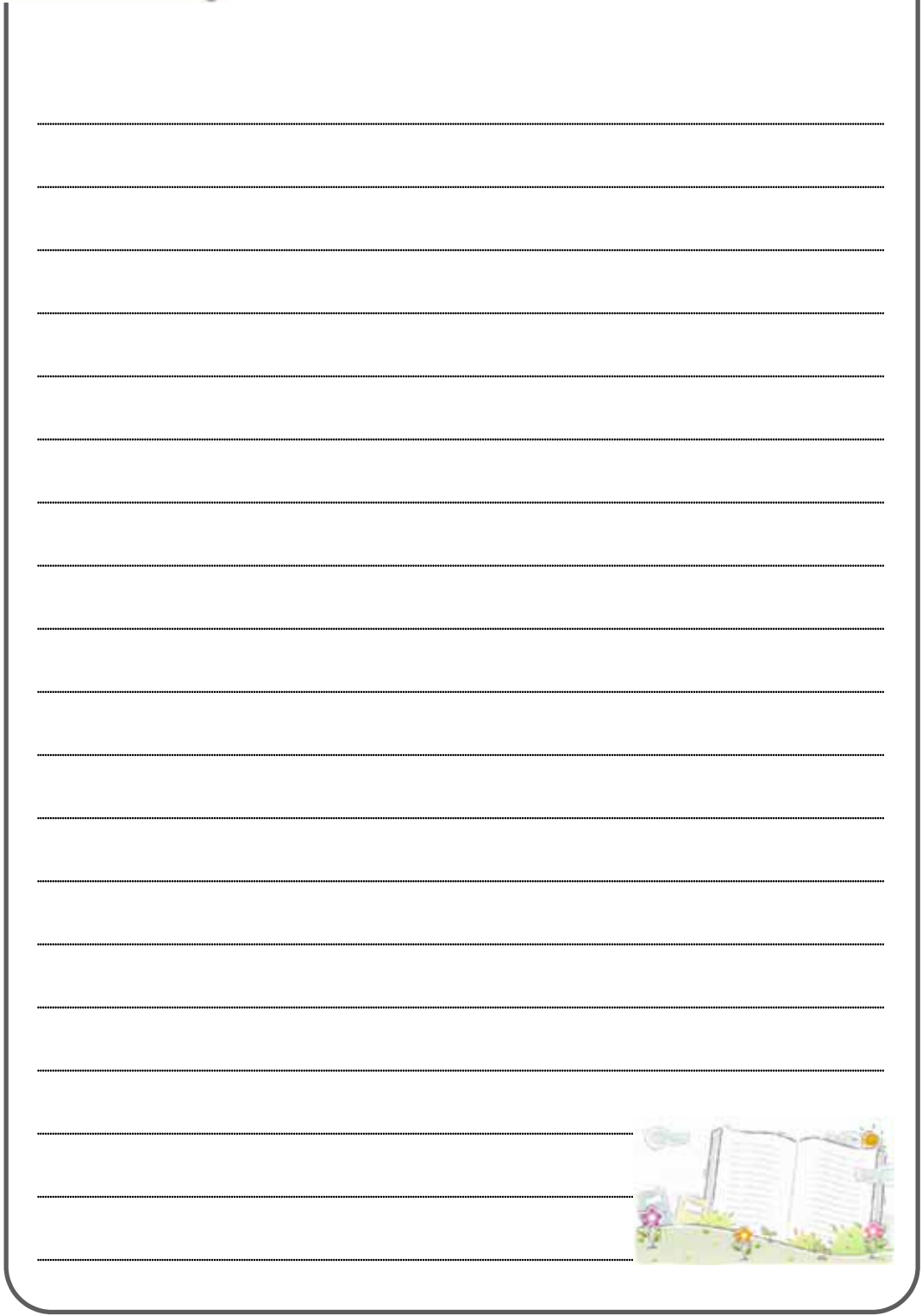
연번	시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1	서울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송재범	(02)3999-542	ssjbb@sen.go.kr
2			장학사	류인철	(02)3999-544	yooich@sen.go.kr
3	부산	학교폭력근절과	과장	김수동	(051)8600-170	ksd21@korea.kr
4			장학관	조희제	(051)8600-181	jwjokmn@korea.kr
5			장학사	신석진	(051)8600-183	mildjin@korea.kr
6	대구	학교생활문화과	장학사	신윤섭	(053)757-8562	sys710@edunavi.kr
7	인천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장학사	윤재환	(032)4208-267	tatata44@ice.go.kr
8	광주	학교안전생활과	장학사	홍기호	(062)380-4361	reaonly@korea.kr
9	대전	학생생활안전과	과장	나태순	(042)480-7671	nanosori@edurang.net
10			장학사	김승태	(042)480-7672	mario91@edurang.net
11	울산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강미옥	(052)210-5262	moc000@use.go.kr
12	경기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최종철	(031)980-1230	cjc700@goe.go.kr
13	강원	교육진흥과	과장	김동근	(033)258-5500	godhfma09@korea.kr
14			장학관	오세현	(033)258-5501	cafe0811@korea.kr
15			장학사	이연옥	(033)258-5502	tigotigo@korea.kr
16	충북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과장	이충호	(043)290-2044	ho52127@cbe.go.kr
17			장학사	최명렬	(043)290-2164	cmrhome@cbe.go.kr
18	충남	학생생활지원과	과장	박진상	(041)640-7600	jspark@cnoe.or.kr
19			장학관	최인섭	(041)640-7610	cis@cnoe.or.kr
20			장학사	김우영	(041)640-7611	kwy37@cnoe.or.kr
21	전북	인성건강과	과장	윤택	(063)239-3361	sinnabro@jbedu.kr
22			장학관	박종각	(063)239-3362	canego@jbedu.kr
23			장학사	최순삼	(063)239-3364	tka1001@jbedu.kr
24	전남	학생생활지원과	과장	최복용	(061)260-0945	chy326@korea.kr
25			장학사	정미자	(061)260-0953	jmijj3@korea.kr

연번	시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26	경북	생활지도과	과장	함인호	(053)603-3490	maru01@gyo6.net
27			장학사	김광수	(053)603-3456	songpaje@korea.kr
28	경남	학생안전과	장학사	최용만	(055)278-1749	human63@hanmail.net
29	제주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임재린	(064)710-0256	imjr7173@korea.kr
30	세종	인성교육과	과장	오종근	(044)320-1190	nhk3311@korea.kr
31			장학사	권성진	(044)320-1191	sutoto2013@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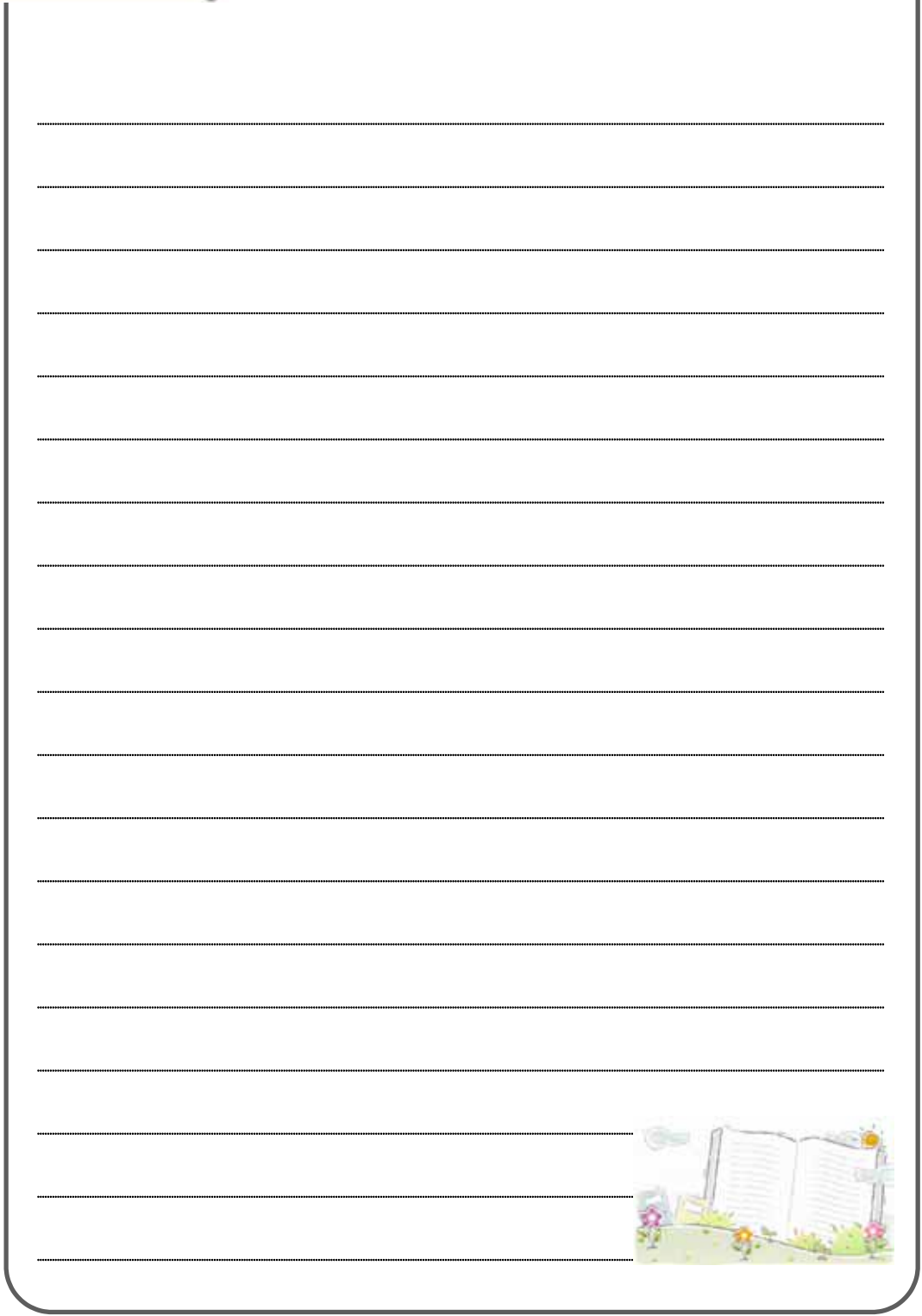
M/E/M/O



M/E/M/O



M/E/M/O



2013년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 연구·선도학교 운영팀
school@nypi.re.kr
http://school.nypi.re.kr/

• 사업총괄 • 평가 및 우수사례집 발간	선임연구위원 김경준 (02-2188-8832) 연구보조원 최윤희 (02-6913-8919)
• 1차 워크숍 (4월) • 2차 워크숍 (9월)	선임연구위원 오해섭 (02-2188-8841) 연구보조원 이유나 (02-6913-8900)
• 시·도별 협의회 • 컨설팅 운영	연구위원 김영지 (02-2188-8846) 연구보조원 유설희 (02-6913-890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www.nypi.re.kr)

워크숍자료집 13-S14

2013년도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인 쇄 2013년 4월 26일

발 행 2013년 4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